議政白書

(2000.1.1~2002.6.30)

蔚山廣域市蔚州郡議會

의 원 議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

의 정 방 침

운 영 방 향

- ▣ 의정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의정 구현
- ▣ 복지울주 건설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 실현
- ▣ 군정에 대한 견제를 넘어 발전적 대안 제시

군 민 의 바 램

- ▣ 울주의 자긍심 고양
-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
- ▣ 균형적 지역개발로 생활불편해소
- ▣ 도 · 농지역의 평균 소득증대

울주군의 상징

울 주 군

▨ 울주군기의 표현내용

◉원 형 : 떠오르는 태양으로 군민의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머리부분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가장 먼저 조명하고 주도해 나갈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군민의 저력을 태양으로 표현함

◉삼각형 : 위를 향해 힘차게 뻗쳐 올라가는 산의 당당한 모습에서 군민의 화합,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사고와 일등정신을 표현함

◉타원형 : 울주군의 보고인 동해를 상징하고 세계화에 앞서가는 군민의 글로벌 정신을 담고 있음

군 상 징 물

군화 ➪ 배꽃

깨끗하고 고결하며, 품위있는 우리조상과 의식을 함께해 온 꽃으로, 순박함과 인정있고 부지런한 군민성을 상징

군목 ➪ 은행나무

힘차게 바르게 뻗어가는 강직성은 줄기차게 살아가는 굳건한 군민의 기상을 나타내며, 긴 수명은 울주군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

군 대 표 동 물

군조 ➪ 비둘기

성질이 온순하며 애향심과 협동심이 강하므로 화합과 단결, 상부상조하는 풍요로운 군민을 상징

한 우

한국의 고유종으로 체질이 건강하여 내병성(耐病成)이 강하며, 몸이 민첩하고 성질이 온순하여 순박하고 근면한 우리군 농촌지역의 대표동물임.

發 刊 辭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2대 의회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3대 울주군의회가 군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한층 성숙된 의회를 만들었으며,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민원에 대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당초 군민의 뜻과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음을 겸허히 반성해 보며 향후 더욱 알찬 의정 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2000. 1. 1부터 2002. 6. 30일까지 제2대 후반기 의회의 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자료를 수록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먼 훗날 우리의 의정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발간하는 의정백서가 군민여러분의 의정참여와 이해를 돕는 기본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군민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해줌으로써 살기좋은 내고장 울주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회에 대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과 항상 내고장 울주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각급 유관기관·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모든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2.

울주군의회 의장 변 양 섭

祝　　辭

지방자치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군의회가 1991년 4월 출범한 지 벌써 십년이 지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뜨거운 환호와 기대속에 제3대 울주군의회도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의 활동 상황을 집대성한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17만 전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 그리고 군민과 울주군 전공무원의 단합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울주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군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경륜을 거울삼아 견제와 균형 속에 상호조화를 이루며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에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993년,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울주군의정백서는 의회가 이룩한 성과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을 이끄는 지침서로서 훌륭하게 활용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울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2.

울주군수 엄 창 섭

二代議員現況

('98. 7. 1~2002. 6. 30)

의 장 단

전반기 의장

범 서 읍
이 정 우

후반기 의장 전반기 부의장

언 양 읍
변 양 섭

후반기 부의장

서 생 면
이 보 근

지 역 구 별

온 산 읍
한 성 률

온 양 읍
이 동 철

지 역 구 별

청량면
김 철 준

응촌면
김 석 암

두동면
서 우 규

두서면
서 완 영

상북면
정 인 조

삼남면
이 형 철

삼동면
우 영 구

三代議員現況

(2002. 7. 1~)

의 장 단

의 장

언양읍
변 양 섭

부의장

청량면
김 철 준

상 임 위 원 장

운영위원장

웅촌면
김 석 암

내무위원장

두서면
서 완 영

산업건설위원장

두동면
서 우 규

지 역 구 별

온 산 읍
이 몽 원

온 양 읍
이 동 철

범서읍(제1선거구)
이 정 우

범서읍(제2선거구)
송 정 문

서 생 면
김 용 원

상 북 면
김 지 호

삼 남 면
김 진 근

삼 동 면
신 동 두

議員 프로필

1. 2대의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선거구명 (선거구역)	학 력 및 경 력	비 고
韓 成 律 (52. 10. 5)	남	온산읍	부산가야고졸, 온산읍청년회장 울산시체육회이사, 온산읍발전협의회장 남울주발전협의회사무국장 울주군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부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부회장 제1대울산군의회 의원	
卞 良 燮 (46. 9. 27)	남	언양읍	부산배정고졸, 한국청년회의소연수원교수 동아대학교경영문제연구소특별위원 사단법인한국청년회의소사무총장 국제청년회의소세계대회한국대표단본부장 대한씨름협회이사, 울산시체육회상임이사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의장(후) 부의장
李 東 哲 (55. 4. 12)	남	온양읍	남창고졸, 울산산업경영대학원수료 중앙대학교대학원최고지도자과정수료 울주군정홍보위원, 팔각회부회장 울주군축구협회장, 울산광역시축구협회감사 남창고총동창회사무국장 청소년선도위원회자문위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李 正 雨 (36. 11.7)	남	범서읍	부산대양고중퇴, 범서면단위농협이사 새마을범서면협의회장, 축협이사 전국그린벨트정책연구소이사 제1대울산군의회의원, 초대울주군의회부의장 광역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의장(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선거구명 (선거구역)	학 력 및 경 력	비 고
 李 寶 根 (51. 7. 10)	남	서생면	부산가야고졸, 서생면이장단협의회장 현대건설고리원자력관리부근무 울산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 서생면체육회부회장, 울주군민원모니터요원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위원장 서생농협이사,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부의장(후)
 金 撤 準 (56. 10. 9)	남	청량면	학성고졸, 울주군위민봉사위원 국회의원비서 청량초등학교운영위원장 청량농협이사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金 石 巖 (58.11.26)	남	웅촌면	학성고졸, 동아대원예학과졸 한국농업경영인회울산광역시부회장 웅촌면체육회장, 웅촌중학교운영위원장 새마을문고웅촌면회장, 울산문화원이사 울산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본부이사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徐 雨 圭 (55. 2. 20)	남	두동면	두동초등학교졸, 대웅불교대학법사과정수료 동국대학교지역개발대학원수료 영농기술자두동면부회장, 두동면청년회장 대곡댐대책위원회부위원장, 두북농협대의원 두광중학교운영위원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徐 完 永 (55. 3. 5)	남	두서면	학성고졸, 부산경상전문대법률과졸 한국통신대학법학과졸, 농업경영인 두북농협이사, 두서면청소년선도위원 새마을지도자, 두서면체육회장 두서면청년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간사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선거구명 (선거구역)	학 력 및 경 력	비 고
鄭 寅 詔 (39. 3.26)	남	상북면	언양농업고등학교졸, 동아대사학과졸 상북고등학교교사 학교법인상북학원이사, 상북학원후원회장 향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한국농민특산주협회장 가지산송엽주대표,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李 炯 哲 (31. 6. 25)	남	삼남면	단천광산전문대중퇴, 울주라이온스클럽회장 울산시·군낙우회장, 언양중·농고육성회장 한국과수협회울산지회장 울산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 광역시의회의원, 건설교통위원 초대울주군의회의원, 울주군의회농공건설위원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禹 榮 九 (34. 5. 3)	남	삼동면	삼동면사무소근무(총무계장12년, 산업계장 1년6개월) 지방공무원정년퇴임 삼동초등학교총동창회장 울주군체육회이사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2. 3대의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선거구명 (선거구역)	학 력 및 경 력	비 고
李 夢 源 (58. 8.13)	남	온산읍	남창고졸업, 울산대 경영대학원수료 온산읍자연보호협의회장 온산농협대의원 법무부 범죄예방보호관찰위원 한국복지재단 울산광역시운영위원 남창고운영위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卞 良 燮 (46. 9.28)	남	언양읍	부산배정고졸,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교수 동아대학교경영문제연구소특별위원 사단법인한국청년회의소 사무총장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한국대표단 본부장 대한씨름협회이사, 울산시체육회 상임이사 제2대울주군의회전반기부의장 울주문화원부원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울산광역시 구·군의장회회장 전국시·군 자치구의장회 상임부회장	의 장
李 東 哲 (55. 4.12)	남	온양읍	남창고졸, 울산산업경영대학원수료 중앙대학교대학원최고지도자과정수료 울주군정홍보위원, 팔각회부회장 울주군축구협회회장, 울산광역시축구협회 감사 남창고총동창회부회장, 청소년선도위원회자문위원 제2대울주군의회의원, 남울주발전협의회지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위원	
李 正 雨 (36.11. 7)	남	범서읍 (제1선거구)	부산대양고중퇴, 범서읍단위농협이사 새마을범서읍협의회장, 축협이사 전국그린벨트정책연구소이사 제1대울산군의회의원, 초대울주군의회부의장 제2대전반기울주군의회의장 울주군새마을지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宋 政 文 (60.11.15)	남	범서읍 (제2선거구)	울산공고졸 울산전문대졸 (현, 울산과학대) 굴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울주군 지구당 홍보위원 범서농협 선관위원 및 대의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선거구명 (선거구역)	학 력 및 경 력	비고
 金 容 元 (48. 1. 1)	남	서생면	부산대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초대평화통일자문위원, 울주군협의회간사 청소년선도위원회 울주군 남부지부장 재1대울산군의회의원 진하해수욕장번영회 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金 撤 準 (56. 10. 9)	남	청량면	학성고졸 울주군위민봉사 위원 국회의원비서 청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청량농협 이사 제2대울주군의회의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울산광역시부회장	부의장
 金 石 巖 (58.11.26)	남	웅촌면	학성고졸, 동아대원예학과졸 한국농업경영인회울산광역시부회장 웅촌면체육회장, 웅촌중학교운영위원장 새마을문고웅촌면회장, 울주문화원이사 울산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이사 제2대울주군의회의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간사 울산남부로터리클럽 회원	의회운영위원장
 徐 雨 圭 (55. 2.20)	남	두동면	두동초등학교졸, 대웅불교대학법사과정수료 동국대학교지역개발대학원수료 울산기능대학지방자치 전문과정 수료 영농기술자두동면부회장, 두동면청년회장 대곡댐대책위원회 위원장, 두북농협대의원 두광중학교운영 위원장, 제2대울주군의회의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산업건설위원장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선거구명 (선거구역)	학 력 및 경 력	비 고
 徐 完 永 (55. 3. 5)	남	두서면	학성고졸, 부산경상전문대법률과졸 한국통신대학법학과졸, 두북농협이사 두서면청년회장, 두서면체육회장 두서면청소년선도위원 울주군생활체육회 이사 제2대울주군의회의원, 울주문화원이사 두광중학교운영위원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내무위원장
 金 知 浩 (54. 9. 5)	남	상북면	상북고졸(현, 경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경의고 운영위원 국제라이온스클럽 355-1지구 발전위원 울주군생활체육협회 부회장 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金 璡 根 (49. 4.14)	남	삼남면	부산동성고졸 금강불교대학2년수료 삼남면정자문 위원 관설당 서예협회 회원 울주환경연합 삼남지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辛 東 斗 (38. 5. 6)	남	삼동면	부산상고졸 울산대 산업경영대학원수료 울주군기획감사실장 울주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삼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민주평통울주군협의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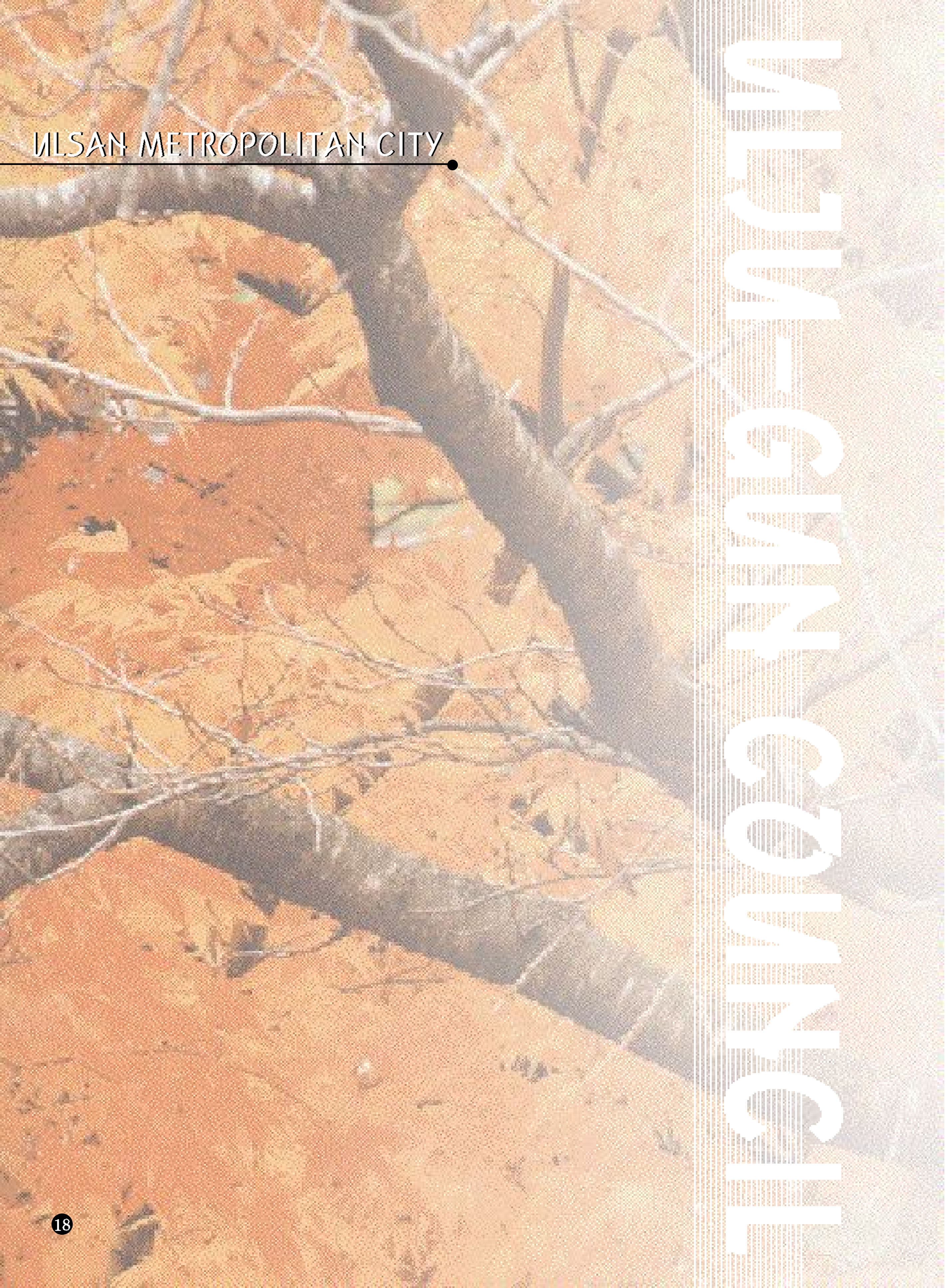
ULSAN METROPOLITAN CITY
ULJU-GUN COUNCIL

議政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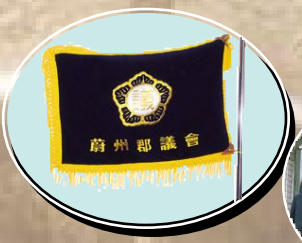

二 代

제2대 울주군의회 개원

농업진흥지역대체 지정반대 긴급 간담회

二代

삼동 공원묘지 추가지정 민원 관련 현지조사

'99 화랑훈련 참관

二 代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二 代

정기회예산안 심의

제1회 군수배 읍·면 대항 축구대회 참석

二 代

농촌 일손 돕기 지원

노르웨이 베르겐시 의회 방문

二 代

사회복지시설「성애원」위문

중국 래서 시장일행 우리의회 방문

三 代

제3대 울주군의회 개원

제3대 울주군의회 개원 축하연

三 代

중국 교주 시장일행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삼동 출강 소류지 제방붕괴 응급복구

三 代

우리농산물 판매 홍보

합천군 수해 위문품 전달

目次

Contents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의회 현황 ····· 35

제2절 울주군 현황 ····· 40

제2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1절 지방의회의 권한 ····· 49

제2절 지방의회의 역할 ····· 50

제3절 지방의회 소집 및 회기 ····· 51

제4절 지방의회 운영 ····· 52

제5절 의안 등 처리결과 ····· 53

제6절 청원의 심사 처리 결과 ····· 54

제7절 진정 등 민원서류 처리절차 ····· 54

제8절 진정서 처리현황 및 세부처리내역 ····· 55

Contents

제3장 울주군의회 운영

제1절 의회운영 현황 ····· 83

제2절 주요의정활동 현황 ····· 85

제3절 회기별 운영실적

- 제27회 임시회 ····· 89
- 제28회 임시회 ····· 101
- 제29회 임시회 ····· 112
- 제30회 임시회 ····· 113
- 제31회 임시회 ····· 117
- 제32회 임시회 ····· 118
- 제33회 임시회 ····· 124
- 제34회 임시회 ····· 130
- 제35회 임시회 ····· 137
- 제36회 2차 정례회 ····· 141
- 제37회 임시회 ····· 150
- 제38회 임시회 ····· 161
- 제39회 임시회 ····· 168
- 제40회 임시회 ····· 169
- 제41회 1차 정례회 ····· 173
- 제42회 임시회 ····· 176
- 제43회 임시회 ····· 179
- 제44회 임시회 ····· 186
- 제45회 2차 정례회 ····· 192
- 제46회 임시회 ····· 200
- 제47회 임시회 ····· 203

• 제48회 임시회 ····· 213
• 제49회 임시회 ····· 215

제4절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조사
• 2000년도 ····· 217
• 2001년도 ····· 245

제5절 군정질문 및 4분 자유발언
Ⅰ.군정질문 ····· 271
• 제28회 임시회 ····· 271
• 제33회 임시회 ····· 284
• 제34회 임시회 ····· 303
• 제36회 임시회 ····· 306
• 제37회 임시회 ····· 315
• 제45회 임시회 ····· 320

Ⅱ. 4분 자유발언 ····· 334

제4장 부 록

제2대 의원선거결과 ····· 339

의원논단
• 의장 변양섭「주민을 위한 배움, 부끄러워 말자」 ····· 342
• 의원 이몽원「40대의 역경」 ····· 344
• 의원 김지호「명산이 있는곳 우리고장 상북면」 ····· 347
• 의원 김진근「야맥」,「송이버섯」 ····· 349

ULJU-GUN COUNCIL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의회현황

제2절 울주군현황

제1절 의회현황

① 연 혁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 25 전국초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울산56명)
- 1952. 5. 10 전국도의회 의원선거
- 1956. 8. 8 전국시·읍·면장 및 제2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울산 50명)
- 1956. 8. 13 전국도의회의원선거
- 1960.12. 12 전국도의회의원선거
- 1960.12. 19 전국 제3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울산 50명)
- 1960.12. 26 시·읍·면장 및 도의회의원선거
- 1960.12. 29 도지사 선거
- 1961. 9. 1 지방의회해산(5.16군사혁명포고제4호)

1962. 6. 1 - 울산시 승격

- 1991. 3. 26 전국 시·군기초의회의원선거(울산군14명)
- 1991. 6. 20 전국 시·도광역의회의원선거
- 1991. 4. 15 제1대울산군의회개원
- 1991. 7. 8 제1대경상남도의회개원

울산시·군 통합이후

- 1995. 1. 1 울산시·군통합
- 1995. 1. 10 울산시·군통합초대울산시의회개원(64명)
- 1995. 6. 27 전국4대지방선거실시
  (시·도지사, 시·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 1995. 7. 10 제2대경상남도의회개원
- 1995. 7. 11 제2대울산시의회개원

울산광역시승격이후

- 1997. 7. 15 초대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개원(14명)
- 1998. 6. 4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지방선거실시
- 1998. 7. 8 제2대울주군의회개원(12명)
- 2002. 6. 13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지방선거실시
- 2002. 7. 8 제3대울주군의회개원(13명)

② 역대의장단

의장명단

구분	대수		지역	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경상남도 울산군	1대		삼남	박명순	1932. 9.13	'91. 4.15~'92. 7.15
	2대		농소	한성두	1941. 3.31	'92. 7.16~'93. 4.14
	3대		온양	오세홍	1945. 3.28	'93. 4.15~'96.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1대		언양	김광수	1946. 3.28	'97. 7.15~'98. 6.30
	2대	전반기	범서	이정우	1936.11. 7	'98. 7. 8~'00. 7. 7
		후반기	언양	변양섭	1946. 9.28	'00. 7. 8~'02. 6.30
	3대	전반기	언양	변양섭	1946. 9.28	'02. 7. 1~'04. 6.30

부의장명단

구분	대수		지역	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경상남도 울산군	1대		서생	김용원	1948. 1. 1	'91. 4.15~'91.10.24
	2대		웅촌	이동석	1950. 4.28	'91.10.25~'93. 4.14
	3대		언양	김광수	1946. 3.28	'93. 4.15~'96.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1대		범서	이정우	1936.11. 7	'97. 7.15~'98. 6.30
	2대	전반기	언양	변양섭	1946. 9.28	'98. 7. 8~'00. 7. 7
		후반기	서생	이보근	1951. 7.10	'00. 7. 8~'02. 6.30
	3대	전반기	청량	김철준	1956.10. 9	'02. 7. 1~'04. 6.30

③ 의회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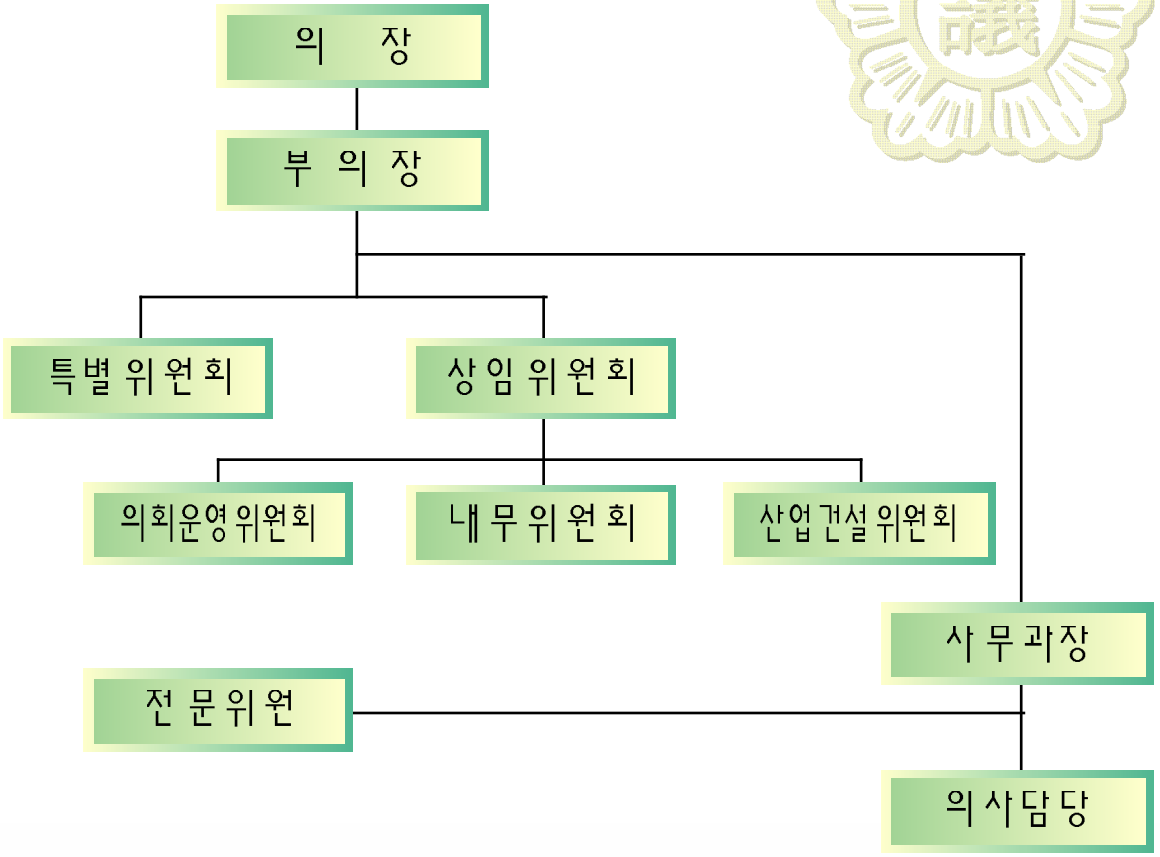

사무과 직원 : 정원 15명, 현원 15명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5	3	2	3	1	6
현 원	15	3	2	3	1	6

④ 제3대 의원현황

의 장 단

구 분	대 수	지 역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의 장	제3대	언양읍	변양섭	1946. 9.28	2002. 7. 1~
부의장	제3대	청량면	김철준	1956. 10.9	2002. 7. 1~

직 업 별

계	농 · 축산업	제조업	상 업	기 타	비 고
13	5	1	1	6	–

연 령 별

계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13	3	5	2	1	1	1

⑤ 의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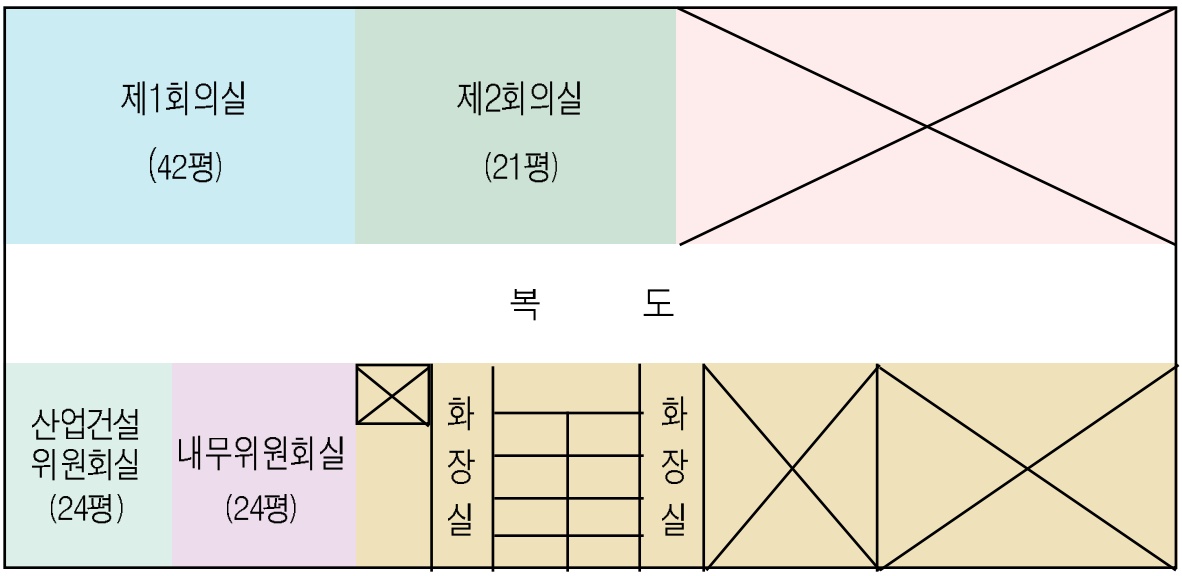

(신관 청사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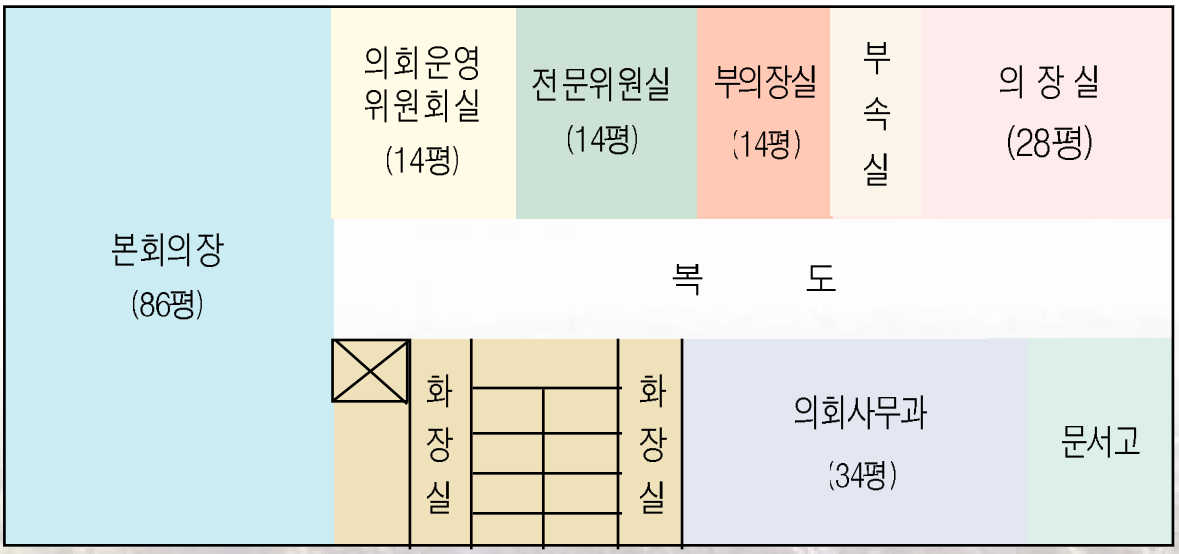

(신관 청사 4층)

제2절 울주군 현황

① 연혁

삼한시대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삼국시대
■ 신라5대 파사왕때 굴아화촌에 현을 설치.
■ 경덕왕16년 이름을 하곡으로 고쳐 임관군에 속함.

고려시대
■ 성종 14년(995년) 별호를 학성도호부라 칭함.
■ 현종 19년(1018년) 울주로 최초지정

조선시대
■ 태종 13년(1413년) 울산군으로 개칭
■ 선조 13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

근　　대
■ 1914. 3. 1 : 언양군을 울산군에 통합
■ 1931. 4. 1 : 울산읍으로 승격

현　　대
■ 1962. 6.　1 : 울산시승격분리,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개칭
■ 1963. 1.　1 : 울주군 서생면을 동래군 편입
■ 1983. 2. 15 : 양산군 서생면이 울주군 편입
■ 1991. 1.　1 : 울산군으로 명칭 변경
■ 1995. 1.　1 : 울산시 · 군통합되어 울주구로 개칭
■ 1995. 3.　2 : 농소면이 읍으로 승격
■ 1996. 2.　1 : 온산면, 언양면이 읍으로 승격
■ 1997. 7. 15 : 울산광역시울주군승격 (농소읍, 강동면분리)
■ 2001. 3.　1 : 온양면, 범서면이 읍으로 승격

② 면적 및 행정구역

(2002. 6. 30 현재)

(광역시:1,056.35㎢)

읍·면별	계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면적(㎢)	754	37	69	64	77	37	60	52	63	79	123	31	62
법 정 리	118	13	15	10	10	10	9	9	8	9	13	5	7
행 정 리	315	39	35	31	44	21	28	26	15	17	21	23	15
자연부락	452	17	50	44	62	23	49	17	41	36	54	37	22
반	1,364	133	224	125	289	69	163	81	40	42	86	92	20

● 면 적 754.9㎢
(광역시의 71.5%)

● 인 구 170,999명
- 가구수 : 56,678세대
- 인구밀도 : 21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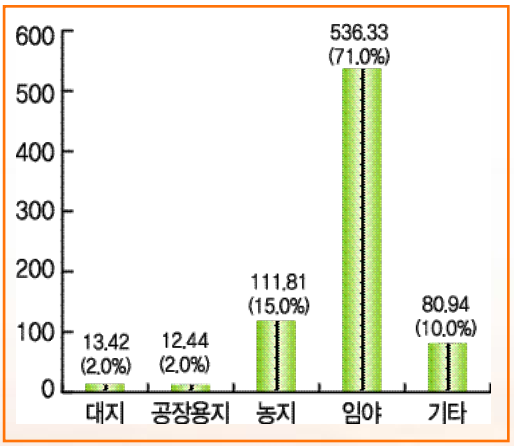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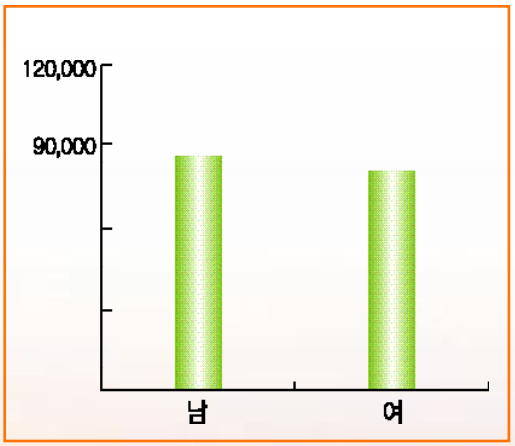

③ 행정조직

(2002. 6. 30 현재)

기 구

본 청	3국, 2담당관, 1단, 13과, 1사업소, 73담당
의 회	1과, 3전문위원, 1담당
읍 · 면	4읍, 8면, 52담당

공무원 정원

계	본청	의회	보건소	읍 · 면
584	323	15	63	183

직급별 현황

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이하				
584	490	5	33	129	151	172	78	2	13	1

연도별 변동사항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30	7.1					
정원	566	630	569	577	575	572	584

④ 예산규모

(2002. 6. 30 현재)

2002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일 반 회 계	145,814	76%
특 별 회 계	47,061	2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00	0.3%
의 료 보 호 기 금	71	0.04%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480	0.2%
주 차 장	391	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6,883	19%
농공단지조성사업	127	1%
댐 주 변 지 원 사 업	8,508	4%

일반회계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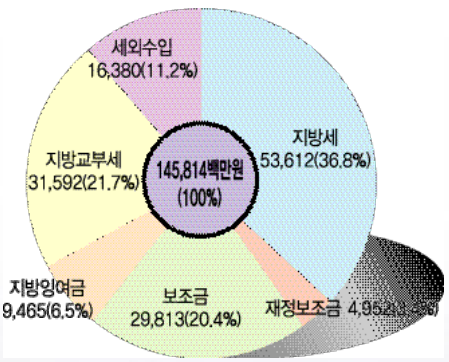

일반회계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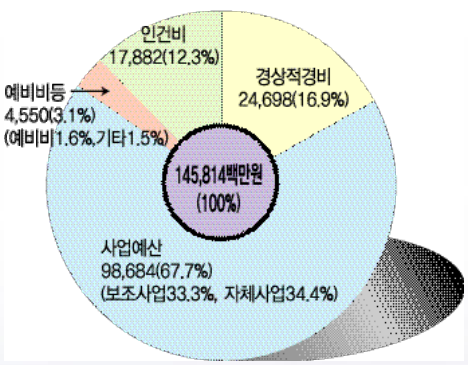

⑤ 도시기반시설

(2002. 6. 30 현재)

주 택 (주택보급률 : 96.58%)

(단위 : 호)

읍·면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비거주용
계	24,965	22,880	777	1,467	839

국 토 이 용 계 획

(단위 : ㎢)

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54.929	395.882	0.178	252.723	63.270	42.876

도 시 계 획

(단위 : ㎢)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395.877	15.35	0.82	29.52	350.187	-

도 로

(단위 : ㎞)

구 분	노 선 수	총 연 장	도 로 포 장		비 고
			포 장	포장률(%)	
계	161	820.44	579.74	72.8	-
고속도로	2	41.14	41.14	100	-
일반국도	5	132	132	100	-
지 방 도	1	13.5	13.5	100	-
군 도	29	287.2	225.9	78.6	-
농어촌도로	124	346.6	167.2	48.2	-

자동차등록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비고
57,257	38,799	5,251	12,680	527	-

온산항 항만시설 능력

안벽연장(잔교포함)	접 안 능 력	연간하역능력	항내 수면적
3,164M	21척 1,096척DWT	4,387천톤	4,660천㎢

국가공업단지

구 분	총면적(㎡)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억원)
온산국가공업단지	17,071	127	9,160	124,586

농공단지

단지별	조성규모(천평)	입주			미입주	
		업체수	면 적	종업원수	업체수	면 적
계	100	29	80	2,845	-	-
상 북	42	9	32	1,210	-	-
두 서	37	15	31	1,380	-	-
두 동	21	5	17	255	-	-

장애인 복지시설

(단위 :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수용인원 (정원/현원)	관리부서	비고
		부 지	건 물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두동면 봉계리 310-25	13,751	3,654	260/148	복지위생과	-
사회복지법인 혜진원	언양읍 반천리 895-2	5,039	993	30/24	복지위생과	-

아동보육시설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립	민 간	직 장	가 정	종 교	법 인
시 설 수	82	3	41	1	29	4	4
이용인원	3,218	218	2,045	52	419	201	283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시설	노인지회
시 설 수	277	1	·	271	4	1
이용인원	23,584	53	·	10,083	420	13,028

의료기관

(단위 : 개소)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보건소 (지소,진료소)	비고
		소계	일반	치과	한의원		
1	7	87	50	21	16	1	–

교육기관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초등(분교)	중등	고등	대학	비고
학교수	45 (3)	26 (3)	10	8	1	–
학생수	32,843	20,017	3,899	6,355	2,572	–

제2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1절 지방의회의 권한

제2절 지방의회의 역할

제3절 지방의회 소집 및 회기

제4절 지방의회 운영

제5절 의안 등 처리결과

제6절 청원의 심사 처리 결과

제7절 진정 등 민원서류 처리절차

제8절 진정서 처리현황 및 세부처리내역

제2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1절 지방의회의 권한

종 류	내 용
의 결 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행 정 감 사 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감 사 :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 군정전반 감사 - 조 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 조사(수시)
자 율 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결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선 거 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의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청 원 수 리 권	•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그 외에도 의견표명건, 서류(자료)제출권, 출석 및 질문요구권이 있다

제2절 지방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예산 결산안 승인, 청원 진정처리

○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 행정사무감사 조사, 동의, 승인,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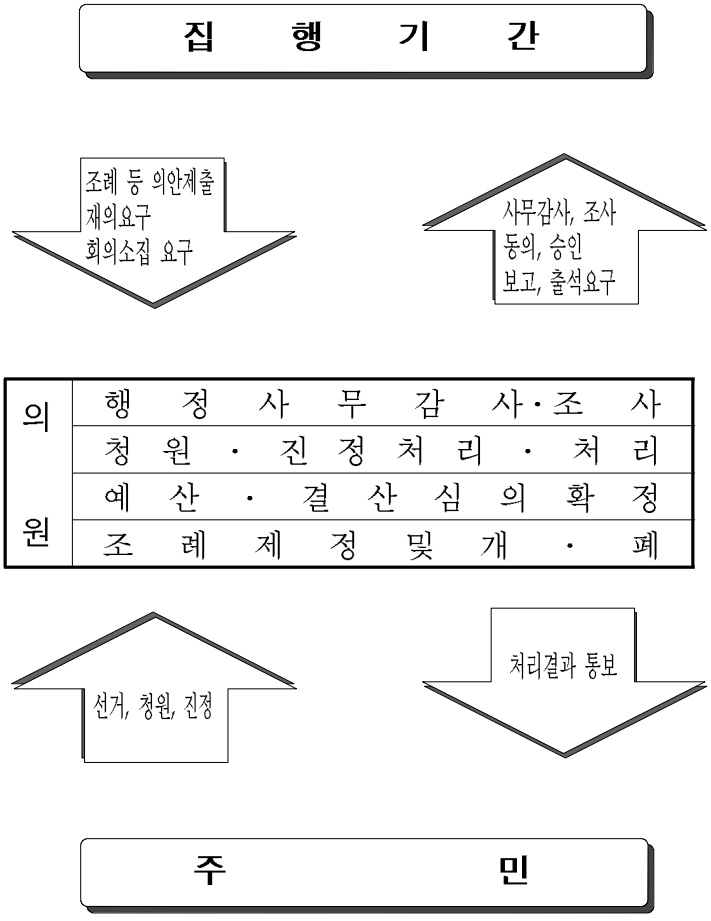

제3절 지방의회 소집 및 회기

1. 소집권자

○ 원칙적으로 의회 의장

○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

2. 소집 요구권자

○ 정례회 : 별도소집 요구하지 않음

○ 임시회 :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시

3. 소집기간

○ 정례회 : 연2회 35일이내

- 제1차정례회 : 매년 7월 10일(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 10월)

- 제2차정례회 : 매년 11월 28일

○ 임시회 : 연 45일 이내(매회기 15일 이내)

※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초과 못함.

4. 소집공고

○ 집회일 5일전까지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 게시로 공고

5. 부의안건 공고

○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부의안건이 있을 대 사전공고

제4절 지방의회 운영

1. 의사일정

○ 전체일정 : 의장이 의원과 협의 본회의에서 결정

○ 당일일정 : 전체 의사일정과 위원회안, 심사과정 등을 참고로 의장이 결정

○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결정

2. 정 족 수

○ 의사정족수 : 본회의 및 위원회 - 재적위원 1/3이상 출석
(회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의결정족수

안 건 명	의 결 정 족 수
의원제명,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재의 요구의 건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의장·부의장 불신임 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의장, 위원장의 결정권 불인정)

제5절 의안 등 처리결과

1. 의안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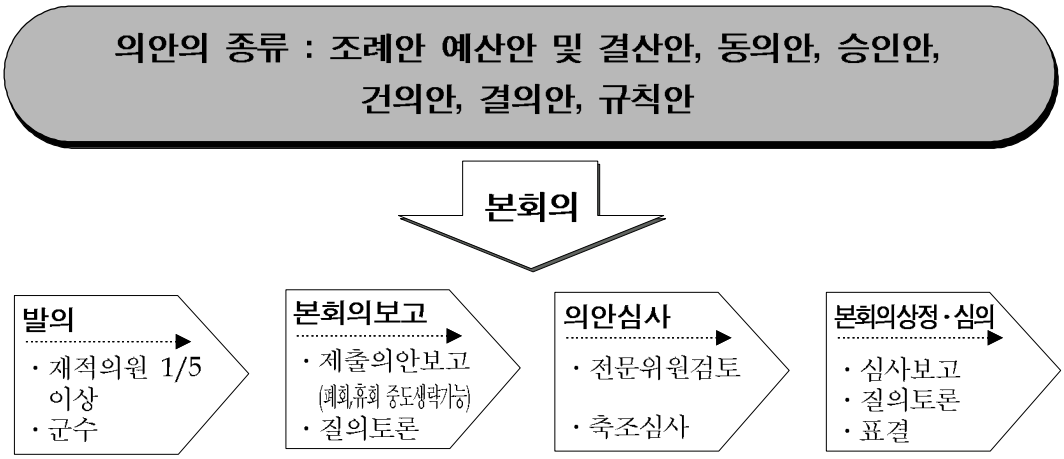

2. 예산안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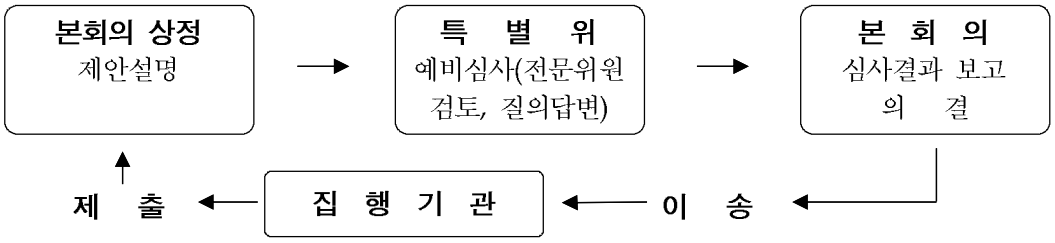

3. 행정사무감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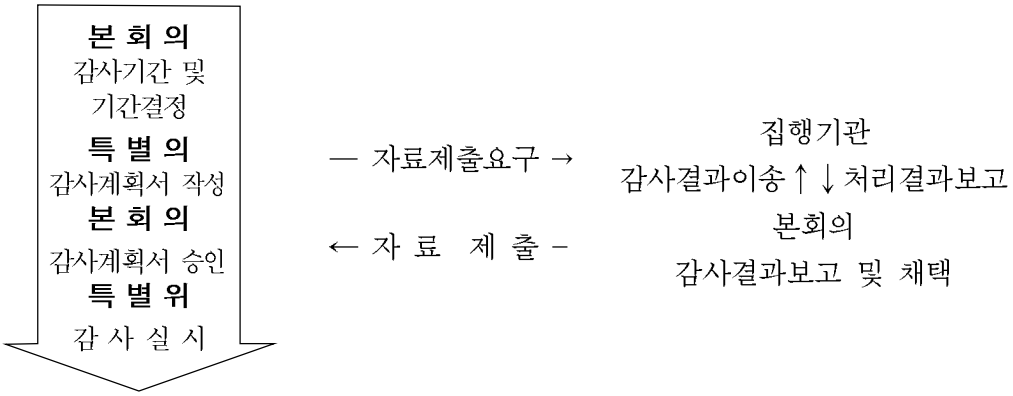

제6절 청원의 심사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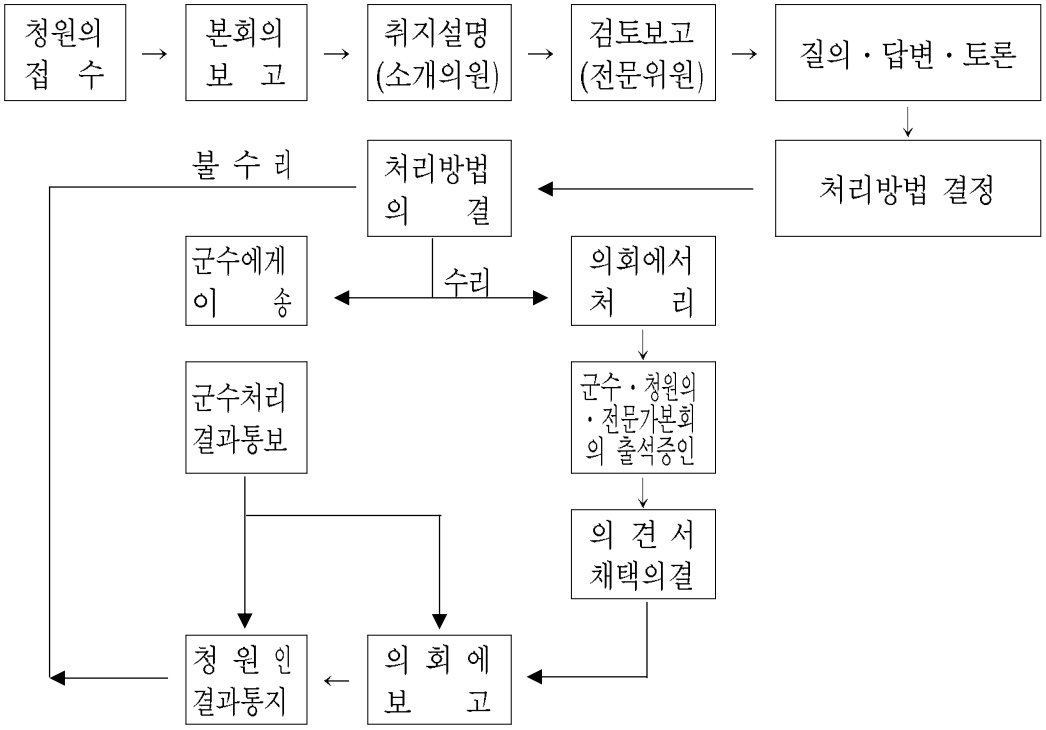

제7절 진정 등 민원서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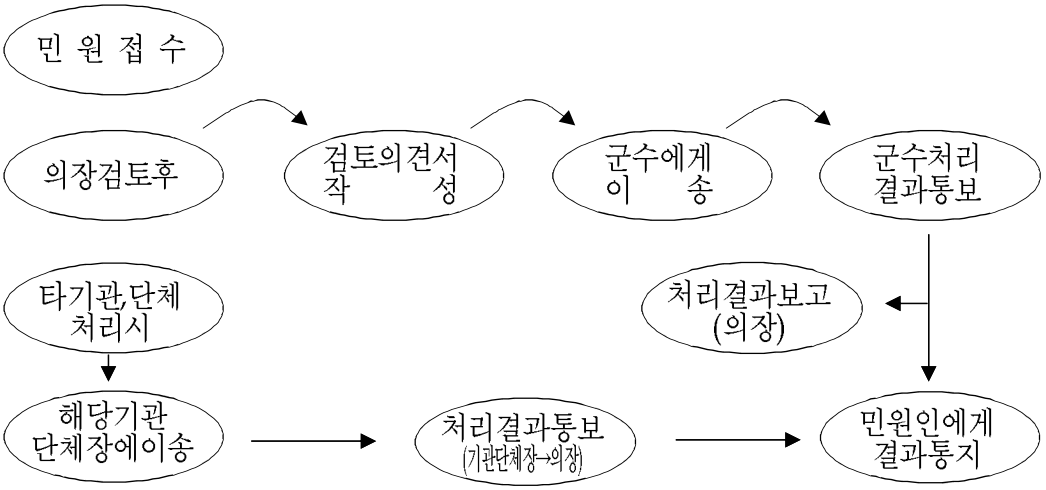

제8절 진정서 처리현황 및 세부처리내역

○ 처리현황

계	2000	2001	2002(1.1~6.30)
71	27	28	16

○ 세부처리내역

<2000년도>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청량면 상남리 620-8	김철준외 1,030명	덕하역을 증설하고 증설사업으로 인한 토사 및 묘목을 인근 석유화학공단의 인공산으로 활용토록하여 역광장 건립시 출입구를 덕하시장을 관통하도럭 요구	울산광역시 철도청	• 1. 21 의원간담회협의 건의서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 철도청장에게 송부	2000. 1. 29 중간통보	
청량면 문죽리 732	김인호외 19명	월드컵주경기장 입구 계획도로가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계획되어 있어 소음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마을 뒤 100M이상 우회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구	울산광역시	• 2. 16 울산광역시시장 이첩 <처리결과> -본 도로는 국도 14호선과 동일노선으로 우리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음으로 노선선정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통보 하였음.	2000. 2. 16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언양읍 반천리 760-2	천종회	언양읍 반천리 산 182번지에 건립될 장애인 복지시설은 지역 여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으로 허가 취소 내지 다른 장소로 옮겨 건립할 것을 요구	도시건축과	• 2. 16 집행부이첩 〈처리결과〉 -현재 본 위치에 장애인복지시설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 처리할 계획임		
서생면장외 주민 24명		31호 국도가 마을 중심을 관통하고 있고, 또한 노선 굴곡 및 경사가 심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부산국토관리청	• 2. 18 부산국토관리청장 이첩 <처리결과> -건설교통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 및「국도건설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장래 본부간의 도로를 4차도로 확장시 검토할 계획임.	2000. 2. 18	
범서읍 망성리 92-4	임압들 사일들 자치위원회 대표 안종해	울산광역시에서 임암들 사일들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코져함에 몽리민 일동은 반대함.	울산광역시 농림부	• 1. 21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군내 농업진흥지역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 시장 및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을을 통보함.	2000. 2. 28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웅촌면 곡천리 307	곡천들 농업진흥지역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대표 이대언외 29명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곡천들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코자함에 주민들이 반대함.	울산광역시 농림부	• 1. 21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군내 농업진흥지역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 시장 및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음을 통보함.	2000. 2. 28	
웅촌면 초천리 184	양준석외 주민 60명	웅촌 초천리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회야천 교량가설을 건의	건설과	• 2. 28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 현지여건상 교량가설은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시행에는 많은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추후예산 편성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숙원 사업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2000. 2. 28	
삼남면 방기리 824	김창석	골프장 건립에 따른 다음사항을 건의함. -식수 및 생활용수 문제해결 -골프장 진입로 문제 해결 -방풍림 및 차단녹지 공간설치	도시건축과	• 3. 15일 의원현장 방문 • 3. 20일 1차중간 통보 • 4. 1일 의원간담회 개최(마을주민대표 7명 사업자측 5명 참석)	2000. 4. 1	

진정인 주소	진정인 성명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온양면 대안리	김차용외 4명	• 농기계 횡단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승강대기소 시설	건설과	• 3월 22일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횡단보도앞 차량정지선 조정은 관할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견조회 후 처리할 예정이며, 버스승강장 이설은 대안지하도 진입도로정비공사 완공후 검토할 것임.	2000. 3. 22	
언양읍 반천리 34-1	김재환외 14명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취소내지 타 장소로 이동 검토 요청	도시건축과	• 3. 22 집행부 이첩 • 현재 본 위치에 장애인 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될시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 처리할 계획임.	2000. 3. 22	
언양읍 반천리 34-1	김재환외 4명	• 불법철근가공 및 재단공장설치운영, 인부기숙사불법운영 • 소음, 진동발생, 불법세차 • (주)동인의 지하수공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혼탁 및 고갈	도시건축과	• 3. 22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현재 재단공장은 운영되지 않는 상태이며, 인부기숙사는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현재 사용중이며, -'99. 8월경 절단기는 철거되었으며, 차량통행에 따른 먼지발생은 수시로 작업장에 살수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세차행위 및 차량세차행위에 대하여는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토록 하겠음.	2000. 3. 22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두동면 구미리 475	두동면 이장협의 회장 전진수	범서면 지지입구에서 허고개까지 약1Km의 기존도로 한쪽에 오르막과 차선 설치 요망	건설과	• 4. 20 집행부 이첩 • 4. 18 울산광역시 이첩	2000. 4. 20	
온산읍 산암리 360 (S-oil (주)노동조합)	신진규 및 조합원 일동	S-oil(주)의 경영흑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고용인원의 감축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악화 및 고용불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진정		• 6. 12 S-oil(주)진정서 송부	2000. 6. 12	
청량면 덕하리 유림APT 102동 1510호	박의호	반장들이 "반장회의"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회의가 처리하여야 될 의결과 계약사항 등을 "반장대표 선출"을 통하여 임의대로 처리하려 하므로 반장들이 하루빨리 공석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구 있도록 행정지도 요청	도시건축과	• 7. 7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반장을 포함한 입주민에게 동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으며 동아파트의 반상회시 군에서 참석하여 행정지도토록 하겠음.	2000. 7. 7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두서면 전읍리 791	하상식외 63명	• 석산개발 및 석산진입로 관련 공사설명회개최 촉구 • 환경단체 및 주민이 참여한 환경영향 재시행과 소음진동에 대한 재측정 및 석산개발 지점에 대한 조기시험발파 촉구 • 진입로 세륜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살수 실시 등	한국수자원공사	• 7. 14 한국수자원공사 이첩 <처리결과> -공사설명회는 주민대표자와 협의하여 조속개최 -대곡댐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환경부와 협의완료한 시안으로 평가 재실시는 곤란하며 사후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조사시 주민참여 가능. -석산개발을 위한 시험발파는 전체 공정계획상 2001년 3월 실시예정이며 석산 개발시 석산부지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장 및 진출입로 등에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토록 하며 주민들의 요구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2000. 7. 14	
언양읍 서부리 151	언양시설채소 작목반 반장 김영생	난방시설을 할 수 없는 소형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하여 환풍기 설치사업비 3,621,800원 지원 건의	농산과	• 8. 1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우리군 예산사정상 당장 시행은 불가하고, 금후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의 환풍기 설치 수요조사 실시후 재검토 하겠음.	2000. 8. 1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두동면 구미리 677-3	대민이장 최형식외 57인	현재 사용중인 마을회관이 낡아서 면복지회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마을회관을 재건립해 줄 것을 건의	도시건축과	• 8. 5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96. 12월 마을회관 일제조사에 따른 마을회관건립 우선순위에 의거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2001년 예산편성시 검토하겠음.	2000. 8. 5	
상북면 덕현리 527	박상갑외 52인	상북면 삽제마을 여관건입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결사반대	도시건축과	• 8. 8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본 숙박시설 허가 신청건은 2000. 8. 3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으며, 농경지의 피해등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건축허가시 허가 조건을 부여하였고, 지하수의 오염등에 대하여는 오염 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지하수등이 오염되지 않게 사업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숙박시설이 농촌마을 정서에 위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수 등을 이용하여 인근마을에서 건축물 및 건축물 이용자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였고 -주민들의 탄원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건축주에 협조 요청 하였음.	2000. 8. 8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 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6.25 참전동지회	울주군 지회장	6. 25 참전용사 만남의 모임 지원요청 -8,400,000원	사회복지과	• 8. 18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6. 25 참전용사모임 행사를 위한 지원요청의 건은 귀회와 협의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남북화해 동참의 뜻으로 2000. 8월말경에 전회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갖고자 적극 추진중임	2000. 8. 18	
언양읍 남부리 283-2	김준길외 15명	언양 JC 명칭을 울산광역시에서 울산JC로 개명 요구한 건에 대하여 반대하며 현재의 언양명칭이 계속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	한국도로공사	• 9. 19 한국도록공사 경남지역 본부장 이첩 〈처리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언양 JC(분기점)」으로 사용 예정임	2000. 9. 16	
온산읍 덕신리 280-1	온산읍 청년회 회장 한성환	공해차단녹지 보호를 위하여 온산읍 화산리 558번지외 25필지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철회 요청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도시건추과	• 10. 2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진달	2000. 10. 2 반송 재통지 (10.19)	
온산읍 덕신리 280-1	온산읍 청년회 회장 한성환	벌목허가시 벌목 및 이식계획서 등이 있어야하며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수목과 벌목한 수목을 지정해야 하나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에 따른 해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사업의 인·허가시 지역민의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할것	지역경제과	• 10. 2 집행부 이첩 〈처리결과〉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되어 신청인이 200. 9. 30일 취하원 제출하여 종결 처리됨.	2000. 10. 2 반송 재통지 (10.19)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언양읍 서부리 187 세명APT 806호	세명 APT 자치회 회장 손진근	세명다이아몬드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 건의	건설과	• 10. 13 집행부 이첩 • 현지 확인결과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군 예산사정상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지역여건, 투자효과, 주민 수혜도 및 사업비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할 예정임	2000. 10. 13	
언양읍 작동리 487-25	울주군 방울토마토 작목반대표 권해옥	울주군 방울토마토 수출 작목반의 채소시설하우스 농가는 불안한 채소류 가격과 과중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운 실정임. 겨울철 난방비 경감을 위해 울주군에서 난방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	농산과	• 10. 13 집행부 이첩 • 난방비 지원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군 예산 사정상 당장 지원은 불가하고, 금후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하겠으며, 농가에서는 우리군의 계속사업인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농어촌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과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농업경영종합자금 지급 등을 적극 활용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 경영안정을 강구하기 바람	2000. 10. 13	
삼동면 하잠리 738	신상주	삼동면 하잠리 624번지외 4필지 상의 울산 노인의집 노인 치매전문(난치병 환자) 주용시설 허가와 관련 병원균으로 인한 생활오수 오염, 지가하락 등의 우려가 있으며,현노인치매수용시설 유치장소는 지상 30미터 지점에 철탑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치매환자들의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함	도시건축과	• 11. 7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울산노인의 집 관련 주민설명회를 2000. 10. 10 삼동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0. 11월중에 재차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2000. 11. 7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남구 달동 1360-10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입찰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 일방당사자에게만 전가 시킬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부담되어야 하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사무제경비를 조사·산출하여 실비수준으로 요율산정 또는 어려운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징수를 면제해 줄 것 건의		• 우리군 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시 IMF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군재정 확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금액을 산정 징수토록 의결된 사항임	2000. 11. 20	
삼남면 신화리 1387	마산마을 주민대표 김광기	삼남면 마산마을 공중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지만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유류비 지원협조 건의		• 12. 11 집행부 이첩	2000. 12. 11	

<2001년도>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상북면 덕현리 52-1	박상갑외 68명	상북면 덕현리 614-4번지 외 25필지 상의 납골당 및 화장장 유치 반대	복지위생과	• 1. 18울주군 이첩 〈회신내용〉 -2001. 1. 29 14:00 상북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진정인들에게 참석토록 조치하였음.	2001. 1. 18	
웅촌면 석천리 395	이동석	방치폐기물 청결유지 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회의 협조 요구	환경보호과	• 2. 13 울주군 이첩 〈회신내요〉 -청결유지 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한 것이며 -이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01. 2. 28일까지 조치후 결과 제출토록함.	2001. 2. 13	
언양읍 반송리 485	이종래외 3명	언양읍 반송리 반송들 용수로가 정비되어 있으나, 현재 건의 지역은 잔여토지 용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농업 용수 공급 및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등 영농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콘크리트 용수로 설치 요구	농산과	• 2. 13 울주군 이첩 〈회신내용〉 -우리군 예산 사정상 당장 시행이 불가하나,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재검토 하겠음.	2001. 2. 13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언양읍 반송리 397	강대만외 43명	언양읍 반송리 농로 포장 및 용수로 복개와 가스충전소 전용도로 설치 반대	농산과	• 2. 13 집행부 이송 〈회신내용〉 -동의서의 지번 및 목적이 가스충전소를 건립함에 있어 반송리 540번지 농로상에 가스차량 통행을 하고자 함으로 하등 지장이 없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용수로 복개 포장은 불가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농업기반 시설물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피해발생시는 행정조치 하겠음.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농로를 포장하여 개인의 산업화 도로로 사용할 수 없음.	2001. 2. 13	
언양읍 반천리 1023-52	장태원외 9명	반천 현대아파트내 마을회관이 없어 불편하므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건립하여 달라는 건의	허가과	• 2. 26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건립이 가능하나 귀 아파트의 경우는 새로이 마을회관 등을 건축할 시 우리군의 명의(소유)로 건립하여야 하므로 관련법에 위배되어 건립이 불가함.	2001. 2. 26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두서면 차리 86	황기원의 21명	차리저수지 축소 공사에 필요한 점터확보를 위한 토사채취허가 건의	산림과	• 2. 26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토사채취코자 건의하신 임지는 인공조림 성공지로서 임상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축조중인 저수지상단부로서 -동 저수지의 상단부를 광범위하게 토사채취하여 형질을 변경한다는 것은 자연경관저해는 물론 저수지 유지관리 상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토사채취 불허가된 지역임.	2001. 2. 26	
언양읍 남부리 200-2	김교학외 17명	언양 남부리 남천 강변에 24년전부터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다고 있어 계획선 변경 건의	도시과	• 2. 26 집행부이첩 <회신내용> -본 도시계획도로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의견조회한바 남천천의 하천 정비기본계획저촉 및 간선도로 가로망 계획상 일부 변경이 어렵다고 함.	2001. 2 .6	
남구 신정4동 884-5	김건치	회야댐 건설과 관련하여 철거 이주민들이 망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애향의 동산 건립을 건의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 2. 26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이첩 <회신내용> -금년도 시행할 예정인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 울주군 및 댐주변지역지원 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지리적 여건, 위치, 댐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애향의 동산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001. 2. 26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삼남면 교동리 655-2	김영식외 762명	수남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며, 과거에 계획 입안한 공원시설과 체육, 문화시설 지구로 변경하여 개발할 것을 요구	산림과	• 2.26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현재 수남집단시설지구 내기 수립되어 있는 공원사업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며 -지주들로부터 동소공원계획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 여건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2001. 2. 26	
삼남면 상천리 33-3	박성규외 13명	삼남면 하잠리 산 405번지일대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음식물 쓰레기로 유기질비료생산시설 공중을 만들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악취로 인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낌은 물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므로 시설 허가 반대	지역경제과	• 3.19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사업주가 공장설립 추진일정 변경등으로 2001. 2.28 취하원 제출	2001. 3. 19	
온양면 대안리 417	미도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정재록외1명	• 등산로에 가로등설치 건의 • 체육공원내 방충망을 철거하고 방풍벽 설치 건의		• 3. 17 취하		

진 정 인		진 정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내 용	결 과 통지일	비고
주 소	성 명					
두동면 삼정리 373	백남춘외 44명	대곡댐 수몰지역 내의농지에 대하여 영농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건의함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대곡댐지원사업소)	• 3. 20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이첩 <회신내용> -문화재 시•발굴조사 조경수 수목이식, 벌목,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러, 지방도로 이설 및 댐축소 공사를 위한 골재채취등의 원활한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경지에 대한 2001년도 농장물 경작은 일절 불가함.	2001. 3. 20	
온양면 대안리 417번지	미도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정재록외1명	온양면 미도파 아파트 주변 체육공원등산로에 보안등 설치 건의	건 설 과	• 3. 19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체육공원까지 한전 배전선로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등 설치시 과다한 예산소요 및 기술적 문제(전압강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체육공원 범위확대로 한전배전선로가 설치시 보안등 설치를 검토하겠음	2001. 3. 19	
삼남면 교동리 1060-1	향교마을이장 채구건외 2명	삼남면 교동리 향교마을에 마을회관 건립 건의	허 가 과	• 5. 4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우리군의 마을회관건립사업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시설물 노후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마을에서건축가능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군 명의로 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므로 귀 마을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군 마을회관 건립 사업대상이 아님	2001. 5. 4	

진 정 인		진 정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내 용	결 과 통지일	비고
주 소	성 명					
상북면 산전리 992-3	김문태 (상북농협 조합원)	상북면 청사 확장 신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소대형 차량진입 및 앞으로 다수의 소대형 차량 진입이 예상되어 농협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면청사 남쪽으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건의		• 진입도로 부지관련 사항은 2001면 4월 9일 울주군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어 2001년 4월 25일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 편성되었음	2001. 5. 4	
온양면 대안2리 542	대안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시상수도 인입분 개점에서 대안현대아파트 입구 계량기까지의 인입공사와 상수도인입공사시 시설분담금 면제 건의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5. 4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이첩 <회신내용> -대안현대아파트 전용 상수도 인입은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부담으로 상수도 인입시설비 및 시설분담금을 선납하여야 용수공급이 가능함.	2001. 5. 4	
양산시 북부동 재흥(아) 다동 306호	이승은	서생면 대송리 산 110번지 소재 간절곶 농수산물 구판장의 용도외 사용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사실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무사안일하게 처신하는 공무원의 은폐사실 진위 여부를 가려 처벌 요구	지역경제과	• 5. 21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서의 견조회 결과 진정인의 불법행위로 군유지에서 대부허가를 득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대송마을 공두구판장과 관련하여는 군유재산 대부계약시 대부조건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계고하였음.	2001. 5. 4	

진 정 인		진 정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내 용	결 과 통지일	비고
주 소	성 명					
두동면 천전리 331-2	송능송외 832명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 및 관광객의 증가로 교통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반구대 진입로의 확장공사를 요구	울산광역시 (문화 관광과)	• 7. 24 울산광역시 이첩 <회신내용> -1월에 도로확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토지보상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보상이 마무리되면 반구대 암각화진입로·포장 공사를 착수할 계획임	2001. 7. 24	
언양읍 동부리 249-7	김장식외 9명	읍사무소옆 어린이공원에 군비로 마을회관 건립해 줄 것을 건의	복지위생과	• 8. 2 집행부이첩 <회신내용> -화신산업의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7.2 채수·검사의뢰한 오·폐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나 2001. 7. 26 최종 방류수에 대하여 재차채수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음. -화신산업(주)로 하여금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함.	2001. 8. 2	
언양읍 반곡리 332	박임춘외 17명	화신산업 오폐수가 논으로 흘러들어 농작물의 피해가 많으며 용수로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해결토록 건의	환경보호과	• 8. 2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화신산업의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 7. 2 채수·검사의뢰한 오·폐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나 2001. 7. 26 최종 방류수에 대하여 재차채수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음. -화신산업(주)로 하여금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함.	2001. 8. 2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언양읍 동부리 85-5	유홍준외 107명	언양초등학교 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교문 정면도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협소하여 초등학생이 이용하기 불편하며 위험이 많음. 속히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건설과	• 8.22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우리군 예산사정상 당장 사업 시행은 어려우며 앞으로 지역여건 투자효과, 주민수혜도 및 사업비 확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시행할 예정임.	2001. 8. 22	
온양읍 대안리 446-3	이장협의회회장 김화용외 45명	온양읍 관내 교통체증을 해소할수 있도록 관련계획도로의 조속한 개발을 건의	도시과	• 8. 22 울산광역시 이첩 <회신내용> -2001.7.26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가능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임.	2001. 8. 22	
두서면 인보리 394-14	김인수외 14인	마을민을 위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경로당이 없어 마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허가과	• 10.16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마을내에 회관을 건축할 국·공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자체에서 회관부지(매수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마련하여 신청할 때에는 검토 하겠음.	2001. 10. 16	
범서읍 사연리 439	김위경외 2인	농로개설 건의 (농림부 소관 구거 이용)	농산과	• 10.16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농림부 소관인 구거를 이용하여 농로 확보는 불가하며 귀하께서 포장 면적 만큼 기부체납하시면 재검토하겠음.	2001. 10. 16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서생면 신리마을	생존권 추진위원장 차병권	신고리발전소 사원택지 조성을 발전소와 인접한 신리마을에 조성 토록 건의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 11.30 한국수력 원저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 본부장 이첩 <회신내용> -사택입지로서 불가함	2001. 11. 30	
온양읍 운화리 14번지	영원아파트 입주자대표 정영삼	온양읍 영원아파트 진입로 개설 건의	건설과	• 11.30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진입로 편입토지조사 실시 • 편입토지 매입조치 : 2001. 12. 5 -보상금 : 30,492원 -지급처 : 이선형(토지소유자)	2001. 11. 30	
중구 남외동 568-6	(주)영진 환경외 4사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 개정의 부당함에 대한 진정	환경보호과	• 11.30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구·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규칙은 당초 방침대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현행과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소각장)으로 반입을 허용	2001. 11. 30	
웅촌면 검단리 274	면정자문 위원장 유태열외 13명	• 협소한 웅촌면 청사 이전 건의 -위치: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면적 : 5,958㎡ (1,802평) -소유자:농림부, 재경부, 채비지	회계과	• 11.30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서중지구구획정리지구내 7블록2노트외 6필지/5,958㎡ 중 국유지가 4,445㎡로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총괄청(재정경제부)승인 등이 결정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함. -향후 웅촌면과 지속적인 협의 검토후 이전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2001. 11. 30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남구 달동 1360-10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 회장	전자입찰 추진에 따른 입찰 참가 수수료의 합리적인 책정 건의	회계과	• 1.4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우리군에서만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경우 관역시내에서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면제하는 자치단체가 공존하는 관계로 참여업체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를 검토하기보다는 광역시에서 먼저 이를 검토한 후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결정을 기초로 구•군에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2002. 1. 4	
울주군 읍·면 영농회장단, 울주군 농업경영인, 울주군 관내 농협조합장 일동		다양한 농가 소득 안전망 정책을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	농산과	• 1. 4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논농업 직불제 추가지원 : 7,075농가 5,151ha 415,085천원 -농작물 재해보험(사과,배)비를 군이 지원하는 방안은 공이과 사익을 고려하여 다수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2002년 당초예산에 각 읍면당 10ha, 유기질 비료 시범재배를 위하여 72,000천원 확보해 놓았으며, 우수성 및 효과가 좋을시 확대	2002. 1. 4	

진 정 인		진 정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내 용	결 과 통지일	비고
주 소	성 명					
남구 신정5동 135-3	이양우외 1명	온양읍 고산리 일원에 시행한 고산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 2001. 7. 5집중호우시 발생한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하여 수차례 피해보상요구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진상규명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진정	건 설 과	• 1. 4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시공회사 통보 (지원건설 대표 지갑술) -민원인에게 침수피해 보상 완료	2002. 1. 4	
언양읍 구수리 861-1	김정호	범서-언양간 국도 4차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공사용 부지에 편입되는 진정인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 및 사용 승낙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항과공사용 가도의 허가 경위를 문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현대건설(주)	• 2002. 1. 9 시행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범서-언양 도로공사 현장 소장에 이첩 <회신내용> -진정인과 합의처리함	2002. 1. 9	

<2002년도>

진정인 주소	진정인 성명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삼남면 교동리 1060-1	채구권외 56명	교동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향교부락 회관 철거와 관련하여 교동리 토지 구획정리 조합 측에 향교부락 내에 채비지 150평 규모의 국유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 요구	회계과	• 1. 28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정리지구내 15블롯1놋트는 울산광역시 소유재산이므로 무상양여등으로 소유권 이전후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재 마을회관 건립주지 지정을 불가함.	2002. 1. 31	
두서면 활천리 290-4	손후복외 77명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새들 소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에 용도폐지 신청하였으나, 불가 통지를 받음. 주민들의 경작지 확대 및 환지감보율 하락토록 용도폐지 건의	농산과	• 1. 28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한해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용도 폐지는 불가함.	2002. 1. 31	
언양읍 반송리 246	송상준외 39명	국도 24호선 확포장고사에 따라 반송리 본동 앞에 지하통로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2.5M 박스로 설계되어 있어 더 큰 지하통로를 설치해 줄 것을 진정함	건설과	• 1.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 <회신내용> -교체요구지점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로 박스 설치가 어려운 지점으로, 700~800M 이격되어 설치 예정인 통로 박사를 이용토록 함	2002. 2. 4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언양읍 동부리 249-2 (언양 동부지 국토지구 획정리 조합)	김홍기 (조합장)외 25명	언양성지외곽 500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신축건물높이 제한을 2층 이상에서 5층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을 진정함.	문화공보 담당관실	• 2. 1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조례제정건은 시에서 지정할 사항이며, 높이 제한 완화건은 문화재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 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시로 일건 서류를 제출하였음.	2002. 2. 14	
범서읍 구영리 13-1	배정호	범서읍 구영리에 건리 완공된 단감 선과장과 저온창고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저온창고에 3층 선반설치와 선과장에 2층 선반 설치를 건의함.	농산과	• 2. 14 집행부 이첩 <결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확보코자 신청함.	2002. 2. 20	
두서면 활천리 508	최석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신라 명기 전화앵 묘소를 성역화(비문설치, 사당건립, 진혼제등) 하기 위한 사업추진 예산 반영을 건의함.	문화공보 담당관실	• 4. 4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신라동도 명기 전화앵묘소 성역화 사업은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등을 위하여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전화앵에 대한 인물 및 묘소 위치에 대한 학술적인 고증을 거쳐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사항임.	2002. 2. 20	

진정인		진정사항	소관부서	처리내용	결과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언양읍 직동리 484-30	김관식외 41명	국도35호선 확장공사로 언양읍 직동리 신화 국도변 마을앞들 진출입로가 폐쇄 되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바, 신호등을 설치하여 들길 진출입로를 살려 들것을 탄원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4. 4 진정서 이첩 <회신내용> -언양 방향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와 설치 거리기가 240m에 불과하여 짧은 구간에 횡단보도가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는 등 신설도로의 목적 및 기능에 부적함하므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기설치 예정인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람.	2000. 4. 15	
언양읍 남부리 140-1	유홍준외 8명	현재 언양농협 소유의 구 경홍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불만을 들은 전 소유주 김재하의 빌딩 앞도로 훼손에 따른 주차장 진입 방해 및 입주업체 영업방해 등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진정	건설과	• 4. 19 집행부이첩 <회신내용> -도로 무단 훼손한 행위자(김재하)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며, 기한내 복구치 않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임.	2002. 4. 26	
온양읍 운화리 1278-1	김달호외 38명	대운산 보전의 필요성은 온양읍민은 물론 대운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으로 박치골 1309번지 창고 건립은 대운산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건에 대한 재고를 요망함.	도시과	• 5. 14 집행부 이첨 <회신내용> -창립건립으로 인하여 대운산의 자연훼손과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귀하의 주민들의 의견을 건축주에게 전달한 바 창고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함.	2002. 5. 20	

진 정 인		진 정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내 용	결 과 통지일	비고
주 소	성 명					
웅촌면 초천리 123	류필규외 127명	웅촌발전소 초천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구간 이설(선로변경)을 요구함. (한전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예산문제등으로 불가회신 통보 받음)	한 전 부산전력 관리처장	• 5. 14 진정서 이첩 <회신내용> -위 송전선로는 산·논·하천등 지리적 여건으로 지중화가 불가능한 여건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인입위치 변경도 불가한 실정이오니지역 발전을 위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2. 5. 24	
웅촌면 초전리 142	서오기	본인 소유 웅촌면 초천리 84-5 비닐하우스 고추작물 보상 책정이 잘못되어 재검토 요구(실농보상이라고 하면서도 현공장 실태조사와 실농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채 교육용표본 책자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건 설 과	• 6. 11 집행부 이첩 <회신내용> -초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일부면적이 편입되어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바, 귀하께서 재배하고 있는 경작물과 협의 내용 경작물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재조사하여 실경작물을 반영토록 할것이며, 비닐하우스내 설치된 영풍기 1대의 사용불가에대한 보상은 비닐하우스의 일부만 철거되므로 현행 공공 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 기계 이전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계 전체에 대한 보상은 부가함.	2002. 6. 18	

제3장 울주군의회 운영

제1절 의회운영 현황

제2절 주요의정활동 현황

제3절 회기별 운영실적

제4절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조사

제5절 군정질문 및 4분 자유발언

제3장 울주군의회 운영

제1절 회기별 운영실

□ 제27회 임시회적

1. 개회배경

제27회 임시회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서완영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2월18일 집회공고를 거쳐 2000년 2월28일 오전11시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27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2. 28~3. 8(10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안건처리결과
2. 28(월) 11:00		개 회 식	
	1	1. 제27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7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28~3.8(10일간) 의장제외11명구성 원안가결 원안가결 정인조,이형철의원
2. 29(화)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안건처리결과
3. 1(수)		공 휴 일(3. 1절)	
3. 2(목)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3. 3(금)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3. 4(토) 10:00	2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5(일)		공 휴 일	
3. 6(월) 10:00	3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7(화) 10:00	4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의견서채택
3. 8(수) 14:00	5	1.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인가결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안건처리결과
3. 8(수) 14:00		10.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12.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수정가결
		13.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	수정가결
		14.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수정가결
		1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수정가결

3. 본회의

○ 제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28일부터 3.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외 11명으로 구성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차, 제3차본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울산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였다.

○ 제5차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수정의결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동철의원이 위원장으로, 서완영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9월29일부터 2000년3월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관련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100대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감증명 발급신청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개인신고수수료를 200원에서 4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수수료를 300원에서 1,000원으로, 출판사·인쇄소등록신청수수료를 500원에서 3,000원으로, 출판사·인쇄소등록사항변경등록수수료를 300원에서 2,000원으로 현실화하고, 관계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어업민원관련수수료, 식품위생관련수수료, 공중위생관련수수료, 공연장관련수수료,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민원관련수수료, 유

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체육시설관련수수료등을 개정 및 폐지코자 하여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였으며 상위법규등에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하였다.

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43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박제상 유적지 주변정비를 위하여 토지 5필지 7,418㎡를 매입하고, 간절곶등대 군사시설 이전설치를 위하여 건물 3개동 262㎡를 설치코자하였으며, 울주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 1동 1,729㎡를 울산광역시로부터 무상양여 취득하고, 온양 대운산주변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2필지 7,596㎡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성이나 부지의 활용가치면에서 매입이 부적정한 두동면 만화리 74번지 327㎡를 제외한 토지 6필지 14,669㎡와 건물 3동 1,991㎡를 취득하도록 관리계획을 수정의결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울주군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가 99년 12월 27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관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중 "여성복지회관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변경코자 하여 상위법규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가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서 농정심의회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원안의결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도로법과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 본문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8조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

제한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규정인 도로법은 개정,신설 되었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개정된 바가 없어 동일한 적용이 불가하여 적용법간의 차등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를 변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징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은 도로법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4호를 "도로법제4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4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례회를 매년 2회 35일이내 개최토록 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 집회하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규정코자 하였다.

본조례안은 1, 2차정례회를 나누어 개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업무등에 내실을 기하고 연말일정을 일찍 마무리하여 남은 일정동안 지역의정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집행기관의 연말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 원안의결 하였다.

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것을 “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다.

자)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중 공휴일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삭제하고, 회기중 회의 불출석시 일액을 삭감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며,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원의 숙박료를 1야당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하며, 국외여비기준표중 같은항 별표2의 비고의 1,2호를 삭제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각각 인상된 내용으로서 관련법령상 저촉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다.

차)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 대상자격중 “기타 공인회계사등”에서 “기타 공인회계사·세무사등”으로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기 위한 정비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카)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3호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정비내용으로서 원안의결 하였다.

타)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행정에 도입하므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및 민간위탁 관련법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 일곱가지를 명확히 별표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파)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울주군고유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군기를 제작 활용하기 위하여 군기의 모양·규격 및 게양기준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기의 규격 및 모양, 군기의 게양등에 대하여 규정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표1의3 군기의 표현내용을 간결하게 상징마크의 형상별로 원형, 삼각형, 타원형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며, 별표2의 마크와 로고타입의 분리된 작도법을 비례규정에 의하여 함께 구성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하)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까지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광역·기초단체간 공동분담하게 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 추천 및 선발 방법, 정원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코자 하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지역새마을지도자·부녀새마을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새마을지도자"라 한다)』로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1항중 "남·여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안 제4조중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장, 군새마을지

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으로 약칭한 것을 공식명칭으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가)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관련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차위반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30만원에서 50만원, 3차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2차위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차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하며, 현행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삭제코자 하였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거)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울주군의 역사와 문화 등을 기록 보존코자하는 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집필위원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코자 하였으며, "읍·면장은 읍·면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조례에 준하여 읍·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읍·면지 편찬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 제28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28회 임시회는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서완영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4월8일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4월10일 집회공고를 거쳐 2000년 4월2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28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4. 20~4. 29(10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안건처리결과
4. 20(목) 14:00		개 회 식	
	1	1. 제2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0.4.20~4.29(10일간)
		2.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외한 11명구성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6. 제2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우영구,한성률의원
4. 20(목) 15: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위원장, 간사선임, 의사일정 결정)	
4. 21(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현장방문)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안건처리결과
4. 22(토)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현장방문)	
4. 23(일) 10:00		공 휴 일	
4. 24(월)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4. 25(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4. 26(수) 10:00		〃	
4. 27(목) 10:00		〃	
4. 28(금) 10:00		〃	
4. 29(토) 11:00	2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서생면종합복지센타및생활체육시설부지취득)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수정가결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수정가결
		7.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 청취의건(삼남골프장관련)	의견서채택
		8.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 청취의건(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의견서채택
		9.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 행위의결의건	원안가결
		10. 군정질문	서우규,서완영의원

3. 본회의

○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4.20일부터 4.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박진구 군수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외 11명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삼남골프장관련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등 2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등을 의결하고, 서완영의원의 행정조직운용과 공설운동장조성계획에 대한 군정질문과 서우규의원의 울산도시계획정비 결정고시에 대한 군정질문에 이에 대한 박진구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제1회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보근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석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4월20일부터 2000년4월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과 울산도시계획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영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인조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4월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0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27,300만원보다 3,679,200만원이 증가한 13,006,6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87,700만원이 증가된 12,197,500만원과 특별회계가 391,500만원이 증가된 809,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는 1999년도의 긴축재정운영과 경기회복 등으로 자체재원의 초과징수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군민불편사항해소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분야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

는 사업이나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사업 25건 369,49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2000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군정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8,000만원을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였다.

나)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64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원전특별지원금사업으로 서생면 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생면 신암리 338-1번지외 18필지 32,739㎡를 취득코자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성이나 부지의 활용가치면에서 매입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서생주민들에게는 원전주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고 피해의식이 팽배하므로 서생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복지센타 및 체육시설을 서생면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의안번호 제162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제출된 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원안대로 우리군의 실정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게 200분의1로 하였고,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을 제1조와 제2조에 중복규정하고 있어, 제2조의 근거 규정은 생략토록 하고 조례내용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하여 관계서류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는 규정신설, 주행세 관련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등의 규정신설,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신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을 조례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 하고자 하였다.

제출된 조례안은 제7조의2 제5항의 “군소속 직원이”를 “군소속 공무원이”로 하여 공식용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제16조의2중 “세무공무원이”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로 하여 지방세법 제86조와 내용이 부합되게 하고 세무공무원이 관계기관에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은 권한의 남용 및 민원의 소지가 있어 수정토록 하였고, 제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설에 추가하여 제5항을, 지방세법 제177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하여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로 신설 추가토록 하였으며, 제39조의4의 법규인용규정인 “법제196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앞조문의 제39조의2, 제39조의3에서도 법규인용을 생략하였으므로 조례준칙안 대로 법규이용 규정을 생략하여 획일성 있는 조례를 구성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감면조례 개선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와 그 유족까지 범

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확대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자구 수정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 제23조의3에 대하여는 인용근거 법규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 본문 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는 삭제하고, 제23조의 3 본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를 "보유하는 재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문 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를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로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울주군지명위원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로 하고, 제2호 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구역안의"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 단서를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신설토록 하였고, 제6조 제3항 중 "인접 시·군 소속직원"을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 본문중 "간사는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하여 업무의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사)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67호)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대손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였다.

아) 삼남면방기리골프장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159호)

시민의 건전한 레저 및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 토지를 효율적으

로 이용하여 관광·레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를 위하여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82-1번지 일원 23만8,000㎡ 골프장을 설치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건으로, 현장방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역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목장용지가 75%, 임야와 답이 각각 10%정도로써 토지 이용면에서 볼 때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배면의 영취산과 신불산을 잇는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경관이 있어 신불산의 개발계획과 함께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므로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입안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등 5개안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다.

자) 웅촌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169호)

웅촌면 일원은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서부 대생활권 웅촌 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금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입안한 지역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대단위 배후주거지역의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웅촌면 곡천리 260-1번지 일원 48,300㎡에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지 및 일반상업지역을 조성하여 토지이용도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는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장방문과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웅촌면 소재지 지역은 7호

국도를 따라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면소재지의 도시기능이 떨어져 일찍이 (주거, 상업시설의) 도심개발이 요구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로 인한 먼지, 교통안전 및 소음방지 등의 민원예방방지대책을 위한 의견을 채택하였다.

□ 제29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29회 임시회는 '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서완영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5월15일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5월16일 집회공고를 거쳐 2000년 5월22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29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5. 22(월)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5. 22(월) 10:30		개 회 식	
	1	1. 제2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2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5.22(1일간) 의원:이동철, 회계사:이승춘,오성식 의장제외한 11명구성 변양섭,이보근의원

3. 본회의

○ 제2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0년5월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을 이동철의원과 이승춘, 오성식 공인회계사로 선임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제30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0회 임시회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서완영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6월1일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6월2일 집회공고를 거쳐 2000년 6월8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0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6. 8 ~ 6. 10 (3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6. 8(목) 11:00		개 회 식	
	1	1. 제30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30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6.8~6.10(3일간) 의장제외한 11명구성 원안가결 이동철,김철준의원
6. 9(금)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현장방문 및 안건심의)	
6. 10(토) 11:00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3. 본회의

○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0년6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의결 하였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성률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철준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6월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75호)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량면 신덕하 2구, 신촌, 반정 마을회관건립 부지

로 상남리 555-5번지 외 3필지 1391㎡를 취득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정비법 제2조 등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2000년 청량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문화복지사업으로써 3개 지역 마을회관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지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7급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통보에 따라 신설된 7급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수혜를 제공하고자 하며 타 법령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의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공업, 하천 유지 용수의 보존관리 및 용수오염방지 등의 농촌용수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목적,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농촌용수계획수립,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코자 하였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조에 본조례안의 근거조항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를 삽입하고, 안 제2조의 제명 "농촌용수구역"을 모든 항의 내용과 관련된 제명으로 "정의 및 범위"로 하며, 안 제5조 농촌용수계획수립의 제3조항 중 "수정·보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군수가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9조2항제2호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명시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원회 간사를 "농산과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부적정하고 불분명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82호)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선출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1항을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며 임기만료일까지 다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의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 제31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1회 임시회는 울주군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위하여 서완영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000년 7월1일 집회공고를 거쳐 2000년 7월7일에 개회되었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1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7. 7(금)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7. 7(금) 10:00		개 회 식	
	1	1. 제31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주군의회제2대후반기의장선거의건 3. 울주군의회제2대후반기부의장선거의건 4. 제31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 7. 7(1일간) 변양섭의원 이보근의원 김석암,서우규의원

3. 본회의

○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0년7월7일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 울주군의회 제2대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는 언양읍 출신인 변양섭의원이, 부의장에는 서생면 출신인 이보근의원이 선출되었다.

□ 제32회 1차 정례회

1. 개회배경

제32회 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항의규정에 의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0년 7월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0년 7월1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1차정례회) 2000. 7. 10~7. 26(17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7. 10(월) 11:00		개 회 식	
	1	1. 제32회울주군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32회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7.10~7.26(17일간) 원안가결 의장외11명 의원구성 〃 서완영,정인조의원
7. 11(화) ~7. 14(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의)	
7. 15(토)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7. 16~7. 17		공 휴 일	
7. 18(화) ~7 .24(월) 1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7. 25(화)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활동	
7. 26(수) 11:00	2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의견서채택

3. 본회의

○ 제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2000년7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석암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보근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7월11일부터

2000년7월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서우규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석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안번호 제188호)

의회에 제출된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총 세입예산 현액이 14,079,200만원이며, 수납액이 14,42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459,900만원의 93%이고, 미수납액이 969,000만원으로 몇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 당초예산편성이 7,218,400만원이었으나,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이 12,233,200만원으로 69.5%가 증액 편성되는 것은 세입예산부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없이 편성됨으로 해서 연도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이월사업이 '98년도 61건 184억5,900만원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음에도, 99년

도 61건 147억4,500만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계획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명시이월액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확정한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가 있었고, 결산추경시 증액편성을 하면서까지 불용액을 발생케도 하였다. 특히, 예산집행의 잘못된 분석으로 결산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을 하면서 전용한 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모든 사업계획은 심도있는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노인복지기금을 울산광역시에서 통합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구·군 노인회 육성자립금 설치목적에 따라 배부할 계획으로 있어 이의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재원확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여, 목적에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군민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군민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주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의 노래에 대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울주군의 홍보와

군민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폐기물관리법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2조 제2항의 본문 중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의 내용을 "군수는 신축되는"것으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가정용배출용기"로 되어있는 것을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마)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187호)

온양면과 범서면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읍승격의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읍승격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읍의 설치기준인 인구 2만명이상, 시가지구성 지역내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 도시적산업종사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0%이상으로 법적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온양면과 범서면을 읍으로 승격,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온양면과 범서면은 도시화가 가속되어 읍으로 승격될 법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울주군의 설문조사 결과 해당 면민들의 대다수가 읍승격을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승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읍승격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읍승격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오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바, 읍승격을 계기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증원과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국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읍승격을 추진하여야 할 것 등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 제33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3회 임시회는 2000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공유재산환수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9월19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0년 9월25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9. 25~10. 6(12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2000. 9. 25(월) 11:00		**개 회 식**	
	1	1. 제33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0.9.25~10.6(12일간)
		2. 2000년제2회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박진구군수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외 11명의원구성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6. 제33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이형철,우영구의원
9. 26(화) ~9. 30(토)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0. 1(일)		공 휴 일	
10. 2(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0. 3(화)		공 휴 일 (개천절)	
10. 4(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0. 5(목)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0. 6(금) 10:00	2	1. 2000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울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4. 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 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공유재산환수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군정질문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서우규,김철준의원

3. 본회의

○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0년9월25일부터 10월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 박진구군수로부터 2000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

제1차정례회기간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공유재산환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 특위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우규의원의 대곡댐건설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군정질문과 김철준의원의 울주군의 당면현안 문제인 도시계획, 지방2급 하천의 사업비투자등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박진구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철준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동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

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석암의원이 위원장으로, 서우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10월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6호)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06,600만원보다 2,129,400만원이 증가한 15,133,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과 중복성 등에 대한 사업 등 35건 15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다.

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94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웅촌면 곡천리 252-10번지외 1필지 연면적 360평방미터의 웅촌동문복지회관 건립 건물취득, 상북면 산전리 458번지외1필지에 건축연면적 1,281㎡ 상북면 노후청사 이전신축,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56-3번지 군청청사내의 창고·차고동에 건축연면적 300㎡의 지상 2층 사무실을 증축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웅촌동문복지회관 신축 계획은 입지조건이 마을 내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하지 않고 동문마을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시 반드시 국도 7호선을 건너야 하고 육교나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거리가 멀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입지선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은 웅촌 동문복지회관 신축계획 건물1동 360㎡를 제외한 상북면청사 및 군청사내 건축종합민원실설치 건물 3동 1,581㎡를 취득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안번호 제189호)

울주군 온양면 고산리 491-3번지외 1필지 3,492㎡상에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온양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옹기를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도록 옹기회관을 건립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통기술의 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단체인 온양 옹기회관운영위원회에 5년간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단체는 온양면 주민대표 신일성 외 8명으로 구성된 온양 옹기회관 운영위원회로 회관의 설립목적이 온양옹기회관 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부합되고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삭제수정 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호)

간척지의 보존과 농산물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울주군관리방조제 심의회를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방조제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운영 등의 근거법규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운영 근거 조항의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나 현행 조례의 목적에 "군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삭제되므로 본 조례의 제명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울주군관리방조제범위에관한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 제34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4회 임시회는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10월2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0년 10월3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4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10. 30~11. 2(4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0. 30(월) 11:00		개 회 식	
	1	1. 제3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3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10.30~11.2(4일간) 의장제외한 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이보근, 한성률의원
10. 31(화) ~11. 1(수)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1. 2(목) 11:00	2	1.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4. 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1. 2(목) 11:00		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가결
		6. 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원안가결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9. 군정질문	김철준의원

3. 본회의

○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0년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김철준의원의 과수의 보급등 가격안정에 대한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심부용 부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영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서우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울주군 행정기구를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추진과 병행하여 울주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형태로 조정·개편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신설하고 민방위과를 폐지하며, 기능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과"로 명칭변경하고 민방위 사무를 총무과로, 세외수입관리 사무를 지방세과로, 건축 및 주택사무 전반, 인·허가 및 복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허가과로, 위생사무를 복지위생과로, 120민원기동반운영 사무를 환경위생과로, 노정 및 실업대책, 교통행정지도 사무를 지역경제과로, 재난관리사무를 건설과로, 전원개발 사무를 도시과로 실과별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재조정코자 하였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본위의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군지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군지편찬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및 집필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수를 "30명이내"에서 "35명이내"로,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를 "7명이내"에서 "10명이내"로, 집필위원의 수를 "30명이내"에서 "70명이내"로 개정코자 하여, 군지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199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군에 위임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의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법령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원가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행정규제개혁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삭제, 명칭변경, 신규종목 신설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면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법령개정, 타기관 업무소관, 징수근거 없음의 사유 등으로 83종목을 삭제하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

필증 재교부시 수수료 500원을 1,000원으로, 시체운반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며, 지방세 납세증명, 소하천 점용·산출물의 채취허가 등 4종목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수수료 500원을 장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수수료 1,000원으로 하는 등 4종목에 대하여 명칭변경과 아울러 수수료를 인상하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5종목을 신설코자 하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조례안에서 삭제된 "사도개설허가" 민원사무 수수료는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206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울주군에 소재한 회야댐, 사연댐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건설예정인 대곡댐 주변지역에 대한 교부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목적규정에 조례제정 근거법률의 관련 "조"를 명기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발제

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 개정된 법령에 의거 적용하고자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사무를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건축과 위임사무 중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한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또한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 별표2의 도시건축과 위임사무에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사)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안번호 제208호)

간절곶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행사장내 위치한 군부대를 철거 후 서생면 대송리 산 28-1번지상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건물 3동 265㎡를 육군 제53사단 제127보병연대에 군사작전시설 및 해안경계근무 등의 목적으로 5년 단위 계약하여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아)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209호)

웅촌 동문마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곡천리 252-10번지외 1필지에 지상3층, 연면적 360㎡ 규모로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숙원 및 민원을 해결하고, 울산화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으로 상남리 375-4, 376번지 1,118㎡에 청량 화창1,2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 제35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5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11월21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0년 11월28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0. 11. 28~11. 30(3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1. 28(화) 11:00		개 회 식	
	1	1. 제35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제35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0.11.28~11.30(3일간) 의장제외11명의원구성 이동철,김철준의원
11. 29(수)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1.30(목)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3. 본회의

○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0년11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수정의결 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서완영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석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11월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지방행정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이 미비하여, 정보화사업 기반조성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출된 조례안으로, 전산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559명에서 56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8명에서 54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원의 증원 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보화보강지침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현행 위임조례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지방세관련 사무가 관련법 개정으로 사무명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에서 권한 위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 사무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동 규정을 삭제코자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호)

생활폐기물배출방법에 있어 지금까지 관광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 등은 쓰레기종량제 예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해제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완화토록 심의한 내용과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공공지역인 관광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하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토록 하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에 위치를 변경한 때. 단, 군

수로부터 위치변경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타 장소에 위치를 변경한 때"로 하고,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자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성 있게 "군민"에서 "신고인"으로 하고 제외대상도 "군 산하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하였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17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에관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울주남부운동장 조성공사 주변부지를 위하여 온산읍 덕신리 993-1번지외 10필지 면적 35,078㎡를 매입코자 하며, 청량면 화창1,2구 공동마을회관으로 사용코자 청량면 상남리 375-4번지외 1필지에 330㎡의 건물을 건립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증이 안된 울주남부운동장 조성공사 주변토지의 매입 건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 제36회 2차 정례회

1. 개회배경

제36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코자, 2000년11월30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0년 12월5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6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2차정례회 2000. 12. 5~ 12. 22(18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2. 5(화) 11:00		개 회 식	
	1	1. 제36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36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2000.12.5~12.22(18일간) 박진구군수제안설명 심부용부군수보고 의장제외한 11명의원구성 〃 원안가결 김석암,이정우의원
12. 6(수) ~12. 14(목)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2001년당초예산》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2. 15(금)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2. 16(토) 11:00	2	1. 2001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2001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2000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박진구군수 제안설명
12. 17(일) 10:00		공 휴 일	
12. 18(월) ~12. 21(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2000년3회추경》	
12. 22(금) 11:00	3	1.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군정질문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이보근,김석암의원

3. 본회의

○ 제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 2001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부용 부군수로부터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았으며, 의장외 11명의 의원

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완영 의원의 집행부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4분자유발언을 청취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2001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2001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박진구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이보근 의원의 서생지역원전 및 석유비축기지건설에 대한 군정질문, 김석암 의원의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한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박진구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년 기금운용계획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동철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12월6일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석암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12월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중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유보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216호)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8% 증가한 11,729,626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20.1% 증가한 10,707,271만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작년대비 145% 증가한 1,022,354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분야 325,94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분야에 총 220,88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다.

나)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6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

법 제57조,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응급조치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액 26,879만원으로 2001년도 출연금은 7,739만원과 금년도 이월금 16,738만원 및 이자수입 2,356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879만원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25,000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및 환매체 예탁코자 하며 2001년도 재난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안의결 하였다.

다)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18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액 116,437만원으로 2001년도 출연금 30,959만원, 금년도 이월금 80,550만원 및 이자수입 4,928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5,479만원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10,957만원은 기금으로 장기 예치코자 하며 2001년도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등의 비용으로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안의결 하였다.

라)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31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13억6,100만원보다 41억9,400만원이 증가한 1,555억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따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는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9,200만원을 삭감하여,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 시설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농업용관정 관리에 따른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그 사전준비 시한이 금년 12월31일까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농가부채 등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농가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농림사업 농업용관정 오염방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군수의 권한을 위임받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

마)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24호)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액 1억3,108만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1억2,366만원과 이자수입 742만원이며 2001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집행

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2,108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예탁코자 하며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의결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지금까지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사항이 법개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건축법령의 개정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개정·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가능토록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울주군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단독주택, 축사 및 창고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며, 용적률 완화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에 있어 가장 넓은 도로를 6m이상 접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도시자연공원을 추가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추가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 제17조제1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를 동조 제2항 제1호와 동일하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한다)"로 수정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3조 제3항 제1호 중 "채광창(창넓이가 세대당 0.5㎡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에서 "세대당"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53조 제3항 제2호 중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6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승강기 탑 슈트 계단의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돌출너비가 측벽(노대포함) 너비의 2분의1 이하이고, 그 돌출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로 한 내용중 괄호내에 규정된 내용은 6층이상 승강기 설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본문내용에 저촉되는 부분으로 삭제하고 안 별표1의 면적 200㎡이상 1,000㎡미만의 건축허가 수수료 중 "기타 7,000원"을 "기타 15,000원"으로 현행과 같이 하여 종전의 건축허가(설계변경허가)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부칙 제1항(시행일) 중 "다만 23조 내지 제42조 및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삭제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를 "다만, 23조 내지 제42조 및 제48조의 삭제규정과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2항 중 "건축허가를 받거나"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허가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촉구지구에 대한 감면규정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코자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다.

□ 제37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7회 임시회는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2월15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2월22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7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2. 22 ~ 3. 3(10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2. 22(목) 14:00		개 회 식	
	1	1. 제37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37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2.22~3.3(10일간) 의장제외한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원안가결 서우규,서완영의원
2. 23(금)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2. 24(토)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2. 25(일)		공 휴 일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2. 26(월)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 결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 결
		5.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2.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3.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군정질문	김철준의원
		15.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2. 27(화) 10:00	3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복지위생과,지역경제과,도시과)	
2. 28(수) 10:00	4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농산과,지방세과,축수산과,산림과)	
3. 1(목)		공 휴 일	
3. 2(금) 10:00	5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회계과,허가과,민원지적과,환경보호과)	
3. 3(토) 10:00~	6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소,의회사무과)	

3. 본회의

○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원안의결 하였다.

○ 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 본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 김철준의원으로부터 울주군의 현안문제인 울주군 실·국조례와 공무원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박진구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형철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2월23일부터 2001년2월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 중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유보하고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사용료 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2000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검사·시험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수수료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

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험결과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경우 행정처분할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표1의 제증명발급등 수수료 중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와 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소지허가시에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안 제9항 '운전면허·총포·중기신체검사'를 '운전면허(적성검사포함)·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건설기계 조종면허 등의 신체검사'로 하였으며, 안 제10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안 제12항제7호의 '마약구입(판매)서 교부신청'은 중복 및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번호 제232호)

2000년 행정규제 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이 중복규제 또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완화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0조제1항5호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물이 신축, 증·개축 등의 사유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로 개정하고, 안 제18조제1항의 지도업무 실시에 있어 '매년 2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지도업무의 결과보고를 '군수 및 읍·면자문위원회'를 '읍·면 자

문위원회'로, 제2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일상적인 감사가 가능하므로 삭제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 제18조 제1항의 읍·면의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주체인 읍·면장의 지도업무 결과는 '읍·면자문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자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군수 및 읍·면 자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감사대상 범위가 아니므로 중복규제로 볼 수 없어, 현행과 같이 하고자 신설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내용의 해석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제8조1항제1조중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리·반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 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임기전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로 조정코자 하였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장학금지급중지 사유 중 행정 자의적 판단을 가져 올 수 있어 개정하려는 안이 현행조례에 비하여 중지사유를 오히려 확대강화하고 있고 행정자의적 판단이 확대되고 있는 등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심사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호)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연령 규정을 삭제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임용 관련 조항으로서 연령에 관한 내용만을 개정하려는 조항과 그에 미치는 관련 조문 등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심사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식점·목욕탕 등의 사업장 및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및 외국귀빈들에게 울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울주군에 대한 관심과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판단되

며, 군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관련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8호)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격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장학금의 지급은 적립된 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매년 예산'을 '적립된 기금'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 중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여,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아)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신 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댐 수몰지구내 주택철거로 리가 과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리·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리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리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자)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행정자치부 공고제 2000-125(2000.10.17)로 읍설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따라 읍의 명칭과 읍의 관할구역 및 시행일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온양·범서읍의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읍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차)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장부상 미등재 물품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불용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감정대상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코자 하여,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 개선방안으로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카)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의 명칭변경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 주행세율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을 일부 인상 조정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40조제1항의 본문 중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인 군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타)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울주군민학생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체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의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의 사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체육관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본 조례의 제3조 규정에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된다는 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며, 체육관 양도의 금지 규정으로 체육관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사용권을 갖

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포함되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제18조의 '양도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로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사용권을 갖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양도의 금지' 규정이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 맞지 않으므로 본 '양도의 금지' 규정을 현행대로 신설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파)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기존 완공되어 가동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특별회계내 세입·세출, 결산 등 자금관리의 일원화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행 이원화 운용되고 있는 예산의수입, 지출, 결산 등의 자금관리를 신속하고 명확한 책임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제38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8회 임시회는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4월11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4월16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8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4. 16~4. 25(10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4. 16(월) 11:00		개 회 식	
	1	1. 제3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1.4.16~4.25(10일간)
		2. 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박진구군수제안설명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외11명의원구성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6. 제3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정인조,이형철의원
4. 17(화) ~4. 18(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4. 19(목) 10:00	2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수정가결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4. 20(금) ~4. 23(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4. 24(화)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4. 25(수) 14:00	3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	수정가결 의견서채택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3. 본회의

○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4월16일부터 4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조

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석암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철준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4월17일부터 2001년4월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울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울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성률의원이 위원장으로, 서우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4월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1호)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172억9,600만원 보다 35.5% 인 368억9,900만원이 증가한 1,541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9억1,500만원이 증가된 1,269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169억8,400만원이 증가된 272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 원안의결 하였으나 남창시장시설개선사업비와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국·시비보조금 중 15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을 1,526억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분야에서 206,8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51,82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분야에 468,14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다.

나)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52호, 제252-1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 군·읍·면 단위 체육행사시 활용하기 위하여 읍·면별 적정규모의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온산읍, 온양읍, 범

서읍, 웅촌면, 삼남면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과 온양읍, 범서읍의 읍승격 이후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양읍 청사부지 확장과 범서읍청사이전 부지취득, 온양읍 승격이전부터 추진되어온 2001년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의한 마을회관 3동, 청량면 마을회관 1동 건립부지 취득, 두동면 월평리 하월평마을 자골들 일원의 주 용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자골소류지와 상북면 양등리 양등앞들의 주용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양등소류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기부체납 의사에 따른 무상취득, 대곡댐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묘장조성 및 산림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부지취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서생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기반시설과 서생난을 지역특산품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구동 민등시장 및 난 재배단지 부지취득, 지역민은 물론이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공간을 넓히기 위한 울주군 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 취득, 온양읍 주변 초·중·고등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학생체육관 부지취득, 서생 종합복지센터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부지를 확장하여 문화·예술 등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4건에 119필지 40만48㎡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 군·읍·면 단위의 각종 체육행사 등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읍·면별 적정규모의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온산읍, 온양읍, 범서읍, 웅촌면운동장 시설부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삼남운동장 조성부지는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검토키로 심사하여 제외하였으며, 그 외 온양읍 및 범서읍 청사부지, 온양읍 3개동, 청량면 1개동에 대한 마을회관부지, 두동면 봉계리의 자골소류지와 상북면 양등리 양등소류지에 대한 기부체납 취득부지, 양묘장 및 산림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부지, 구동 민등시장 및 난재배단지부지, 울주문화 복지시설 건립부지, 온양읍 학생체육관 건립부지, 서생종합복지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추가부지 등에 대한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247호)

굴화 2택지 개발사업지구는 울주군 범서읍과 남구 무거 1동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될 경우 주민의 생활불편과 행정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치단체 울주군 남구간 구역변경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므로, 지역개발에 따른 자치단체간 구역변경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판단되나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구역변경이 불가피할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해 지역정서이므로 범서읍의 주민여론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원안심사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시민단체를 포함 하고자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원안 심사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전·월세 상승억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중 전용면적 60㎡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3으로 하는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코자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바)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정하고자 군세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부과 면제지역 변경고시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심사하였다.

□ 제39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39회 임시회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5월18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5월24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39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5. 24(목)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5. 24(목) 11:00		개 회 식	
	1	1. 제3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3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5.24(1일간) 김석암의원,이승춘, 서상길공인회계사 의장제외한11명의원구성 우영구,이보근의원

3. 본회의

◦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5월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석암의원과 이승춘,서상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였으며, 200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산회하였다.

□ 제40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0회 임시회는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6월8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6월14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0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6. 14~6. 16(3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6. 14(목) 14:00		개 회 식	
	1	1. 제40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4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4.16~4.25(10일간) 의장제외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한성률,이동철의원
6. 15(금)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6. 16(토) 11:00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3. 본회의

○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대로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의결 하였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서우규의원이 위원장으로, 우영구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 6월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본 안건은 제3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제10조의 과태료조항 즉

'군수는 부당한 수단으로써 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폐지함으로써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현행 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재질의 5리터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과 깨진 유리, 타일, 패각류 등 현행규격봉투에 넣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30리터, 50리터 용량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코자 하였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규격봉투와 재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국책사업인 원전 및 대곡댐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 승인된 10명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 승인된 인력 1명 등 11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60명에서 57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지방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관리조례 중 포괄적이고 행정의 자의성이 내재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불분명하고 현실성이 없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감독상의 포괄적인 처분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또한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승인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대상 완화와 처분절차를 신설키로 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중복되는 자구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지방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 중 주민공개의 제한대상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복규제 내용을 삭제코자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 제41회 1차 정례회

1. 개회배경

제41회 1차 정례회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0년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7월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7월1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1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1차정례회 2001. 7. 10~7. 26(17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7. 10(화) 11:00		개 회 식	
	1	1. 제41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41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7.10~7.26(17일간) 의장제외한 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김철준,김석암의원
7. 11(수) ~7. 16(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7. 17(화) 10:00~		공휴일(제헌절)	
7. 18(수) ~7. 24(화) 10:0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7. 25(수)		현장방문	
7. 26(목) 11:00	2	1. 2000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3. 본회의

○ 제41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2001년 7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의결 하였다.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보근 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7월11일부터 2001년7월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안번호 제263호)

의회에 제출된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총 세입예산 현액이 1,701억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10억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34억7,100만원의 93.2% 미수납액이 114억2,000만원으로 몇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결산검사

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의 발주지연, 사업시기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가 68건에 260억8,300만원, 사고이월비가 23건 16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비가 2건에 9,400만원으로 총 합계금액이 278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공사완공이 불가피한 사업은 발주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연도 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하고, 또한 상북면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12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공사가 진행중이고 이에 따른 감리비 2,170만원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여 감리비 지출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이러한 과정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시정토록 하였다.

나)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안번호 제264호)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출결정액이 5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이며 이중 8억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7,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가축 구제역 긴급 방역비,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 배 병충해 긴급방제비, 공무원 수당부족분 등으로 사용하고 7억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이는 지출결정액의 42%로서 시정토록하고, 원안의결 하였다.

□ 제42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2회 임시회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울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철준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8월1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8월2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8. 20~8. 21(2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8. 20(월) 11:00		개 회 식	
	1	1. 제42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42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8.20~8.21(2일간) 의장제외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이정우,서우규의원
8. 20(월) 14: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8. 21(화) 11:00	2	1. 2001년울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3. 본회의

○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8월20일부터 8월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성률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동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8월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유보 하고, 기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호)

보건소 및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은 관련법에 부합되게 하고 특히 보건소장

에게 위임함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하는 등 위임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이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70호)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생 신암마을회관과 서생 송정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편입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로 신암리 454번지를 비롯한 3필지 1,421㎡와 건물 3동 562㎡를 취득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회계 목적과 부합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 제43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3회 임시회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울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8월1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8월2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3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10. 6~10. 19(14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0. 6(토) 11:00		개 회 식	
	1	1. 제43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1.10.6~10.16(11일간)
		2. 2001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박진구군수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외한 11명의원구성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6. 제43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서완영,정인조의원
10. 7(일)		공 휴 일	
10. 8(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0. 9(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0. 9(화) 14:00	2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원안가결
10.10(수) ~10.12(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0. 13(토) 11:00	3	1. 제43회울산광역시임시회회기연장의건	10.16~10.19까지 3일연장
11:3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0. 14(일)		공 휴 일	
10. 15(월) ~10. 17(수)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0. 18(목)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0. 19(금) 14:00	4	1. 2001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67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3호)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3. 본회의

○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10월6일부터 10월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 박진구군수로부터 2001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10월6일에서 10월16일까지 11일간 개최키로 한 임시회 기간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따른 필요한 기간 3일을 추가하여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동철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철

준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10월8일부터 10월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성률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석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 중인 전남 광양시 옥곡면과 경북 김천시 어모면 2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유보하고, 기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79호)

두서 노인복지회관 및 게이트볼장 등 토지취득 7필지 4만9,738㎡, 건물취득 1동 2,763㎡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두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인복지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취득과, 조경수를 생산하여 우리군 녹화사업의 관급용도로 공급 및 경영수익에 기여하며, 천전리각석

문화재와 연계하여 자연, 관광,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양묘장 및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과 신지식 정보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서생면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나)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80호)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264,500만원보다 15.6%인 238,200만원이 증가한 17,64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분이 1,797,900만원이 증가된 14,341,700만원, 특별회계는 582,200만원이 증가한 3,303,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대부분 원안의결 하였으나 6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중 군민의 수혜적인 우선 순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복지시설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울주문화원부지매입비 7억을 삭감하여 문화·예술·복지시설비에 7억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서생면 종합복지센타건립외 1건 162억 1,700만원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7호)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기능전환과 관련 군·본청에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자치행정사무와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기획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한시적 기구로써, 읍·면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구로 원안의결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급여받는 수급자가 대부료를 연체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과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인하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24조의2제4항 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각종 제증명 서류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논스톱(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이미지화한 전자관인 사용을 신설코자하여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각종 제증명 서류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수료납부, 전자수입증지표시, 기기관리책임자, 수입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여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현금 및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아)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호)

상북면사무소 청사의 이전 신축으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549번지에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458번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 제44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4회 임시회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9월28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1년 11월21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4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1. 11. 21~11. 24(4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1. 21(수) 10:00		개 회 식	
	1	1. 제4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4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1.11.21~11.24(4일간) 의장제외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이형철,우영구의원
11. 21(수) 10:3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1. 22(목) ~11. 23(금)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6. 16(토) 11:00	2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수정가결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수정가결
		3.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수정가결
		6.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견서채택

3. 본회의

○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1년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수정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형철의원이 위원장으로, 서우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 11월21일부터 11월23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90호)

온양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변경매입의건 등 총7건의 부지 22필지 2만7,781㎡ 와 건물 3동 1,091㎡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연산마을첨단버섯재배시설부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는 시설부지 소유자가 연산마을 개발위원회로서 마을소유의 부지에 건물만 취득하면 사업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건을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의결 하였다.

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91호)

상북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의건을 비롯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토지 146필지에 17만9,814㎡ 건물 6동에 5,525㎡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서생 신리 공동작업장부지매입의건과 간절곶회센터부지매입의건은 부지면적이 과다하고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불명확하여 제외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제273-1호)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 등"의 대강의 사무를 환경보호과에 추가로 신설하고 종전의 문화공보실장 사무 중 "체육, 청소년" 사무를 "총무과장"의 사무로 이관코자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원안의결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종전에 60일로 되어 있던 출산휴가 일수를 90일로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단순한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토록 하여 행정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일부를 읍·면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

재까지 읍·면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소독, 수질검사, 정기점검 등을 군에서 직접 추진하여 체제를 정착할 필요성이 있는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한 후 권한위임을 재검토하도록 읍·면에 권한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본문 중 일부자구를 조례제정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고, 타법의 폐지·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조례 제2조제2호의 단서조항 중 "일반음식점영업중"을 "일반음식점중"으로 본문에 사용중인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 관련사무의 수수료 제정기관이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변경되어 수수료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289호)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부지 조성을 위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지구 48,000㎡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신고리원전추가건설반대어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원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대하고 있고, 신고리원전 1,2호기 추가건설시 온·배수로 인한 바다생태계 파괴,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 상실, 유속으로 인한 해저·해양생태계의 변화, 안정성 등이 우려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 제45회 2차정례회

1. 개회배경

제45회 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코자, 2001년11월29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0년 12월5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5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1.12. 5~12. 22(18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2. 5(수) 14:00		개 회 식	
	1	1. 제45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2002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45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2001.12.5~12.22(18일간) 박진구군수 〃 의장제외한 1명의원 원안가결 이보근,한성률의원
12. 5(수) 15:00~ 12. 14(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2.15(토) 11:00	2	1. 2002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02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7.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수정가결 의장제외한11명의원 최문규부군수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16(일)	공 휴 일		
12. 17(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12. 17(화) ~12.21(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2. 22(토) 10:00	3	1. 200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3. 본회의

○ 제45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2001년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 박진구 군수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

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2002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박진구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1년 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3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철준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석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0년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석암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동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1년12월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296호)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172억9,600만원보다 427억7,500만원이 증가한 1,600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분이 125억4,900만원이 증가된 1,196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302억2,500만원이 증가한 404억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분야에 지급방법에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 성과상여금등 15억원을 삭감하고, 각 읍·면의 예기치 못한 긴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편성된 기획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에 6억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중 포괄성 사업비에 가까운 환경개선 사업비 24억5,000만원 중 10억원, 댐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인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두동면 망향각 설치비 및 중복계상된 두서 인보 복지회관 건립비 4억9,000만원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나)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대책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액 16억4,206만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충당금 1억8,237만4,000원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14억5,968만5,000원에 대하여는 증식기금으로 장기 예치코자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의결하였다.

다)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액 3억9,473만7,000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충당금 4,473만7,000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및 환매채에 예탁, 관리코자 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의결하였다.

라) 200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

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3,117만6,000원으로 2001년도 이월금 1억2,273만4,000원과 이자수입 844만2,000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2,117만6,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으로,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의결 하였다.

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98호)

남창시장내 노후화된 장옥을 철거, 신축하여 시장특화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신축건물 취득 및 신리공동작업장 부지매입, 간절곶회센터 부지매입 등 총 4건에 토지 50필지, 4만2,729㎡와 건물 14동 4,46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업무가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광역시에서 군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 1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관리함에 따라 문화재 활용 및 보호를 위해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등록문화재 보호를 위해 원안의결 하였다

아)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료열람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군 홈페이지에서도 링크하여 인터넷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료열람 서비스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의 운영 중인 방문열람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였다.

자)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읍·면사무소”는 안 제4조의 단서규정 중 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배치되므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안 제10조 제2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한다”로 된 조

항을 군 전체의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되,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의결 하였다.

차)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5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44,800만원보다 5,208,800만원이 증가한 18,17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4,700만원이 증가된 14,736,500만원, 특별회계가 134,000만원이 증가한 3437,1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는 결산추경에 따른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으로서 그간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부분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비비로 기집행된 사업비임에도 재 계상된 한해대책용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사업비 3,500만원과 가축 수송차량 지원사업비 1,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된 163건 중 한우육우 거세사업, 한우젖소 개량사업, 한우 거세우 출하장려금 등 3건은 연내에 사업집행이 가능하고,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본 예산 삭감으로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여 의결하였다

□ 제46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6회 임시회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월5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1월11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6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2. 1. 11~1. 12(2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1. 11(금) 11:00		개 회 식	
	1	1. 제46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4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11~1.12(2일간) 의장제외11명의원구성 원안가결 이동철,김철준의원
1. 12(토) 11: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3. 본회의

○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2년 1월11일부터 1월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형철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2년 1월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유보 하였다.

5.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호)

인구 15만명 이상의 광역시 관할 군에도 국 직제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국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3국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의 3국 설치에 따른 실·과 조정과 일부 과 명칭을 변경코자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보다 다원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원안의결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3국 설치에 따른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원안의결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호)

신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신고리 원전 건설부지 및 대곡댐 수몰지구 편입으로 주택철거·이주에 따른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장 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불합리한 리·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국 설치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 제47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7회 임시회는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3월12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3월18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7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임시회 2002. 3. 18~3.29(12일간)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3. 18(월) 11:00		개 회 식	
	1	1. 제47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2.3.08~3.29(12일간)
		2. 2002년제1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박진구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외 11명의원구성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6. 제47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김석암,이정우의원
3. 19(화) 10:0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3. 20(수) ~3. 21(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3. 22(금) 10:00	2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수정가결
		7.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울주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정가결
3. 23(토) ~3. 28(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3. 29(금) 11:00	3	1.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수정가결

3. 본회의

○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2년 3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여 박진구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수정의결 하였다.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정인조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2년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서우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철준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2002년 3월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6.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24호)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600억7,200만원보다 20.5% 인 328억300만원이 증가한 1,928억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분이 261억9,200만원이 증가된 1,458억1,4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이 66억1,200만원이 증가된 470억6,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분야에 별관청사 신축관련 예산 7억2,200만원을 포함한 7건에 대하여 총 7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서읍청사 신축사업은 사업비의 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의결하였다.

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323호)

지역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웅촌, 삼동 게이트볼장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고, 군 본청과 범서읍의 청사면적이 부족하여 업무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별관청사와 범서읍 청사 신축건물을 취득코자 하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천상의 대동소류지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지시설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웅촌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토지 매입을 포함한 총 15건에 대하여 토지 38필지 11만1,942㎡, 건물 4동 2,715만 ㎡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였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됨은 잘못된 행정절차이므로 향후 시정토록 하고,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 앞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 마을회관 건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여 전 읍·면에 시달토록 촉구하며, 농협, 울주문화원을 이전하고, 체력단련실등 직원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고자 별관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은 농협과 문화원이 이전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며, 체력단련실은 본청 직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읍·면 직원은 소외될 뿐만 아니라, 현청사로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므로 별관청사 신축건물 취득건은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증원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명에서 567명으로 3명 증원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고,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와 부합되게 변경코자 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된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기준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코자 하였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사)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아)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19호)

군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래방의 시설 확대 가능성을 위하여 "영상반주"를 "영상반주등"으로 조문수정하고, 위탁관리 규정중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군수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필요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권한의 위임 규정중 일부 편중된 지역민이 아닌, 군민의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관리를 온산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시설관리만 위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다

자)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20호)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선용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청소년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 및 관리운영요원의 자격, 시설이용의 대상 및 이용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운영위원회 설치근거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여,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조례 전체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13조 중 관리자로 기 정의된 "언양읍장"을 "관리자"로 조문을 수정의결 하였다.

차)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7·8월중"에 하는 것을 "9·10월중"에 가능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5일"에서 "11월28"일로 변경코자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카)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2호)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코자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타)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호)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 도입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결유지 책임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쓰레기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반영된 조례로서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파)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

관련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울주군 분뇨저장탱크 폐쇄로 인한 처리장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할구역내의 분뇨처리를 울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처리토록 하고,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근거를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환경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코자 하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국내

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장·부의장의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를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개정코자하여,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 제48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8회 임시회는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4월2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4월3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8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2. 4. 30(화)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개 회 식	
4. 30(화) 11:00	1	1. 제4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5. 제4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4.30(1일간) 김철준의원, 이승춘, 서상길공인회계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동철,김철준의원

3. 본회의

○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2년 4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김철준의원,이승준,서상

길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원안의결하였다.

4.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에 따른 연가 공제방법등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안번호 제331호)

삼동면 금곡리 267번지외 2필지 1,607㎡의 군유지가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된(삼동컨트리클럽) 부지내 군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3항20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게 승인 목적대로 사용토록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다.

□ 제49회 임시회

1. 개회배경

제49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6월1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2년 6월2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의 사 일 정

제49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2002. 6. 20(목)

일 자	차수	부 의 안 건	처 리 현 황
6. 20(목) 10:00		개 회 식	
	1	1. 제4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2.6.20(1일간)
		2.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제4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우영구,한성률의원

3. 본회의

◦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02년 6월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4. 주요안건 세부처리결과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국 설치에 따른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에 통제관 신설 및 서부경찰서 신설로 인한 관할 경찰서 변경등 재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에 통제관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신설하는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중 “울산서·남부경찰서”를 울산지방경찰청서열규칙에 의거 “울산남·서부경찰서”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등을 행정자치부의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조사

□ 2000년도

1. 감사목적

울주군행정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 수행에 충실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2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기간 : 2000. 7. 18 ~ 7. 24(7일간)

4. 감사대상기관 : 울주군본청 및 산하 전기관

5. 감사대상사무 : '99. 11. 1 ~ 2000. 5. 31까지 추진한 사무전반

6. 감사반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간 사	감사위원(무순)	전 문 위 원	사 무 직 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명	이형철 한성률	이보근, 이동철, 김철준 김석암, 이정우, 서우규 서완영, 정인조, 우영구	정용교 한동욱	주보령

7.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공무원

위 원 회	대상총괄	감사대상기관	출 석 공 무 원		감사대상사무
			직	성 명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29개부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감사대상사무전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우정길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	김종득	〃
		지 방 세 과	지 방 세 과 장	박영구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설원홍	〃
		농 산 과	농 산 과 장	박주호	〃
		축 수 산 과	축 수 산 과 장	방동걸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정희	〃
		산 림 과	산 림 과 장	우규성	〃
		건 설 과	건 설 과 장	김영태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인동	〃
		민방위안전과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황병훈	〃
		의회사무과	서 면 감 사		〃
		온 산 읍	온 산 읍 장	한효동	〃
		언 양 읍	언 양 읍 장	김태완	〃
		서 생 면	서 생 면 장	한원복	〃
		온 양 면	온 양 면 장	지종대	〃
		청 량 면	청 량 면 장	이채동	〃
		웅 촌 면	웅 촌 면 장	차진환	〃
		범 서 면	범 서 면 장	이기백	〃
		두 동 면	두 동 면 장	한병학	〃
		두 서 면	두 서 면 장	최이부	〃
		상 북 면	상 북 면 장	오세곤	〃
		삼 남 면	삼 남 면 장	박장근	〃
		삼 동 면	삼 동 면 장	신상섭	〃

8.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일시 \ 구분		감사장소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직	성명
2000. 7. 18(화)	10:00~15:20	소회의실	총무과	총무과장	우정길
	15:20~18:10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18:10~19:10	〃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박영구
	19:10~19:50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7. 19(수)	10:00~10:40	〃	온산읍	온산읍장	한효동
	10:40~13:30	〃	서생면	서생면장	한원복
	13:30~14:30	〃	청량면	청량면장	이채동
	14:30~16:00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16:00~18:00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
7. 20(목)	10:00~12:20	〃	언양읍	언양읍장	김태완
	14:00~16:00	〃	두동면	두동면장	한병학
	16:00~18:00	〃	두서면	두서면장	최이부
	18:00~20:00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정희
	20:00~22:00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	김종득
7. 21(금)	10:00~11:20	〃	온양면	온양면장	지종대
	11:20~14:15	〃	상북면	상북면장	오세곤
	14:15~15:00	〃	삼남면	삼남면장	박장근
	15:00~17:00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인동
	17:00~19:00	〃	건설과	건설과장	김영태
7. 22(토)	10:00~11:20	〃	민방위안전과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
	14:00~15:20	〃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방동걸
	17:00~18:45	〃	산림과	산림과장	우규성
	18:45~19:55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설원홍
7. 23(일)	공휴일 (현장방문)				
7. 24(월)	10:00~12:00	소회의실	웅촌면	웅촌면장	차진환
	14:00~16:00	〃	범서면	범서면장	이기백
	16:00~18:20	〃	삼동면	삼동면장	신상섭
	18:20~20:20	〃	보건소	보건소장	황병훈
	21:30~23:00	〃	농산과	농산과장	박주호

9. 부서별 감사실시 결과

1) 총괄

부 서 별	시정및처리요구건수	부 서 별	시정및처리요구건수
총 계	77	소 계	30
소 계	47	민방위안전과	3
기획감사실	2	보 건 소	3
문화공보실	4	읍면공통	3
총 무 과	7	온 산 읍	3
재산관리과	2	언 양 읍	2
지 방 세 과	1	서 생 면	1
민원지적과	2	온 양 면	1
사회복지과	4	웅 촌 면	2
환경위생과	4	범 서 면	4
농 산 과	5	두 동 면	3
축수산과	3	두 서 면	1
지역경제과	3	상 북 면	1
산 림 과	3	삼 남 면	1
건 설 과	6	삼 동 면	2
도시건축과	1		

2)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기획감사실	ㅇ **예산편성 철저** • 예산편성은 결산자료등을 기초로한 재정을 정밀분석하여 기능과 성질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는 126억원이나 99년도 당초예산은 39억원 편성되었고, 99년도에는 228억원이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40억원만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시정토록 할 것 • 절감예산편성계획으로 99년도에 경상적 경비를 20% 절감하면서 연말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경상적 경비의 5~10%를 계획하고 있어 더 많은 불용액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일률적이고 즉흥적인 절감계획보다는 기능과 사업의 성질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ㅇ **이월사업 과다발생 미연방지 철저** 98년도 명시이월사업 57건에 대하여 18,217백만원, 사고이월사업 4건에 대하여 246백만원이 이월되어 이월사업 과다발생으로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으나, 99년도 역시 명시이월사업 52건 13,040백만원, 사고이월사업 9건 367백만원이나 이월된 것은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 할 것이며,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 수년에 걸쳐 집행이 예측되는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 추진함이 바람직 함.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공보실	ㅇ **군 읍·면지 편찬사업 철저** • 군 읍·면지 편찬에 있어 그 본질적인 의미의 취지는 좋다고 보고 있으나 편찬을 위한 각종 방대한 자료 수집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 또한 잘못 인식되어 왜곡될 경우 발생 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토록 할 것 • 읍면의 발간부수를 획일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바 지역실정에 맞는 발간부수와 배부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ㅇ **홍보물 배부철저** • 울주군 홍보를 위한「관광울주」안내책자를 3,000부 발간하여 849부만 배부되고 현재 남아 있는 1,951부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배부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군 행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타시도에서 배부된 홍보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 군정홍보지 「아름다운 울주」를 매월 1회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현재 반상회는 자율적 운영인 바,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마을에는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아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배부방안을 강구토록할 것. ㅇ **장수체육대학 운영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중 장수체육대학의 운영실적이 언양읍 노인게이트볼 한 종목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바 장수체육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많은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공보실	ㅇ **진하해수욕장 팔각정 운영대책 마련** 진하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팔각정은 당초 휴게실등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영수익의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임대희망자가 없어 현재는 임해봉사실로 사용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바 동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맞는 용도와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총 무 과	ㅇ **공무원 전보제한 미이행 시정** 공무원의 전보는 보직관리의 기준과 전보제한등을 감안하여 전보조치하여야 하나 최근 발령현황을 보면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3~4개월 내에 전보발령 되는 사례가 있어 장기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업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는 바, 이후 여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업무철저**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체납금에 대한 회수율이 미흡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관심부족으로 생각되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본인 재산압류등의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조치 하는 등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융자후 고질체납 하다가 필요시 완납하고 재신청을 했을 경우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총 무 과	ㅇ **구내식당운영 철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적자운영 되고 있어 매년 감사시 지적이 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방안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바 상조회와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ㅇ **자율반상회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반상회는 군정의 홍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나 4개 읍·면은 반상회를 개최한 실적과 건의내용 없음. 현행 시행되는 반상회는 자율반상회로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활성화 할 수 있는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 ㅇ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활동의 미약함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 마을회관등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기능별 관리부서 조정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 직장인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실적이 미비하는 등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총 무 과	ㅇ **각종단체 보조금관리 철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지원목적에 맞는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원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할 시에는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ㅇ **아르바이트사역에 대한 홍보철저** 아르바이트학생 사역시 울주군 주민의 자녀가 아닌 타지역 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여 관내지역 신청자가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민의 자녀를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산관리과	ㅇ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철저** '99년 세외수입 목표액이 25,538,491천원에 징수액 44,315,235천원으로 징수율이 173%였으나, 2000년 목표액은 34,664,264천원으로 '99년 징수액 보다 적으며, 또한 2000년 5월 31일 현재 징수액 40,258,114천원 보다 적게 책정되어 2000년 당초예산편성 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적정 세출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잦은 추경예산 편성요인과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 세출예산 적기집행애로 등 많은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추계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분야 예산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재산관리과	ㅇ **청내 주차장 관리철저** 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98년도 제14회임시회에서 출입증 미부착차량 및 10부제차량 주차행위 단속, 인근 주민들의 청사내 장기주차 차적조회 이동조치, 직원들의 청외주차장 이용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에도 주차난이 계속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바, 주차문제의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세과	ㅇ **지방세 목표액책정, 체납세징수, 과오납방지업무 철저** • 지방세과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방세 목표액의 책정, 체납세일소, 과오납 방지가 될 것이나 • 2000년도 당초예산목표액 41,315백만원 책정의 경우 지역적인 여러 정황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 최종목표액을 기준으로 '99년도 주민세 특수발생 요인분만을 차감하여 안일하게 책정하였는 바 지방세 목표액 결정은 군행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감안하여 금후 목표액 결정시 정확히 세입책정, 이를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세출예산편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임 • 5월 31일 현재 체납액 11,247백만원중 현년도분이 795백만원이나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신속한 재산추적 등으로 징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 99년도분 과오납 발생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년도에는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세 업무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민원지적과	ㅇ **FAX민원 발급 철저**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FAX민원발급 서비스가 신청인의 신청내용과 다른 내용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바 FAX민원발급에 철저를 기할 것 ㅇ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업무 철저** 200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함에 있어 소유자별 토지내역이 기재되어야하나 타인명의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 하였는 바 통지문 발송시 확인을 철저히 하는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 여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사회복지과	ㅇ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강사선발 홍보철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약 95%가 온산, 온양주민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바 1~2개 읍면에 편중되지 않고 남부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등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교육생들이 유능한 강사에 의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의 강사진 선발에 있어 강사모집안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사회복지과	ㅇ **경로식당운영 활성화** 기존 경로식당이 소외되는 노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회원제도, 기득권주장등의 몇가지 발생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운영횟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노인급식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ㅇ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후진국에서 발병하는 장티푸스가 우리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여 우리군 사회복지행정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는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ㅇ **생활안정기금대여 활성화 방안마련**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이 보증인을 두어야 하는 관계로 98년도부터 대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저소득 주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환경위생과	ㅇ **환경분야 지도단속 강화** (주)세종은 99.12.21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하였으나 2000.2.25 동일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고, (유)선우는 4개월간 폐기물소각시설 관련 2차례 위반사항 적발되었으며, 세종환경개발(주)는 3개월간 폐기물 수집·운반관련 2차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등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아 재적발 되는 업체가 있어 상습적으로 생각되는 바 관련법규를 준수할 때까지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환경위생과	ㅇ **소각시설 활용방안 마련** 온산읍사무소외 6개 관공서와 태성포장공업사외 17개 사업장의 소각시설 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ㅇ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철저** 울주군내 자연발생유원지 3개소 중 배내골유원지는 민원발생, 일손부족등의 사유로 위탁관리가 되지 않아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아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와 형평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빠른 시일내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ㅇ **관내추진중인 사업장관리 철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언양하수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추진주체가 우리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군 지역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을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 산 과	ㅇ **언양휴게소 특산물 판매코너 운영 점검철저** 우리농산물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언양휴게소 특산물판매코너에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판매점의 운영과정, 판매실태, 호응도 등을 점검하여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운영상태가 부실할 경우 다른 단체에 이양하는 등 특산물 판매코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지역 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농 산 과	ㅇ **농업기반사업 적기시행** 상북면 지내리 못 준설사업시 영농기를 앞둔 시점에 못 준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경영(벼이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농업기반사업 추진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것 ㅇ **대곡댐 상류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대곡댐 건설 이후 상류지역은 안개발생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조량 감소와 병충해 발생등으로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댐 상류민이 농업에 전념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에 적합한 농작물을 발굴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시 농축산과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농지전용 업무철저** 자연발생유원지인 선바위 옆 범서면 입암리 1번지의 농지전용 협의건에 대하여 범서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택을 건립 할 경우 환경유지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농지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처리었는 바 이후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을 최대한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토록 하기 바람 ㅇ **휴경농지 방치 시정** 두동면 은편리 군도 27호선 변에 휴경농지가 방치되고 있는 바, 우리군의 휴경농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휴경농지 일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축수산과	ㅇ **축산업 발전방안 검토** • 축산사업에 대한 투자가 시설분야에서 유통분야로 점차 전환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축소되고, 특히 한우가격 폭락과 관련 축사시설의 가동율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축산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한우·젖소개량사업,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 향후 계속 확대 추진토록 할 것 ㅇ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집행실적 저조** 민간자본보조예산은 민간의 자본형성이나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사업의 시기에 따라 농가의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이 안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여겨지는 바 시정토록 할 것 ㅇ **이월사업 원인분석 철저** 99년 명시이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외 2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분석하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감사자료에 단순히 공기부족으로 분석한 것은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는 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반드시 사업계획 기간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과 계획으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수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지역경제과	ㅇ **축제행사 운영지도 철저** 한마음공단축제, 언양불고기축제등 축제행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전준비 미숙과 이해관계자간의 이해대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무계획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축제에 대한 지원은 없어야 할 것이며 행사 추진시에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ㅇ **원전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 기능 확대** 고리원전주변의 환경감시기구가 기장군에 소재하면서 우리군에서도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전주변지역에서 환경감시기구를 설립하면 2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원전주변지역의 환경감시기능을 확대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도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미흡**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 중 환경위생과소관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쓰레기봉투지원 756천원, 문화공보실소관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 50,000천원등은 타부서와 관련된 이중적 예산지원이며, 형식적인 실적으로 여겨지는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산 림 과	ㅇ **조림사업 식재수목 품종 선정 철저** •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산공단주변 식재 된 수목이 공단주변에는 가급적 큰 나무로 조림하여야 하나 그와는 반대로 작은 품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 서생지역 가로수로 많이 식재 되어 있는 벚꽃나무는 배나무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배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각종 조림사업의 수목식재 품종 선정이 적절치 못한 바 • 배나무단지주변 식재된 벚꽃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간절곶 해양공원 조성관련 수목식재계획등 향후 조림계획시 그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품종을 조림토록 하기 바람. ㅇ **추경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시 추경예산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ㅇ **산불발생 신고체제 확립** 산불예방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신고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진화체계가 미흡하여 조기진화 가능한 화재가 대형산불화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산불발생 신고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건 설 과	ㅇ **보안등 관리철저** 군 관내 보안등이 현재 4,531개로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일부지역은 고장등 적기에 수리를 못하여 활용치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무리한 보안등 설치를 지양하고 철저한 수리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우선 되도록 하기 바람. ㅇ **공사 설계 및 설계심사 철저** •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은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당초 설계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의 중요함이 강조됨에도 상부기관 감사시 설계관련 감액조치등이 발생하고 특히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서상에 거푸집등 불필요한 사항까지 계상 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설계 및 공사 지도감독 일련의 공사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공하는 요인이므로 앞으로 설계 및 설계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ㅇ **폐아스콘 재활용방안 검토** 군내 년간 폐아스콘 발생량은 1,500여 톤이며, 톤당 15,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연간 20,000여 톤의 신소재 아스콘이 사용되어지므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본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건 설 과	ㅇ **사업 우선 순위 결정 신중** • 향산~태종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두서면, 언양읍, 상북면 3개 읍·면과 연결되어 농작물 수송에 도움이 되고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음에도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6년 전부터 시행하여 현재 총 공정의 30% 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투자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이는 읍·면의 숙원사업 우선 순위에만 의존한 결과로 여겨지는 바 군 전체의 개발과 투자효과등에 비중을 두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등 보다 신중하게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할 것 ㅇ **공용주차장 운영계획수립 철저** 언양 공용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유료화 시설을 하였으나 불과 2년 경과한 현재에 교통체증 등을 사유로 무료화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여겨지는 바 이후 여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하천구역내 사유지 보호** 국토관리법이 개정되어 하천구역내 사유지중 구역계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전체 하천구역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하천부지를 재정비함과 관련조서를 빠른 시일내 새로 작성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시건축과	ㅇ **도시계획법 제정에 따른 업무연찬 철저** • 도시계획법 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관련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업무처리에 혼동이 예측되는 바 업무관계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광역시 내의 군수에게 기존에 주어졌던 도시계획입안권이 없어진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막대한 권한이 축소되는 사항으로 상부, 중앙부서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법제정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임.
민방위안전과	ㅇ **고용촉진훈련 내실운영 촉구** 고용촉진훈련은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인원이 매년 중도 탈락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바 영세민만으로 소기 성과를 거둘수 없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일반인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ㅇ **종합적인 안전대책 방안 강구** 우리군은 농공단지, 공업단지, 원전등이 있어 안전대책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나 재난관리업무중 가장 중요한 재난관리계획안을 서면 심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공단지역, 원전지역 안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재난관리 방안을 강구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민방위안전과	ㅇ **공공근로요원 선정 철저** 일부공공근로자의 태만한 근무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근무토록 지도 강화하고, 인력선발에도 사업기간, 대상자의 재산, 연령등을 조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와 실제 어려운 계층에 도움되고 성실히 근무하는 자를 본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 건 소	ㅇ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재배치 검토** 기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건립 될 당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적합하였으나 현시점에서 볼 때 지역여건 등의 변화로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므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설치 등의 관련법령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ㅇ **의약분업관련 준비철저** •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그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어 전면 재검토가 요망되며 • 농촌 주민들은 농사일로 대부분 늦은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현재보다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 건 소	ㅇ **물리치료실 이용자 편의도모 방안 검토** 온양의 보건진료소내 물리치료실의 이용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많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나 대체로 인근 지역주민들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타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하거나 향후 시설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읍·면공통사항	ㅇ **감사자료 작성부실** • 감사자료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신고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자료중 물건의 지목, 지적, 점사용 기간 및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의 내용이 읍·면마다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예산서상 사업명과 감사자료의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자료 작성이 불성실한 바 이후 여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예산집행시기 부적정** 예산은 그 시기에 맞게 집행되어 효용의 가치를 높여야 하나, 시급을 요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된 재해대책 과목의 자산취득비 2,100천원이 한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시정토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읍·면공통사항	ㅇ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철저**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수질검사시 불합격판정에 의하여 재검사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마다 소독약 투입방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소독실시 방법을 검토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온 산 읍	ㅇ **교양프로그램 중복 운영방지** 읍사무소의 무료서예교실과 온산읍소재 남부사회복지회관의 서예교실이 동일 프로그램으로 중복운영 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남부사회복지회관의 활성화와 동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 검토바람 ㅇ **보도블럭 교체공사 철저** 덕신 시내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많으나 거리 구간마다 종류가 달라 도시미관상 좋지 않으며, 공사 완료후에도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사감독 소홀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도블럭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가 불충분한 업체와는 계약을 지양하기 바람. ㅇ **공해발생 언론보도에 따른 대책 강구** 미세먼지와 중금속오염에 대한 울산대학교 이병규교수의 논문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지역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른 언론에 대한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방안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언 양 읍	ㅇ **지역특화사업 추진철저** 소도읍 개발사업중 가축도매시장관련 지역특화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수익성 사업인 바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형식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할 것. ㅇ **공사계약 지역업체 수주** 각종 공사계약 현황으로 총 27건 중 울주군 소재업체 16개소, 타지역 소재업체 11건으로 되어 있는 바 공사계약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가능한 우리군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할 것
서 생 면	ㅇ **위험시설물 유치관련 주민여론 수렴** 원전지역 추가지정 관련 많은 민원이 야기된데 이어, 위험시설물이라고 인식되는 석유비축단지를 서생에 건설코자 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재기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동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온 양 면	ㅇ **부실시공 공사업체 계약체결 자제** '99년 행정사무감사시 공사를 부실시공하여 지적된 업체와 몇 개월 경과하지 않아 재계약체결 공사를 시행케 함은 의회의 감사에 대한 안일한 조치이며, 부실공사 재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공사발주를 자제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웅 촌 면	ㅇ **장백아파트주민 식수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 웅촌면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장백아파트 주민들의 식수 부족문제는 면정의 중요현안이지만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관련 실·과 및 기관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건의하고 추진경과를 확인하는등 적극적인 면정추진이 요구됨 ㅇ **쓰레기 소각장 처리문제** 민원발생에 따라 가동하지 않는 면사무소내 쓰레기소각장 처리문제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타기관에 이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할 것
범 서 면	ㅇ **지역여건에 맞는 면정추진** 범서면의 전체가구 중 약 75%인 6,047가구가 비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농정위주로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의 도시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ㅇ **산불예방 홍보강화** 전년도 산불 발생이 5건으로 군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바 산불발생 후 초동진화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범 서 면	ㅇ **면내 시행사업 허가사항 확인 철저** 점촌하수구 공사는 아파트 건립시 사업자가 시행해야할 사항임에도 허가당시 확인하지 못하여 군에서 실시하였는 바, 면내 시행사업에 대하여 허가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가 시행해야 될 부분을 사후 행정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ㅇ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가업무 철저**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면적에 비하여 점·사용료 부과금액이 적은 것은 공시지가 적용대상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할 것.
두 동 면	ㅇ **농민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두동면은 농가가 전체의 60%를 구성하고 면 행정중 농사행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금년 한해 발생시 타 읍·면의 상황과 비교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 바 향후 농사행정은 시한영농임을 감안하여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농민을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ㅇ **노점상행위 지도단속 철저** 두동면 봉계리 상가주변 도로변에 노점상이 많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행정의 지도단속 소홀로 여겨지므로 재래시장 기능의 활성화 방안과 노점상행위의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두 동 면	ㅇ **지역주민 의견수렴 면정반영**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 선정등 면 지역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시 면정자문위원회 의견이나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나 그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숙원이 면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못하는 바 지역의원과 협의하거나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
두 서 면	ㅇ **업무추진비 균형집행**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의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비용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5. 31현재 4,800천원 중 57.2%인 2,746천원을 집행한 것은 계획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시정토록 할 것
상 북 면	ㅇ **농지전용 사후관리 철저** 상북면 이천리 산1-2번지 3,653㎡에 축사 및 농기계, 농작물 보관창고로 농지전용 처리하였고 등억리 118-1번지 2,233㎡에 축사로 농지전용 신고수리 하는 등 어느지역보다 과대 면적이 농지전용 되어 투기나 타용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바 , 반드시 목적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농지전용 신고시 농지의 보존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면적이 전용활용 될 수 있도록 지도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삼 남 면	ㅇ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철저** 삼남면 교동리 1499-128번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실 확인후 4월 3일 3차 계고가 끝났음에도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처리하고 이후 여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삼 동 면	ㅇ **민위주의 행정추진** 관련실과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관련 의견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의견제출 하였으며, 한해 동원령 발령시 대책이 미비하여 민원이 야기 된 것은 민위주의 행정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 ㅇ **공사감독 철저 및 부실공사업체 계약체결 자제** • 2000. 1. 11~1. 21(11일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의 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거푸집 미사용등 설계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사감독의 소홀이 여실히 드러나는 바 이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 사촌봉답들 용수로설치공사의 벽체 및 기초공사에 일부 철근을 미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하여 감사에 지적된 업체와는 이후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할 것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1. 감사개요

○ 감사기관 : 울주군의회

○ 감사기간 : 2001. 7. 18 ~ 7. 24 (7일간)

○ 수감기관 : 군본청, 사업소, 읍•면

2.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계	시정요구건수	건의건수
91	68	23

3.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 총괄

구 분	시정요구 건수	건의건수	처 리 결 과		
			완 결	처 리 중	처리불가
실 과 소	57	20	55	22	
읍 면	10	3	10	3	
공통사항	1		1		

수 감 부 서	시정요구 건 수	건의건수	처 리 결 과		
			완 결	처 리 중	처리불가
합 계	68	23	66	25	
실 과 소 계	57	20	55	22	
기 획 감 사 실	8	2	8	2	
문 화 공 보 실	7	2	7	2	
총 무 과	5		5		
주민자치기획단	1			1	
회 계 과	6	2	6	2	
지 방 세 과	2	1	3		
민 원 지 적 과	1		1		
허 가 과	1	1	1	1	
복 지 위 생 과	3		2	1	
환 경 보 호 과	7	4	7	4	
농 산 과	2	1	2	1	
축 수 산 과		3	2	1	
지 역 경 제 과	3		3		
산 림 과	1		1		
건 설 과	5	1	4	2	
도 시 과	1	1	1	1	
보 건 소	4	2	3	3	
읍 면 계	**10**	**3**	**10**	**3**	
온 산 읍	1		1		
언 양 읍	1		1		
온 양 읍	2		2		
서 생 면	1		1		
청 량 면		1		1	
웅 촌 면		1		1	
두 동 면	1		1		
두 서 면	1		1		
상 북 면	1		1		
삼 남 면	1		1		
삼 동 면	1	1	1	1	
공 통 사 항	**1**		**1**		

2)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기획감사실	ㅇ **포괄사업 집행 철저** •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했던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2001년도 발주한 온양게이트볼장외 11개사업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마땅하나 삼남면 장백아파트는 작년에 부도가 나서 50~70mm정도의 비만와도 토사가 무너져내려 농경지를 메우고 있는바 포괄사업비는 이러한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임. • 2001년 포괄사업비중 석남사진입로 정비 30,000천원 경내석축공사 22,160천원은 전통사찰로서 1차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입장료 수입등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주민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업에 포괄사업비를 투입할 성격이 아니며 또한 범서 천상테니스장 보수는 99년 49,900천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2001년도 30,000천원을 투입하여 보수함은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못 추진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ㅇ **이월사업 과다발생 및 예산편성 철저** 2000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93건의 사업중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재이월되는 9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는지 재검토하여 향후 예산반영시 참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요인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의 잘못과 추경예산에 대규모사업의 편성으로 발생된 바 차후로는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기획감사실	ㅇ **군민여론 군정반영 대책 미흡** 2000년 군정여론 조사서에서 보면 그린벨트 관리비용을 광역시가 부담하는 방안에 찬성의견 73.3% 통합전의 울주군 공유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87.5% 농업기술센터를 우리군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87.5%로 나타나고 있으나, 군정여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군민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조례 등 각종관련 법령 정비 철저** 울주군공무원기구설치조례의 대강사무의 기준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부산 기장군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실과별 사무분장 구분에 보다 명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조례등 법령정비 철저를 기할 것. ㅇ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미흡** 읍•면에서 추진하여 오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군으로 이관, 군에서 일괄 설계용역, 발주함으로 해서 읍•면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시기 적절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영세한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점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대책이 요구됨.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기획감사실	ㅇ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 각종위원회 구성은 42개로 '98년도 감사시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 들어서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보화시범마을을 선정하면서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당초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구성비율을 2001년도에 28%선으로 상향조정, 여성위원의 적극적인 위촉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19개의 위원회에서 전혀 여성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여성위원의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ㅇ **공무원 구조조정대책 미흡**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직원과 하위직을 중심으로 감축하였으며 특히 읍·면기능전환에 대비 일부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면서 읍·면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정, 청소, 선거업무를 그대로 둔 채 인력만 감축하는 것은 읍·면의 현실을 무시한 인원감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ㅇ **임의 POOL보조금 집행등 관리 철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시 보조단체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기타 유사 단체등에서 있을 수 있는 보조금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공보실	ㅇ **각종 사업예산 집행부적정** •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산운동장 조성사업은 이미 매입한 부지 10,077평중 녹지자연도 7등급선 이상 4,500평은 환경영향 평가시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제척통보에 따라 운동장 조성이 불가하여 당초 목적과는 필요없는 땅을 매입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제척된 4,500평에 대하여는 앞으로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박제상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망부석과 은을암을 재현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바위가 망부석인지 정확한 학술적인 고증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정확한 학술고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 2001. 3. 16 울주문화원에 보조한 울주향토사료관 설치·운영비 23,000천원중 시설설치비는 문화원에서 집행토록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운영비만 보조함이 타당할 것이며 향후 단체보조시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집행토록 할 것 • 2000년에 관광울주 홍보책자를 국·중문 혼용하여 1,000부를 발간하였고, 금년에 또 27,300천원을 투자하여 영어, 일어로 발간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어 앞으로 홍보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공보실	ㅇ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도철저** 2000.11.11일 울주군 문화원에서 38,000천원을 보조하여, 뜻깊은 언양읍성 석축5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당일까지도 행사장 준비가 되지 않는 등 행사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 바 향후 민간단체 보조시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ㅇ **학교지원금 관리 철저** 각 학교 지원금에 대하여 학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예산에 반영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할 것. ㅇ **진하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철저** 울산광역시에서 팔각정 앞에 설치한 진하해수욕장 안내홍보입간판은 홍보효과가 떨어지므로, 광역시에 건의하여 국도변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을 검토 ㅇ **간절곶 주변정리 및 관리철저** 간절곶은 우리 울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팔각정출입문 및 창문파손, 방파제에 폐어선 방치, 불법포장마차 난립, 소나무 등 조림목 고사 등 주변지역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며, 신속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공보실	ㅇ **군 · 읍 · 면지 편찬 관리 철저** 군 · 읍 · 면지 편찬에 있어서 자료수집으로부터 최종 편집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인 만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함은 물론 수집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오류가 없도록 할 것.
총 무 과	ㅇ **2000 감사지적사항 조치 미흡** • 공무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업무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어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였으나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42명을 위반하여 전보발령 하는등 법규를 위반하여 발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역에 대한 짧은 홍보기간과 홍보미흡으로 인해 군민의 자녀가 아닌 타지역 학생이 사역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향후 아르바이트 자격요건을 군민의 자녀로 한정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군민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사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ㅇ **각종 축제행사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 사전준비 철저** •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함 • 각종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선발에 있어 부정시비가 있으므로 축제 본래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철저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총 무 과	ㅇ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통해 습득한 선진사례 활용**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해외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하는 해외 배낭여행을 추진함에 있어 여행국 및 여행일정 선정에 있어 여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여행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등은 문제점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행을 통해 얻게된 해외사례등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전직원에게 공람하는 등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ㅇ **위원회 참여수당 지급 부적정** 울주군민의 날 조례에 의하면 군민상심사위원회 및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2000년 9월 군민상심사위원 민간인 9명에게 450,000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차후로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주민자치기획단	ㅇ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울주군 해병전우회와 남울주 해병전우회가 분리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역분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회 계 과	ㅇ **공유재산 등 재산관리대책 미흡** 2000회계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부분에 있어, 건설과, 농산과등 실·과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174,494㎡ 8,230백만원 상당의 재산이 누락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준시점을 통일하여 전 실·과별 자료를 취합, 결산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조속히 D/B화하여 읍·면과 자료를 공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ㅇ **상북면청사 감리비 불용처리 부적정** 상북면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0년도에 2,580만원에 감리계약을 하여 2001년 7월까지 감리를 하였으나, 2001년도로 감리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 처리하여 감리비 지출에 차질을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감리비 지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ㅇ **범서읍청사 이전 추진 철저** 범서읍청사 이전계획에 의거 범서읍 입암리 399-6외 3필지 5,950㎡에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오던중 토지소유자 4명중 1명이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미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지구지정 절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 행정의 공신력까지 실추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회 계 과	ㅇ **공사입찰 만전** 2001. 3. 21 두동이중마을 안길복개공사 입찰시 입찰가격이 더 근접한 회사에 대하여 특별신인도부분이 행정의 실수로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아 적격점수가 낮게 나와 타 업체가 낙찰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입찰무효선언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하였으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ㅇ **시·군통합 당시 군유재산 환수 조속 추진** 시·군 통합당시 울산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울산시와 인수·인계시 토지조서가 없음은 민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인무효이고, 또한 통합당시에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했는데 이것을 울산시가 통합 기본정신을 위배해서 울주군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공유재산조정지침 개정 및 환원요구를 하였으나, 안된다는 회신이 왔고, 울산광역시에서도 2001. 1. 5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금년 1회 추경에 소송을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ㅇ **청사관리부서 기술직 배치 및 공사설계변경시 검토 철저** 공사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과 증축에 있어 설계변경시 공사감독의 의견을 묻지 않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범서읍청사 신축과 수시로 군, 읍.면청사를 보수하고 있으므로 회계과에 건축직을 배치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회 계 과	ㅇ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우대방안 강구** 읍·면 소규모 시설공사, 청사보수 및 각종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울주군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는 바, 울주군 관내업체가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ㅇ **부정당업자 관리 철저** 공사관련 위법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할 것임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수의계약을 제한토록 할 것
지방세과	ㅇ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 철저**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팀이 있어 고의.고질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추적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군에서도 고액, 고의성 재산은닉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바람. ㅇ **지정금고 관리 철저** 울주군 금고약정서에 따르면 전담창구설치와 그에 따른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담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협자체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금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지방세과	ㅇ **각종 민원관련제도 변경시 홍보대책 미흡**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없이 금년부터 갑자기 중단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앞으로는 민원관련제도 변경시 철저한 홍보후 시행토록 할 것.
허 가 과	ㅇ **불편민원 해소대책 미흡** 당초 민원편의 차원에서 신설된 허가과가 오히려 최종 허가에 소요되는 일수가 늘어나고,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허가과 설치이후 성과분석등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ㅇ **웅촌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미설치지역 민원대책 강구** '90. 11. 7 웅촌면 일원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공공하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까지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한 후 건축허가한 사실이 2001. 2월 행자부 감사에 지적되어, 해당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됨.
복지위생과	ㅇ **각종 자료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자료의 기준시점이 같은 데도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은 대상자 관리에서의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바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복지위생과	ㅇ **위생업소 관리 철저** 위생계 직원 4명으로 우리군 전체의 위생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 등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관내 위생업소 현황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직원을 증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업소가 과다 발생에 사전홍보에 역점을 두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ㅇ **아동위원회 관리 철저** 복지위생과에서 아동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아동위원이며,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제정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환경위생과	ㅇ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체계구축 미흡** • 덕신지역은 하수도법 제9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혹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를 처리해야 하며,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합류식 지역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후에 오수를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여 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환경보호과에서는 '98.12.11 광역시로부터 덕신리 일원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06년까지는 불완전 분류식이므로 분류식 관거정비 완료시까지 신축건물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받아 처리하였고,이는 덕신전체 구획정리할 때 우수·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을광역시에 질의시 분명히 하였다면 이러한 회신이 오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므로 2001년3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감사시 산출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2억 1,900만원나 되며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환경위생과	ㅇ **회야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관리 철저**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최종방류수는 관로를 매설하여 회야댐 밑으로 방류하고 있어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최종방류수의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시꺼먼 상태로 방류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여 광역시에서 관을 용접하여 땅속으로 묻어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점검하기가 곤란하도록 되어있어 조속히 시에 통보 최종방류수 관로를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 ㅇ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으로 재정손실 초래** 2001. 2. 27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5톤 1대를 46,590천원에 구입하여 운전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케 함으로서 수거차량이 불필요해짐에 따라2001. 6. 23일 42,370천원에 매각함으로서 4,220천원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 왔으며, 차후로는 사업시행시 분석을 철저히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ㅇ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방법 개선** 매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주고있어 예산이 낭비되므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격년제 용역이나 대행요율을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환경위생과	ㅇ **쓰레기봉투 공급업체 자체 선정방안 강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을 지금까지 광역시 출범당시에 계약한 업체에 계속하여 계약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군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보조금 지급 부당** 2000. 12. 29 울주군 환경단체연합회에 보조금 10,000천원을 지급한 사례는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계연도 폐쇄기에 행사지원비로 보조금 지급은 시정되어야 할 것 ㅇ **온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확대** 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그 지역에 몇 백억원씩 혜택을 주고 있는 데, 온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이 한달에 16,000천원으로 지원실적이 미미한 바 광역시에 특별지원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ㅇ **공중화장실 민간대행사업에 후속조치 미흡으로 예산낭비** 민간대행을 할 경우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여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부를 사전조치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1. 3. 2일 대행계약한 후 2001. 3. 7일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읍·면에서 사전조치를 하지 못하여 대행업체와 읍·면에서 계속 사역하므로써 이중으로 청소를 하게되어 언양읍 809,640원(26일), 온양읍 349,200(12일), 청량면 756,600원(26일), 읍·면계 1,915,440원을 지급하므로서 예산낭비 초래한 바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환경위생과	ㅇ **진하해수욕장 주변 편의시설관리 철저** • 화장실내 환기시설이 없어 심한 악취가 날뿐 아니라 세면장배수구가 막히거나 파손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편의시설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바 즉시 보수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갤럭시 호텔옆 깨목하천에서 오폐수가 별도의 정화시설 없이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어 해수욕장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바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오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유원지 이용객으로 하여금 각종 발생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 봉투를 사용, 처리토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전혀 행정지도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를 마련 이용객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기 바람.
농 산 과	ㅇ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 '96. 1. 1이후 취득농지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휴경지로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처분 대상농지는 읍·면의 기초 조사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만약 읍·면 기초조사가 미흡할 경우 당초 규제의 목적 실현이 불가할 뿐 아니라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농 산 과	ㅇ **각종 축제행사 추진 및 분석, 평가등 관리 철저** 매년 울산배 홍보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홍보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그냥 막연하게 일과성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농산물 수입개방과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수립**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일부 농작물의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 대책으로 요구되는 바 농산과 에서는 유통구조개선 및 식품가공산업 육성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축수산과	ㅇ **각종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대책 철저** • 번식우 장려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다산장려금에 대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비·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 전복양식사업을 위한 전복치패구입비를 어촌계별로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의 전복치패를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 상승을 가져오는 등 다소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일괄구입하여 어촌계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축제를 통합 운영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후 축제지원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주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축제로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행정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점차적으로 자체 번영회를 통해서 독자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토록 해야겠으며, 행정에서는 행사홍보 등 측면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지역경제과	ㅇ **공용주차장 관리대책 미흡** 대운산 공용주차장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곳과 추가로 설치한 2곳을 포함, 현재 3곳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설치되어있는 한곳을 제외한 두곳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바 나머지 두곳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ㅇ **지역축제행사 추진 철저** 금년 5월 20일에 실시한 온양 대운산 철쭉꽃 축제는 적절한 행사 개최시기를 일실하여 축제명과 맞지 않는 단순한 등산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어 그 대책으로 시기조정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축제명과 부합되는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철쭉을 추가 식재하는 등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 ㅇ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대상지 선정검토 소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울주군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선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일련의 과정없이 남창시장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시정토록 할 것
산 림 과	ㅇ **가로수 관리 철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식재후 고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기 방제는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신속히 제거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건 설 과	ㅇ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철저** • 읍·면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일괄 발주토록 한 것은 각읍·면 실정을 무시한 관 편의주의 행정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각종 소규모공사 설계시 지역여건을 잘아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단에 의해서 직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직영 설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것. ㅇ **재해대책 사업추진 미흡** 하천관리 자체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한 점은 7월과 8월에 걸쳐 장마, 태풍등에 의한 각종 재해가 예상됨에도 시기성을 고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ㅇ **도로공사시 안전사고를 고려 설계 및 공사시행** • 국도·군도와 농로 연결도로의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이용하는 농업인의 불편은 물론 인명사고가 번번이 발생되는 바 대책수립이 요구됨. • 상북면 양등·장성간 농로교량 상판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교량유실 및 이용농업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ㅇ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강구** 2001년 발주공사 중 총설계 변경건이 25건으로 이와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가는 물론 공기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적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양하여야 할것임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 시 과	ㅇ **각종 민원관련 대책수립 철저**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7월말까지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잃지 않토록 할 것. ㅇ **위. 수탁 수수료 관리 철저** 원전보상금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그 성격상 용역에 대한 대가성 수입으로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며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것임
보 건 소	ㅇ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관리 철저** • 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하면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감사는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음해 예산을 2000. 12. 27일 승인하였으며 또한 예산을 2001. 2. 14일 결산하는 등 보건진료소협의회 재정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바 앞으로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우리군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지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호직을 우선 배치하여 보건의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 건 소	ㅇ **울주군지역으로 보건소 이전방안 강구** 울주군보건소가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울주군민들의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난 번 보건소에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서부·남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어 우리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생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ㅇ **우물관리 철저(소독 등)** 우물소독시 잔류염소가 0.2PPM 정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물 4톤당 클로로칼키 한 알정도의 적당량보다 실제 우물소독시 과다하게 넣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전용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대형정수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보건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대책 강구** 보건소에서 발간한 보건행정서비스헌장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보건소를 알리는 좋은 홍보자료로 전 마을에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ㅇ **보건지소, 진료소에 군민을 위한 에어콘 등 환경개선 촉구** 울주군내 서생·삼남·삼동면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에 에어콘이 없어 더운 날씨에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빠른시기에 예산확보하여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온 산 읍	ㅇ**각종 수의계약 관리 철저** 각종 공사계약(수의계약) 시 일부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점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언 양 읍	ㅇ**사업예산 집행계획 수립 후 시행** 읍·면 포괄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읍·면 실정에 맞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
온 양 읍	ㅇ**사업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후 시행** 2000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예산 중 35,449천원을 불용한 사례로 이는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타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과다,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ㅇ**부정당업자 관리 철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 부실공사 재발 우려가 있어 관급 공사 발주에 참여제한을 조치하여야 함에도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서 생 면	ㅇ**사업예산 집행 등 관리 철저**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에 삭감하여 재원을 활용하여야 하나 서생면에서는 집행잔액 33,361천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청 량 면	ㅇ **오천 · 오대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 강화** 오천 · 오대 모기떼의 박멸을 위한 방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용역의뢰 등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웅 촌 면	ㅇ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적극 대처** 90. 11. 7 회야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웅촌면의 경우 아직 관로 매설이 완료되지 않은 64㎞는 2005년에 완공예정인 건축시 건축주가 관로 매설해야 함으로 관로 매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보다 더 많아 주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관에서는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함으로 행정소송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동 면	ㅇ **사업예산 집행계획 수립 후 시행**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중 5.31일 현재 미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읍 · 면 실정에 맞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두 서 면	ㅇ **농지전용 잔여부지 관리 철저** 농지전용 잔여부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불법 훼손 또는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상 북 면	ㅇ **각종 지역축제행사 추진 철저** 영남 알프스 배내골 고로쇠 약수제에 대하여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등 취지는 좋으나 홍보부족과 행사당일의 준비부족 등으로 행사참여자가 적었는 바 차후로는 시기선정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관광객 참여유도.
삼 남 면	ㅇ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 방기골프장 주민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군의 이미지 훼손과 주요 군정 추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삼 동 면	ㅇ **계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마련** 삼동면은 버스가 하루에 왕복4번만 다니고 있는 오지마을이나 산이 많기 때문에 고급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만큼 각종 주민편익 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버섯 등 지역특화사업 개발에도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것 ㅇ **각종 주요시책사업 홍보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인구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타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홍보 부족 및 기초조사의 부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 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부서(기관)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공 통 사 항	ㅇ **감사제출 자료 미흡** 매년 감사제출 자료 중 일부 및 전부를 누락시켜 제출하거나 또한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감사 중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바 이는 수감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제3절 군정질문 및 4분 자유발언

Ⅰ. 군정질문

1. 총 괄

년 도	의 원 수	건 수	비 고
계			
2000년			
2001년			

2. 질문 및 답변내용

1) 제28회 임시회 (2000. 4. 29)

□ 질문 : 행정조직 운영에 관하여(서완영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일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속에서 맞이한 새천년의 경진년 한해도 벌써 4개월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의 경제난국을 맞아 예견하지 못한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81명이라는 인력의 감축에 따른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오로지 군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시대적 흐름 속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 갈려면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

방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에도 자주적 재정기반의 구축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고 정보화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조성의해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두는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한 군정방향이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합심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견제의 역할로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집행부의 조직과 인력운용에 대한 사항과 울주군 공설운동장 조성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정조직운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정부, 기업, 공공기관, 국민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통분담을 슬기롭게 나누는 대열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지방조직 또한 예외 없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1,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81명의 인력감축과 관 주도적 조직에서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1, 2차의 구조조정 이외 수시로 사무의 양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내세우면서 제2의 건국, 실업대책, 원전관련업무 등 일부 부문별 분장사무 및 인력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운용에 있어 특별히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 지원부

서 즉 총무과, 지역경제과 등의 기능은 확대되고,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의 현장부서, 사업부서, 인·허가 대민부서 등에는 늘어나는 사무의 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능위주, 주민위주의 조직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여 왔으며, 군의회에서도 지난 '99년도 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15일간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실·과·소, 읍·면별 분장 사무와 조직의 흐름에 대하여 심층 분석 검토한 결과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99년9월21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6개월여의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소위 군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여 건의한 내용을 일개의 사문서 취급하듯이 하는데 본 의원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의 기본 목표를 보면 새천년,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고 창조적인 지식정부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조직진단 건의문을 수용하여 주민위주의 대민 행정기능을 확대하는 조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출범할 당시 타군에 비해서 68% 수준의 작은 지방정부로 출발

하였습니다.

그후 98 년9월 1단계 구조조정시 정부의 획일적인 감축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다소 결여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직렬별 21명에 대한 정원조정 2단계 구조조정 20명 감축 연말까지 정원 외 인력 41명을 감축해야 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그 시기와 개편의 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소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의회의 행정조직진단건의문을 토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직전반에 걸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질문 : 원전보상업무 담당인력 재조명 방안(서완영 의원)

고리원자력의 증설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2월24일자로 읍·면 인력 11명을 감소시키면서 지역경제과에 2개 담당 11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력의 조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소요인력 뿐만 아니라 인력이 감소되는 분야 또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조직내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력조정당시 대곡댐의 구성인력 등을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무의 량에 대비한 인력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하면 대곡댐

보상팀의 경우는 보상실사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고리원전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보상물건, 보상금사정 등이 이미 완료되어 한전으로부터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업무가 보상금 지급사무로서 2000년3월 현재 토지, 건물, 공작물, 영년수, 영업권, 축산농기구 등 기타보상이 92.7%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영농보상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등의 보상이 50.7%로서 전체기준으로 볼 때 87.2%의 보상금 지급이 진척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IMF 이후 1.2차의 구조조정으로 81명에 대한 인력을 감축함으로 해서 각 실과별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하여 11명이라는 인력이 현재까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도 지난해의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여 인력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불가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불가라는 답변을 하기 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불가로 결정을 한 것인지, 불가결정을 한 사유에 대하여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원전관련 인력을 감축하여 타부서에 보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99년2월24일 개정된 울주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 11명의 인

력으로 동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0년6월 말까지 원전사업의 진행과정을 본 뒤 근본적인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울주군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하여(서완영 의원)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3~4회에 걸쳐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민속경기 등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고, 우리 군의 각종 단체에서도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도 공설운동장이 없어 인근 학교나 서생의 원자력연수원 등 이곳 저곳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군민 및 각종 단체가 필요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 못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민 및 단체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우리의 1/3정도인 58,000여명에 1년 예산이 898억원 정도로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4,480여평에 국제규격 C급인 400M 8트랙을 국비4억, 도비 15억, 군비 7억원 등 총6억원을 들여 93년도에 완공하여, 군민이 한데 어울려 서로 웃고 즐기는 것을 봤을 때 청도군 보다 세수 및 인구가 많은 우리군에 공설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수치에 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도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청도군에서는 순수 군비가 아닌 국·도비 지원을 받아 조성하였는바, 본 군에서도 국·시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우리군에서는 공설운동장이 없어 체육행사나 각종행사시 불편을 겪고 있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비 약 9억으로 올 하반기부터 착공하여 2001년 중에 완공되리라 봅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나마 운동장 사정이 다소 나아지리라 봅니다.

또한 국비나 시비의 보조는 법률상 5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위치가 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아주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역에 종합운동장건립은 대곡댐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으며 이 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적에는 다른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별도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 2000년3월4일울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 고시관련(서우규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변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8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파르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97년도부터 불어닥친 IMF의 시련을 희망의 불씨로 살려 놓는가 했더니, 최근 그 어느 해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강원도 지역의 대형산불, 축산농가의 가슴

을 조이게 하는 구제역 발생, 그리고 새천년의 정치지도자를 뽑는 제16대 총선, 이 모든 것 또한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연이어 발생한 원인미상의 20여건의 산불과 구제역 발생관련 축산 농가의 방역과 농민의 수심, 적은량의 강우에 시한영농 차질을 걱정하고 있는 농민, 이 모든 것 또한 오늘날의 이 지역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여도 자기가 선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울주군의 발전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군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결할 때 이 사회는 한층 더 성숙될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면서 2000년3월4일 울산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최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질책 아닌 원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군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의 주거지역 등을 줄여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생산녹지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군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주민들에게는 쉬쉬하느냐는 등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지역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도시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또한

미래의 삶과 일치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그 본질상 미래의 발전 정책적 의지를 표방하는 하나의 청사진이면서 도시적 형태, 산업, 경제, 사회개발, 재정, 생활환경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그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특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와 강제적 도시계획에 사유재산의 권리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더라도 미래의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을 위해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일정한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확정하는 것은 지역마다 현실에 맞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여건의 변화에 맞는 용도지역 등을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두 번이나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하여 받았으나 담당부서 에서는 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때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도시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금번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결정고시 함에 있어 본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결정 고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

특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 중 생산녹지를 지정함에 있어 두동면의 구미, 이전, 만화리 일대의 1,524,500㎡와 삼동면 조일, 금곡, 보은리 일대 1,070,000㎡에 대하여는 당초 입안공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생산녹지로 결정고시 하였고, 또한 상북면 덕현, 궁근정, 양등리 일대의 경우 당초 입안공고시 857,500㎡임에도 결정고시에는 1,071,150㎡가 증가한 1,928,650㎡를 지정하는 등 입안공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공고와 주민의견청취와 군의회 의견청취 없이 이렇게 결정고시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본 의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원인 무효적 행정 행위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이번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입안공고에서부터 결정고시 될 때까지 울주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전체적으로 울주군 지역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의 입안공고시와 결정고시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개발대상지역인 주거지역이 1,371,840㎡, 상업지역이 35,550㎡, 공업지역이 190,400㎡ 등 총 1,597,79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생산녹지가 5,838,350㎡나 증가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한 울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에 대하여 군에서는 안일한 답변만을 하고 있을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또한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인 잘사는 고장 건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 등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2000년3월4일 울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와 관련하여 첫째 군의회 의견청취 없이 재정비결정고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입안하고, 2000년 3월 결정된 울산도시계획재정비는 울주군이 울주구로서 자치권이 없던 기간인 97년7월 확정된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장이 입안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견만 청취하고 울주군의회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두동면, 삼동면, 상북면 일대의 입안내용과는 달리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동면, 상북면, 삼동면 일원에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입안시에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라 농림부와의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입안된 용도지역대로 결정되지 못하고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입안에서 결정까지 울주군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5월26일 도시계획입안공고문서가 접수된

즉시 군의회와 산하전실과소, 전읍면, 새마을지회 등 관변단체에 울산도시계획입안내용을 알려 공람케 하였습니다. 9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17일동안 지역주민에게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람대장에 서명한 인원수가 413명에 이르고 그 외에도 많은 주민이 공람을 하였습니다.

공람과정에서 열람도면을 울산광역시가 한 부만 우리군에 제공을 함으로써 그 한 부를 가지고 민원실에서는 토지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어야 하고 또 공람하러 온 주민에게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공람하는 주민은 공람하는 주민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에 두 부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논의 끝에 한 부만 겨우 더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수가 보기에는 울산광역시의 처사가 민원을 위한 공람이라기 보다는 요식행위만 거친다는 과거타성식 공람심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서 도면을 계속 추가요청하고 또 농번기인 점을 감안해서 읍,면 방문설명을 강력히 요청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군과 합동으로 전읍,면 순회설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 완료 후에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우리 군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웅촌면 고현리 공업지역의 현실도로를 계획에 반영하고 상북면, 웅촌면에 공원지역을 축수하는 등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넷째 생산녹지가 증가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토지이용의 효율이 높은

상업지역 등으로 입안된 지역이 결정과정에서 생산녹지로 환원됨으로써 기대이익의 감소가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담당부서의 의회 업무보고시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처사에 대하여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마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심의할 때에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입회를 해서 수시로 우리가 보낸 도시계획 두분에게 정부를 제공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출입을 제지당해서 입회를 하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경우 삼아 우리군을 대표하는 두분의 도시계획의원을 통하여 우리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제33회 임시회 (2000. 10. 6)

□ 질문 : 도시계획에 대하여(서우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우규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생존권수호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경청을 하러오신 전용출 대책위원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우리 두동·두서지역은 옛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좋은 살기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곡댐 건설추진으로 일부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군정발전에 헌신하는 군수이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곡댐 설치 반

대를 위해 수많은 반대투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 울산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이라는 큰 명분으로 대곡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00년7월부터 1년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1년10월경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신청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시에는 반드시 관계 단체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지정절차 추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자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권 광역 상수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방안에서 담수이전에 저수지 수면과 수질 영향권에 대하여 댐 유역원 일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기타 댐 내 오염은 입지규제를 가장 확실한 수질보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울산광역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각종 규제를 강행할 것인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 입니까?

네 번째 동보고서 상에는 두동·두서지역에 하수 차집 관로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댐유역주민의 생활권 제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고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 도시지역 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는 경우 상수원보호

구역지정을 아니할 수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2004년 완공목표로 하는 언양하수 종말 처리장을 조기 완공하고 차집관로 등을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역에 우선 착공하여 수질오염원을 차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방안과 하수도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2004년 이후에 지정검토를 울산광역시에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 번째 댐 건설로 인근지역의 수온, 기온의 변화, 안개 서리일수의 증가 등 기상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 발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만이 댐 상류 주민의 소득보장, 생활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보급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섯 번째 대곡댐 상류지역 피해보전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평소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과 이보근 부의장님 그리고 이정우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9월25일 제33회 임시회를 개최한 이후 매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개정(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군정감사 등 여러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늦은 시간까지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환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의회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인 방향설정으로 울주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희생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

니다.

이 21세기의 정보화사회 지식화 사회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질적 양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항상 주어진 법규와 업무를 연찬하고 체질화 될 수 있도록 600여 공무원들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먼저 서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에서 대곡댐건설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추진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추세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의 세계추세는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는 대를 살리기 위해서 소를 짓밟아도 좋다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첨탑이 통했습니다마는 현대에 와서는 소를 위해서 소의 희생에 대해서 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 나라도 그 추세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서우규의원님께서 출신지역인 두동면일대 두서면도 포함됩니다마는 일대 대곡댐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많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줄 것이냐 군수로서 확실한 소신을 밝히라는 질의가 그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우리 군과 협의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물론 이 수렴 과정에는 군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여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언양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한 것은 대곡댐과 사연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는 종말처리장을 설치한 이후에 그렇게 해도 수질에 오염이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고 생각하고 군수도 의회와 협조해 추진 해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들의 댐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많은 규제를 받음은 물론 소득도 감소가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댐에도 수자원보호구역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댐 주변에 규제이상은 규제할 수가 없다 비록 지정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안댐이나 여타 이런 댐을 회야댐을 보더라도 그 주변에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삼아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제 속에서도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금과 시비 군비를 통해서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에 감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우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곡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함은 물론 두동면민에게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 : 울주군 현안문제에 대하여(김철준 의원)

울주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청량면출신 울주군의회 의원 김철준입니다.

본의원이 만 2년전 98년9월 이 자리인 본회의장에서 울주군 공직자 모두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코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도·농복합적인 지리적 여건으로 복잡다양한 민원업무가 과중 되는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본의원 역시 오늘 더 나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현안문제 몇 가지를 군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관련 사항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최대 관건을 자립재정과 도시계획이라 일컬을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를 떠받치는 두 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권은 건전한 재원을 확충·발굴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들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계획관련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도시계획관련 업무는 울주군수나 울주군의회 등이 철저히 배제되

어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은 시·군통합시절 2년6개월, 광역시승격 이후 3년, 즉 5년6개월이상 울주군 도시계획관련 업무상실은 울주군민들에 권리박탈로 보아지며 그간 울산시에서 이루어진 울주군지역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장님으로 행세를 했는지? 아니면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였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군수께서는 헌법재판소 등에 위헌소송을 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관이 있습니다. 지난 99년10월18일 울주군청사 3층에서 울산도시계획입안절차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는 울주군의회이고 후원은 울주군청 및 각 사회단체였는데 대학교수 및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시고 "울산 행정구조 변화와 도시계획입안 절차"라는 대명제를 논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날 토론의 장에 지정토론예정자인 울산시 관계공무원은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10월26일자 지방 일간신문에다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적들이 실상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기고했다.

또, "울산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도시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등 이런 발언은 변명이라기 보다 오히려 토론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울주군과 군민들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토론회장에 나와서 했었어야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신문지상에다 뒷북이나 치는 발언과 또한 "2006년 목표로 한 도시재정비추진 과정에서도 군의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는 울산시 발송 문서인 "도

계 99년5월25일자" 공문에 의하여 울산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입안 공고 공람을 통보하면서 공고문은 군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요하는 내용이었으나, 울주군의 발송 문서인 "도건 99년5월30일자" 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사항을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를 해 줄 것에 대한 사항이 울주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며 또한, 99년7월26일자 울주군 도건 공문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울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입안 사항에 대한 울주군의 의견제출 내용을 무시한 체 99년7월29일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가결승인"을 득한 뒤 2000년4월14일자로 울산시에서 군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당시 어떤 심정이었으며, 이러한 울산시 주장에 대하여 울주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 2급 하천의 사업비 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울산시의 하천정비가 7개 광역시권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71%나 차지하는 울주군소재 지방2급 하천정비가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시의 사업주체 대상인 울주군내 지방 2급 하천정비 사업비의 98년~2000년, 3년간 공사비 내역을 보면 시비가 23억3,000만원이며, 군비가 39억8,000만원이니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만 부득이지, 광역시승격 이후 천문학적인 재정규모 확대로 인한 99년도말 7천7백69억원이 현재 1조 2천3백69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돈 잔치에 야단법석인데 어떻게 사업비 투자에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이에 군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셋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사용개시공고에 따라 울주군의 공고대상 지역 중 배수구역은 언양, 두서, 상북, 삼남이며, 처리구역은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과 기 공고지역은 온산, 서생, 온양, 청량, 범서, 웅촌 등 울주군 전역이 공고대상에 속하나 그 공고지역내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이란 특수여건도 있는데, 공고절차상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른 의견조회가 오면 이에 울주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그 다음 개시공고를 하게 되면 울산시에서는 하수도요금 징수권한을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만 그 공고기준은 하수도법 제21조 1항에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된 마을 안길 하수구, 농업용 용수로 등도 공공 하수도 사용에 대상이 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괜히 행정력낭비 등을 해가며 형평에 맞지 않는 하수도법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그리고 동법 21조 2항에 의하여 "사용료 수익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면 목적세에 해당되어 그 목적에 따라 시설 및 관리에 마땅한 재투자가 요구되는데 울주군에서 징수되는 하수도세가 99년 7억4,000만원, 2000년 6월 현 7억5,000만원인데 반해 2000년 울산시의 울주군에 위생하수관리 개보수예산 재·배정 및 자금교부를 보면 울주군에서 4억9,7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1억7,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업무 중 하수처리장관리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서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울주군에서 담당하도록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는 당연히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일괄 관장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전문가인 군수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권의 개발제한구역은 73년6월 27일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은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웅촌, 범서, 삼동 7개 읍·면에 해당되며 부산권인 서생면을 포함하여 190㎢로 8개읍·면에 이루어져 있는데 울산 중심시가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하여 울산 시내 중심으로 하여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울산시의 무질서한 도시 확장방지와 울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 연간 수억원씩 27년간 주민들의 혈세인 지방세로 27년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내 재산 묶어 놓고 내가 낸 세금으로 재산권 행위에 대한 감시비를 지불하는 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99년9월 정부에서 울산지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건교부의 지침에 의하여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에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 1년간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2001년 4월경 그 결과가 나오는 줄로 압니다만 그 학술 용역기간 중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은 물론이고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울산권 그린벨트를 전면 포함시켜 해제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맑은 공기와 쾌적한

숲을 제공받는 울산시에서는 공공개발사업 및 대형주택사업 등에 그린벨트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기금을 조성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과 병행하여, 그린벨트로 인한 고통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이번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조성에 대한 원인자부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다섯째 택시요금복합할증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요금복합할증제에 대한 취지는 산간·오지 등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손실(공차율)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5개군·구 중 유일하게 울주군만이 택시할증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거리상으로 보면 울산시청을 기점으로 하여 북구의 강동동사무소까지 주행거리는 40㎞, 동구의 동구청까지 주행거리는 20㎞, 울주군 언양읍사무소까지 주행거리는 20㎞, 울주군 서생면사무소까지 주행거리는 26㎞인 경우를 보더라도 거리상으로서는 아무런 지역적 할증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94년12월21일 공포된 법률 제4796호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군간의 적용하던 시계의 할증요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시행에 있어서는 울산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은 울주군내 영업을 획일적으로 군내 운행 50%의 할증제를 인가한 그 자체는 시·군통합 약속을 저버리며 울주군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울산시 행정의 처사라 볼 수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함과 소외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할증제 문제를 울산시 울주군과 여건이 유사한 타군과의 비교를 하여 보면 부산시 기장군은 전혀 할증제가 없으며 대구 달성군은 9개면 중 3개면과 1개면의 일부분이 할증율이 적용되며 특히 시↔군 경계지점을 들어서면서 그 기점으로부터 할증이 되고 있는 현실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등을 군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울산시 농업기술센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은 전국 91개군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유일하게 농촌지도소가 없는 자치군입니다. 울주군은 잘 아시다시피 그 면적은 754.68㎢, 울산광역시 전체의 71.5%이며 서울특별시의 124%나 됩니다. 인구면에서도 현재 17만에 이르며 전국 91개 군 중에서 2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300명에 해당되어 전국 평균의 113명의 약 2.7배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농업, 어업, 공업, 문화관광 등 산업의 다양한 분포는 도시·농촌의 복합기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손길이 절실한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업무를 총괄·관장하는 농촌지도소가 없으므로 울주군의 특산물인 배를 비롯, 원예, 축산농가에 기술보급 등의 연구기능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에 울주군 농촌지도소건립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전 울산군 농촌지도소가 95년4월 굴하택지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토지 10억, 건물 5억6천 등 16억4천여만원을 보상받아, 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타 장소에 95년6월 30일 군비 8억3천, 시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하고 96년5월부터 98년1월까지 총 공사비 32억8천여만원을 들여 완공하였으며 당초 울산군농

촌지도소를 건립추진 중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울산농촌지도소를 건립 중 광역시 승격으로 인하여 시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되었으며 울주군의 농업인과 농업기술의 요람인 농촌지도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시에 구 울산군 농촌지도소 보상금 16억4천만원을 되돌려 받던가, 현 농업기술센터를 울주군에 편입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울산화력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화력복합 # 1, 2기를 94년9월 ~98년6월까지 증설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울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56억7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가 포함되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동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 면적, 인구, 소재지, 여건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울주군에는 10억9천2백8십1만5천원에 해당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배분과정에 있어서 원만한 배분을 위하여 99년8월12일 한전 울산화력발전처 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비롯한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관계 공무원의 참석하에 "자금배분과 집행은 울산시 주관하에 군·구 합의를 거친다. 단, 미 합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배분한다고 결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울산화력발전소 99년10월 13일 문서에 의하면 "울산시 사무를 울산광역시가 승계하였으므로 특별지원사업 시행은 울산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동법률 제10조 1항 4호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울산의 경우 군·구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울산시의 전원개

발에 대한 특별회계는 광역시승격과 동시에 각 군·구의 사무가 위임되었으므로 사무와 그에 따르는 재정은 당연히 군·구에 승계 되어야 한다고 보며, 동법률 제34조(지원금의 관리 등)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동법률 제34조 1항을 위법까지 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2000년 당초예산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울산화력특별지원금 56억7천1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군수께서는 원전특별지원금에는 관심이 있고 화력특별지원금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정황 등을 제쳐 두고 서라도 울산시·군의 통합만 아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당연한 울주군 기금이며 또한, 그 지원금의 성격은 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지역개발비 지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정서를 알고 계신다면 울산시에 대하여 특별지원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공히 같은 지역실정이라 여겨지며 청량면민의 정서를 대신하면서 질의코져 합니다.

청량면은 지리적으로 시계와 인접하여 시청·군청의 거리가 차량으로 15분 이내인데 반해 인근의 남구 석유화학공장과 광역시 단위의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침체와 몰락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게다가 각종 혐오시설처리장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로 광역시 70여 읍·면·동 중 그린벨트가 가장 많으며, 수백만평에 해당하는 신울산변전소의 철탑에다 구치소, 옥동 군부대이전, 버스통합정류장, 율리 일원은 그린벨트인데다 설

상가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 회야댐과 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온산공단 그리고 오천·오대 모기서식처, 제2석유화학공단조성 등 무엇하나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것 없이 울산시의 고아취급이 된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의원 중 한번쯤 청량면에 관심 갖고 길 한뼘 넓혀준 사람 자신 있게 나서 보라고들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광역시승격 이후 예산이 4천600억 늘어났다고 침이 튀도록 떠들어대는데 주민숙원투자사업으로 시비확보를 위해 울주군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도·농복합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120억원은 통합시 약속사항으로 낙후지역 개발비와 소득증대사업에 지원 사용한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어디 어떤 곳에 사용하였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광역시승격으로 인하여 재정규모가 4천600억원이 늘어난 반면 투자사업의 경우 94년과 99년도 대비 경남도비 지원액보다 울산시비가 오히려 18억원이나 감소하였으며, 군세가 비슷한 인천시 강화군과의 비교를 해보면 99년 인천시비가 300억 지원한 반면 울산시비는 81억에 불과한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울주군 관계공무원은 울산시의 시비확보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열악한 시비지원에 대하여 향후 군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울산시·울주군 통합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의거 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정책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군을 묶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만들어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광역시승격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통합과 그 이후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이 도모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시 울산군민이 광역시승격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은 17만 군민을 대신한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모두의 정서가 담긴 당위성 질의이며, 울주군을 아끼고 발전시키는 목적에 일조를 하고자 함이니 늘 울주군과 군민을 걱정하시는 군수께서는 오랜 고위행정가 출신이며 정치력을 겸비한 울주군 첫 민선군수로서 고향발전을 위하여 진솔하고 발전적이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그 기록은 울주군의회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오늘 청량면 출신 김철준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준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도시계획 문제 그리고 지방 2급 하천의 광역시 시비 투자 문제 그리고 공공하수도 개시공고와 그 환수금의 문제 또 GB구역내의 고통도 서러운데 관리부담까지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GB정책 전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울주군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택시요금의 복합할증제 문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속문제와

운영문제 그리고 울산화력주변지원금에 대한 광역시의 모순된 발상과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광역시는 자체가 예산이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통합 당시의 약속과 달리 시비를 과소지원하는 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연 울주군민들이 울산광역시가 되고 또 광역시의 시민이 되고 소급해서 1995년 울산군이 울산시에 통합됨으로써 울주 군민 그 당시의 울산군민이 행복을 더 느꼈느냐 등 철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아울러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 구절구절 담겨있는 내용은 울주 군민의 자존심을 살려야한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울산광역시는 통합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울주군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군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수가 시장하고 만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부 우리 김철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역시와 충돌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은 강온을 겸비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온화하게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미흡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우리 군에 이익을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울주군민의 자존심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철준 의원님께서 질

의하신 내용은 너무도 총괄적이고 너무도 상세하고 너무도 알뜰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 : 주변의 부차적인 피해에 대하여(이형철 의원)

저는 삼남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삼동 인근에 있는 삼동 대암댐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댐으로 인하여 모르고 지낸 사실들이 뒤늦게 총총 발생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과실들이 결실이 안됩니다. 댐에서 발생되는 수온, 안개로 인하여 늦서리가 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두동 두서에서는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장대책이나 이것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때에 시의 상수도사업소와 울주군이 거기에 대한 보장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댐이 아닐 적에는 넘나드는 거리가 100m 되는 것이 댐으로 인해서 3,4km로 되어 불편한 사항은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도로를 대신하는 시설들이 울산광역시에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본의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신문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대곡댐을 만들었을 때 물 1t당에 110원 120원의 원가가 치인다고 합니다. 낙동강에서 오는 물은 먹는 물을 만들었을 때 410원 치인다면 대곡댐의 물은 수도사업소에서는 엄청스러운 덕을 보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모든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 그 물을 먹는 원인자 부담 쪽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두동, 두서에 대한 제반규제라든

지 시설에 대한 보상은 그 물로서도 보상하고 남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울주군수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두동 두서의 댐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보장제도를 법적으로 받아놓는 것이 1, 2년이 아니고 댐의 상류지역에서 사는 영원히 살아야 될 두동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삼남면 출신 이형철 의원께서 직접 자기 관내 댐으로 인한 피해를 체험한 것을 새로이 조성될 대곡댐 주변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연댐, 대안댐, 회야댐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점검해서 그것을 앞으로 대곡댐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가나 첫째 댐이 생기면 그 주변에 기상변화가 옵니다. 안개가 많이 끼고 결실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질러갔던 길이 둘러가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광역시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3) 34회 임시회(2000. 11. 2)

□ 질문 : 과수의 보급 등 가격안정에 대하여(김철준 의원)

군민이 주인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17만군민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준의원입니

다. 본의원은 오늘 정녕 자치제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에 밤낮없이 애쓰시는 군수께 주인인 군민들의 지역 농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과수작목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과수의 보급·기술·유통 등 사무인력에 관한 사항, 전국적인 명성과 지역특산물인 울산배가 생산량에 대한 행정의 아무런 기준이나 대책도 없이 농가소득 작목으로 무작정 장려하고 지원하여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케 하여 급기야 선량한 과수농가를 시름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으로서 농업 행정의 실태에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정부에서 축산자금을 빌려 그에 해당하는 영농을 했습니다만 시작한지 2년만에 소값 폭락으로 오늘날까지 그 빚이 남아 있습니다. 비롯 본인뿐만 아니라 정부장려사업을 해서 한두번쯤 실패 아니한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행정장려 품목을 거꾸로 하면 돈 된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농업 행정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년여전 이웃나라인 일본에 영농견학을 다녀온 농부가 일본에서는 한 농가에서 수박 한 통의 꽃이 피면 그 열매를 제거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또는 출하시기까지 영농지도를 하여 수급에 대한 조절로 가격안정을 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날 배 값의 폭락은 단기성인 시설채소나 주기가 짧은 축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과수는 장기성 시설이며, 수명 또한 20년이 넘습니다. 물론 무작정 선택한 농가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지만 그간 울주군의 농업정책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없다면 그 소관부서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인원이 부족하다면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 울주군내 배 과수면적은 1300ha이며, 총 생산량은 평작인 경우 년 30,000톤이며, 농가로서는 1300호 되어 광역시 전체 배 생산량의 85%나 차지합니다만 나주시의 경우 사무관 1명 포함한 12명의 인력으로 배사업소를 설치 행정지원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울주군은 담당직원이 1/12에도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격안정을 위해 배 수출촉진과 등외품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영농기술의 향상과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산량 증가로 인한 배 값의 폭락으로 인하여 감 값 등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한, 농산물 전체 가격에도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의 길을 트고 있어 금년엔 당초 500톤 계획을 초과하여 미주지역에 650톤과 유럽, 동남아 등 1,000톤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수출 출하시 50% 내외의 등외품이 발생하여 일반시장 에 유통됨으로 인하여 전체 정상과의 가격 하락 요인일 뿐 아니라 농가의 적극적인 수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중 일반계통 출하시에도 20% 내외의 등외품 발생과 손상과 역시 10%내외 발생하여 정상과의 가격하락의 가중요인으로써 악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가격안정과 등외품 등 처리방안으로서의 군수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심부용 부군수)

평소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시는 김철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의 경우에 과수면적이라든가 생산량에 비해서 농산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원천적으로 지난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설치과정에서 타시·도보다 공무원 정원이 절대 다수로 적게 책정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산분야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유통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배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배 재배 면적은 무려 1300ha입니다. 미미합니다마는 전국의 5%를 차지하고 생산량도 연간 2만5천톤 내지 3만톤이나 되어 우리 군민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WTO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 재배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과수면적의 급격한 증가로 과일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산배의 가격은 예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생산의욕을 살리고자 배의 등외품이라든가 부정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배가공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연구원 또 나주배사업소, 원예협동조합, 경북에 있는 능금조합 등에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 결과 1차 가공사업으로는 유통과 소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배가공 공장 현황을 추계해 봤을 때 98년말로 24개소가 있었으나 현재 가동중인 배가공 공장은 5개소에 불과해 이 마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배가공공장 건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농민의 최대 관심사인 울산배의 소비촉진방안과 관련분야 공무원 증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김철준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제36회 임시회(2000. 12. 22)

□ 질문 : 서생지역 원전 및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관하여(이보근 의원)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보다 나은 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의 국난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와 전 공직자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울주 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새로운 각오를 하며 그동안 17만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늘 부족함과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염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원자력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을 서생지역 주민 절대 다수가 원하지 않은 가운데 울주군의 많은 세수확충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의 힘에 밀려 우리 서생지역 주민들은 피가 거꾸로 서는 심정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잘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특별지원금을 산자부에 요청하여 조기 지역발전을 꾀하는 한편 어지럽혀진 민심수습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근간 원전특별지원금이 사전 세밀한 계획하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또한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헛되게 쓰여지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기장군 효암 일원에 건설되는 원전 2기의 특별지원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이 지원금을 서생지역 주민들은 원전부지 제공의 대가로 보상차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서생지역에 쓰여진다면 서생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자금을 용이하게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해야겠는데 충분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원전부지고시에 대한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수님께서 우리군에 부지(18만평) 추가 편입 및 원전 유치신청을 하고, 이어 1998년11월18일 추가편입부지 예정구역지정 신청을 한전에서 산자부로 하여 2000.9.6.자로 추가편입부지 예정구역지정고시(산자부고시 2000-88호)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울주군 지역에 먼저 원전건설을 희망하던 군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전추가부지만 내놓은 상태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원전추가건설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선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건설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위험시설이라 판단되어 만에 하나 원전가동시 사고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인구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해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억울하게 살아오다 현재 당초 지정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또다시 원전추가건설을 위해 부지가 확장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런지 그리고 본 면이 우선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발표가 되었으면 타지역보다 우선 해제가 되어야 함이 지당한데 왜 조기해제는 되지 않는지 또 해제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유비축기지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석유비축기지건설 장소가 원자력법상 원전과의 거리규정이 검토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울주 서생면 화정 일원에 한국석유공사가 원유정제능력과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지속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서생면 화정리 일원이 석유비축기지로 적지라고 판명되었을 때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이며 발표하신 서생면 화정리 일원에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하시겠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겠는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첫째 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

전소가 기장군 효암지역에 먼저 건설될 경우 한전자료에 의하면 특별지원금은 약700억정도이나 우리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230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우리지역 서생면 신리일원 25만6,000평에 차세대 원전 2기가 건립된다면 우리군의 원전특별지원금은 약800억원이상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기계획된 원전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입니다.

둘째 원전부지 추가고시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2001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12월13일 송년 군정보고회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 군수의 소신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원전을 건설한다면 우리군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원전을 건립하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족할만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군수의 의지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원전 추가건설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선 해제지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법 절차상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광역시 도시개발계획이 내년 4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시행될 것이나 서생지역은 전면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G.B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넷째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비축기

지 건설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암반 일부에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무어라 예단할 수 없어 그 이상 논의는 부적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각종 축제행사에 관련하여(김석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군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2000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구조조정 등으로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급박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과연 무엇이 우리 울주군과 군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군은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늦게 자치 군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마는 면적, 인구, 예산의 규모 등 군세를 비교해 보면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소리를 접하면서 삶의 질적인 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행정이 표면적인 겉 핥기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울주군에서는 군민들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거의 다달이 축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 간절곶 해맞이 축제, 2월에 서생면 달맞이행사, 4월에 배꽃축제와 온산읍 한마음공단 벚꽃축제 5월에 언양 불고기축제와 상북면 이이벌 대동제, 8월에 서생 진하바다축제 9월에 군민의 날 행사, 10월에 두동 봉계 전통한우불고기축제와 봉계 황우쌀축제, 11월에 언양읍성 석축축성 500주년 기념행사와 외고산 옹기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행사 진행을 지켜보면 우리군 행사가 특별한 계획 없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며 전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행사준비를 위해 매달려야 했습니다. 8월26일 석남사 일원에서 개최키로 했다가 날짜관계로 치르지 못했던 반딧불이 축제의 경우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행사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반딧불이축제'란 용어는 무주군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한 상태이기에 이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경우 무주의 반딧불이축제의 이미지와 독창성의 권익에 대한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11월11일 개최된 언양읍성 축제는 석축축성 500주년을 기념하여 단 한번 개최되는 행사이나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원과 자체추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행사 당일날 행사장 준비를 하여 축등 하나 없이 언양읍민과 특히 성 주변 사람들조차 행사개최를 모른 체 진행되어 문화원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2월20일 간절곶에서 시행된 사생대회와 백일장 대회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섣달에 바람으로 유명한 간절곶에서 진행하여 어린 학생들을 추위에 떨게 하였습

니다.

한겨울의 바닷가 추위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기와 여건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소모성행사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축제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거행된 축제행사는 지역별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축제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간절곶은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그 의미가 깊음에도 시비 보조를 받아가며 추진하고 있는 북구, 동구의 정자나 주전해변 해맞이 행사와 함께 이루어져 그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절곶 해맞이 축제는 단순히 군민의 축제라기보다는 울산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울산의 대표적인 해맞이축제가 되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1월1일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인만큼 행사내용을 경건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방만하게 개최되는 축제행사를 4월15일 군민의 날 행사와 통합하여 울주군민 전체의 종합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현재 울주문화원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축제운영을 문화원에 민간이전하고도 사실상 집행부의 공무원이 동원되어 행사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원의 단순한 행사로 추진되었다고 여겨지는바, 축제의 무리한 민간이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마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인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첫째 간절곶에 해맞이축제를 울산의 대표적인 해맞이축제로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2000년은 광역시가, 2001년에는 우리군 행사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간절곶 해맞이는 전국 어느 곳보다 훌륭한 관광명소임은 틀림없으나 알려진 기간이 짧고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빈약하여 관광객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실정인바, 기 작성된 간절곶 개발계획을 기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축제행사를 산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4월15일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시켜 대대적인 단일 종합 문화 축제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축제행사를 살펴보면 언양·봉계 불고기축제. 옹기축제, 언양읍성 석축 500주년 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통합의 장단점과 분산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예컨데 군민의 날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행사의 성질 면이나 내용적인 면은 물론 순수한 축제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불고기축제와 같이 상업적 축제는 그 특색에 맞추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울주문화원의 업무수행 기능상 너무 많은 축제를 위탁함에 따라 행

사내용이 다소 부실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한마당축제행사는 관이 주도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울주문화원의 설립시기가 일천하고 인력이나 기술축적이 미흡하여 다소 결여된 부분은 없지 않으나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갖추어진다면 점차 개선되고 발전되어 우리의 기대치에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5일 제1차 본회의시 서완영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산근린체육공원 명칭에 대하여는 1994년10월경부터 가칭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0년7월 온산근린체육공원 사업계획설명회시 온산지역 일부 주민의 발의를 통하여 울주남부운동장으로 호칭하는 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나 지난 11월28일 추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을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온산근린체육공원 기공식을 거행하게 된 과정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중 6,000여만원의 자비 부담을 한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거행한 것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부득이 했던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산근린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6월까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 7월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희망찬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2000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간의 군정 성과에 대하여는 17만 군민과 함께 그 보람도 느낍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21세기 대망의 2001년을 맞는 새해에도 군수와 600여 공무원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 잘사는 내고장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제37회 임시회(2001. 2. 26)

□ 질문 : 실·국설치와공무원정원의증원및읍과면의차이점, 허가과 신설에 대하여(김철준 의원)

오늘 17만 군민들의 전당인 군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공직자 모두의 의지는 잘사는 내고장, 풍요로운 울주건설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분담, 상호보완 등 역시 동반자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원활한 행정업무의 현실성과 연속성을 상기하기 위하여 군수께 질의코저 합니다.

첫째, 울주군의 실·국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광역시의 구에는 인구가 15만 미만이라도 국·실을 둘 수 있으나 군은 15만 이상이라도 실·국제를 둘 수 없는 법리적, 현실적 모순으로 인하여 울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행정기구가 열악한 자치단체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주군의 인구나 면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접도시인 부산 양산, 경주권의 영향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다 이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구역확

대로 인하여 이웃 타 구에 비해 10배 이상인 39만5,0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럴진대 관광개발, 지역개발, 국·시책사업 및 인구를 급증과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의 중심축인 국제도가 없어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없는 내적인 요인과 광역시 타 구와의 업무협의와, 특히 광역시와의 업무연계성, 인력고려 등의 정책협의시 감히 진작할 수 없는 외적인 업무고충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도·농복합형 광역시 설치부터 발생되어 계속되어 왔는데 그간 울주군의 초대민선군수로서 불합리한 여건개선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외 몇 가지 현실을 보더라도 울주군에 실·국제 설치가 필요로 여겨지는데 군수께서는 국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의회에서 '97년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15일간 군 본청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행정조직진단에 관한 특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 중 전국 타 기초단체와의 상호 비교시 울주군은 전국 91개 군 중에서 금년 3월19일자로 시로 승격되는 화성군을 제외하면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제1위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68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로서 1위이나 공무원 정원은 91개 군 가운데 50번째로 현행 중앙정부의 정원 정책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의회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더구나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68%

수준에서 출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방침과 지방 구조조정 기조에 맞추어 '98년9월 1단계 61명 감축, '99년 2단계 20명이나 감축되어 오늘의 울주군 공무원정원에 대한 현실이나 한정된 인력으로 공황 없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일컬을 수 있는 울주군의 복합다양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정원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울주군수께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국책사업인 원전건설의 영향으로 인력손실을 본다면 군수께서는 결단을 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설치 목적과 면과의 차이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는 3월1일 읍으로 승격되는 온양면과 범서면의 읍승격과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울주군은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제주도 북제주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4개 읍을 갖추어 울주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기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행정의 서비스와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걸맞는 행정의 수혜를 누려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읍승격과 함께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신설 없이 행정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작은 정부 방침과 직제동결 등 지방 구조조정 기조하에서 읍과 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읍설치 기준에 의하면 당해 지역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기반을 일정규모 갖춘 곳으로 간주되어 밭기반정비

시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선정지역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또 자경 농민들의 농지 및 농업목적의 건축물 등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50%의 감면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첫 번째, 우리 군은 인구가 16만명이 넘고 면적 또한 광범위하며 사업의 계수적 표현인 예산 또한 타 구에 비하여 배 이상 크면서도 국 제도가 없어 군수, 부군수에게 업무관장 범위가 넓어지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되어서 행자부에 직접 방문도 하고 지난해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필요성과 당위성을 의회와 협조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행정자치부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설치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증액, 행정업무의 중층제 등 단점도 있으므로 국 설치가 현실화 될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까지는 560명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15명을 더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전·대곡댐지원사업 등 국책사업과 도로, 환경문제 등 당면현안사항의 해결에 따른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관련 한시정원과 2개 읍 승격에 따른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이후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합리적인 기준의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일등군에 걸

맞는 정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업무량에 비하여 그래도 무난히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변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기존 면에 비해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민복지시설, 도로망정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도시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경농민에 대한 권리변동시 세제상의 감세 혜택이 없어지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면과 범서면이 우선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정부의 3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공무원증원 문제와 기구는 정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이 반영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기구와 인력증원을 위하여 중앙관서와 최선의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화성군이 오는 3월19일 시로 승격되면 우리 군이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군이 되므로 일등군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철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45회 임시회(2001. 12. 22)

□ 질문 : TV난시청지역주민불편해소방안 및 울주군의 명칭변경에 대하여(이동철 의원)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17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밤낮으로 걱정하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면한 군정현안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지역의 TV 난시청 해소방안입니다. 우리 군 지역 TV 난시청 지역으로 수신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총 452개 마을 중 146개 마을에 1만1,433세대의 주민들이 TV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각종 문화·교육 등 지역정보가 늦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과학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특히 온양, 서생, 웅촌, 삼동 등 일부 오지 마을은 울산지역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부산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바, 경상남도에서는 경남권 지역방송이 나오지 않는 시·군 난시청 지역을 매년 조사하여 공청 케이블 설치와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난시청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김해시와 산청군은 지난 '96년부터 자체 시·군비를 확보하여 마을 앞까지 유선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울산권 방송이 나오지 않는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시비지원 요청과 군비를 확보하여 유선케이블이나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울주군에서 울산군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2월13일 군수님께서는 울주군이 해외 인지도가 낮아 농산물 수출 홍보에 어려움이 많아 울주군을 울산군으로의 개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명칭 변경사를 보면, 부족국가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는 굴아화촌으로 사용됐으며 고려시대에는 학성도호부와 울주로 최초지정 되었고, 1413년 조선시대부터 1962년까지 울산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다가,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울주군에서 울산군으로 명칭이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95년 도·농간 통합으로 인해 울주구로 사용되어 오다가, '97년 광역시승격과 아울러 지금 울주군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의 명칭 변경사를 살펴보면 울주에서 울산군으로 또다시 울산군에서 울주군으로, 울주군에서 울주구로, 울주구에서 울주군으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군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군의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우리 17만 군민과 지역에 어떠한 영향과 이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존경하는 변양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 이후 2002년도 예산안, 2001년도 추경예산안 등 군민 복리증진

을 위한 의안들을 늦은 밤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동철의원님께서 우리 군 지역 TV난시청 해소방안과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보고싶은 TV 채널을 옳게 보지 못하는 것은 그믐밤에 전기불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KBS방송국에 그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S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위성방송 실시와 디지털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인 정보는 시청 가능하나 지역 정보의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2002년도 난시청지역을 정확히 조사 광역시와 군 예산을 지원하여 유선방송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군, 울주군 하는 명칭이 수차 반복되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아 울산군이라 호칭한 기간이 울주군이라 호칭한 기간보다 훨씬 길고 국내외적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나 지역이나 판매되는 물건이나 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또 판매를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고유의 특색과 부르기 쉬운 이름, 지명, 상표가 중요하므로 부르기 쉽고 잘 알려진 울산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1995년 도·농통합시 울주군이 울산군에 병합될 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좀더 정신을 차렸다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그 명칭 하나는 가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러한 실정만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다시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명칭 변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18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군의회와 협조 울산군의 명칭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개발제한구역조정과관련울주군의 입장에 대하여(김철준 의원)

오늘 본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여러 가지 보람과 아쉬움의 여운이 있지만 주민들이 30년간 한 맺힌 그린벨트 원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는데 더욱 감회가 있으며 이를 만들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린벨트가 무엇입니까?

30년 전 농촌마을과 들녘을 꽁꽁 묶어 낫 들고 기역자도 모르는 순박한 촌사람의 모가지를 죄고, 대를 이어 농민의 씨를 말린다하여 이후 살인벨트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또는 젊은 농군이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도 그 부모의 집을 승계 받지 못한 차남 등 자식은 창고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축사에서 짐승과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기에 정든 고향과 농업이라는 직업의 선택여지도 없었기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그린벨트 제도가 주민들의 제소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를 물꼬로 하여 현 정부의 대선공략 이후 국정100대과제로 산정되어 30년 묵은 그린벨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이며 그간 흘린 주민들의 피와 눈물의 대가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번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 조정지역 선정은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에 기가 막히듯 꼭 맞으니 그린벨트 내의 송아지도 울다 못해 웃을 희한한 일들이 현재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으니 시대적인 착오를 현실로 되돌리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번 울산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전단계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대상 면적 중 울주군에 불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5,165㎢ 중 울산권은 318㎢이나 금번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면적을 보면 울산권은 26㎢로 전국 337㎢의 8.3%입니다.

제주 및 전국 중소도시 전면해제와 광역권인 광주권은 8.6% 대전권은 9% 마산, 창원, 진주권은 9.7%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조정가능 면적도 불합리하게 적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녕 통탄할 일은 울산권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318㎢ 중 울주군이 그린벨트 면적은 190㎢로 울산권 전체의 60%를 점유하나 금번 조정대상지에는 울산 전체 3만1,720㎢ 중 울주군은 1만1,872㎢로 37.5%에 불과한 지역만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어 울산권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이라는 현실도 감안하지 않은 채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입장이나 울주군의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될 때까지 주민자치시대의 민선군수로서 그간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의 조정대상지역 중 취락지구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전체의 중규모 취락지구는 96개가 있고 그 중 조정가능의 취락이 31개 취락입니다. 이 31개 취락 중 울주군이 21개 취락으로 전체68%이나 실제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면적은 0.874㎢로 상대적으로 적어 부당한 배정비율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도시인접보다 농어촌의 생활기반 특성상 저밀도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번의 취락지역 적용범위는 주민들을 기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론이 있는데 울주군수께서는 군수인 반면 국내 최고 학부의 지역계획을 전공한 석사출신으로 도시계획전문가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일상생활을 제약받아 그 수준이 낙후되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변지역을 조정가능지역을 우선설정 즉, 취락지구 지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 다음은 4,5등급 기준적용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울주군은 '98년8월24일 울산시 경유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울주군의 의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내용과 금번 조정 설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의 중심인 청량 문수산 일원이 소외된 점과 특히 범서지역은 선바위 주변을 수괴지역이라하여 읍소재지를 비롯한 10개의 취락지역

이 집단적으로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중구의 다운목장을 테크노파크 및 신 산업연구단지로, 북구의 임대아파트 사업 등을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강동해안 일원에 운동시설지구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주군이 소외됨으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정 및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며 금번 조정결정사항을 울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무효화 선언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벨트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지난번 전면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에 포함되지 않고 중소도시로 남아있었다면 지난번 중소도시 전면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울주군은 당시 그린벨트 지정은 울산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의 원칙부담에 어긋남으로 연간 관리비 4,5억원을 지난 30년간 계산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김철준의원께서 군수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는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omeone better, anyone wo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어떤 계획에 의

해서 특별히 이익을 보는 측이 있고 특별히 손해를 보는 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가장 금기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에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치는 이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의 철학을 배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5% 이상이 되어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일련의 불이익을 30여년간 받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10월31일 광역시의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공람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취락지구 지정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호수 기준, 호수밀도를 재조정하여 현실에 적합한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기준을 도시에 잣대를 대지 말고 군은 군대로의 별도의 잣대로 계측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월말 광역시에서 서생면의 우선 해제 시기 단축과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시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제도개선, 추진상황, 읍·면 순회 공청회 개최를 하는 등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집단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생지역은 지역주민과 우리군의 꾸준한 노력과 의회의 협조로 금년 말 해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광역시장의 결정사항이고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우 안타까우며, 의원님과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하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승인 신청 시에는 우리 군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들의 생활터전과 그 주변지역이 조정가능지역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로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평 내 20호 이상이 분포된 취락이거나 3만평 내 환경영향평가결과 4,5등급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우리 군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주택이 드문드문 분포해 있는 곳은 사실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같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준을 10호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삼고 그 후 보존가치 여부를 따지는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개선안 의견은 그 당시 울주군수의 입장은 개발제한지역 전면해제하고 도시계획으로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하는데 자의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존녹지로 지정관리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청량과 범서지역 제외에 대한 사항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지역 현안사업이라 하여 청량역 주변 발전사업에 1,088㎢을 배정하고 있으나 청량의 오대오천 신산업단지 사업, 범서의 행정타운건립 등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특히 범서는 주변에 취사장 때문에 여러 취락을 제외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곡댐이 완성되면 그 자체

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은 광역시가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계획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 지역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우리군의 고유사무는 아니므로 그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직 그러한 것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농민소득보존지원대책에대하여(서우규 의원)

오늘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함과 동시에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춰 나가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국비 11억6,6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추가로 군비 4억1,500만원을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 없이 1ha 이하는 ㎡당 9원, 2ha 이하는 ㎡당 7원 기준으로 농가당 최소 1만원 최고 14만원까지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 가격지지정책을 위한 농가소득지지에는 한계가 있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적정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만 직접지불제도란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에 의한 실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문제, 향후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실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경작자와 소유자간에 알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추곡수매관련지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의 향후 계속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추곡수매가 보다 농협 자체 매입 및 시중 쌀값 시세의 하락으로 농협 자체 수매 및 시가 매입가격에 대하여 40㎏ 한가마당 건조비, 포대비, 운반비 명목으로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4억 8,800만원을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쌀 농사의 기반을 다지는 시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도와 함께 앞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향후 계속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박진구 군수)

다음은 서우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의원님께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도와 추곡수매관련 지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직불제란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국가의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소득을 지원하는 WTO 허용정책으로 농가소득안정

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진 각국도 가격지지는 축소하고 WTO 협정이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논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 및 대상자는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서 실제 농사짓는 경작자가 지급대상자입니다. 경작자와 소유자간의 지급대상자 선정에 따른 알력은 시행 지침상 실 경작자 지급대상 원칙이므로 마을대표 확인절차나 자격증명 등 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정부지원금액이 금년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시고 또 승인을 해 주신 2001년도 결산추경에서 결정해 주신 논농업직불제 예산은 바로 금년에 금액과 내년의 금액에 그 차액에 대한 일부 보전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의원님들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비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군재정사정 또 농촌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논농업직불제 금액은 앞으로 추곡수매기에 하지 말고 농촌에 자금상 4월, 5월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방비로 보전하는 경우에는 그때 지불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정말 지금까지 4년간 군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Ⅱ. 4분 자유발언

1. 서완영의원 - 제36회 2차 정례회('00. 12. 5)

먼저 4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2001년도 당초예산 및 2000년도 결산추경심의의 기능을 가진 제2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집행부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발언대에 나왔음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몇 마디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제 경상일보 신문을 보는 순간 과연 이렇게 꼭 해야만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또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나 자신부터 얻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기공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대수롭게 넘어가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온산읍 지역주민들을 기준으로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이 하루아침에 울주남부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변하여 그 지역의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 제35회 임시회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 상정되어 상당한 논란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사업

계획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을 제외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 기공식 행사가 이루어 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란 기관은 어떠한 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예산의 심의·확정 등에 관한 의결권한이 법상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인 의회에서 현시점에서는 안된다는 사업을 군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강행을 하셨는데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일지라도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이를 무시하면서 시행을 해도 법령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절차와 『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에 들어 가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의 절차 이행시 주민의견청취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주남부운동장 조성사업은 물론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또한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의 공유재산취득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상의 중요재산취득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기공식이란 행사계획을 하

게 되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공식이란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업자선정이 된 후 공사를 착공할 때 하는 의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 집행의 절차를 따지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어기는 결과라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즉, 군수는 법적인 절차행위 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시행한 사업을 의회는 사후에 법적인 요식절차가 필요하면 기꺼이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례회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집행부의 각종시책추진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령의 절차를 거치도록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무엇하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합니까?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의원과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밤늦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지역의 금융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의 경우를 보면서 법령 등이 무시되고 임의로 계획, 집행이 계속된다면 의회의 존립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부 록

제2대 의원선거결과

의원논단

- 의장 변양섭
- 의원 이몽원
- 의원 김지호
- 의원 김진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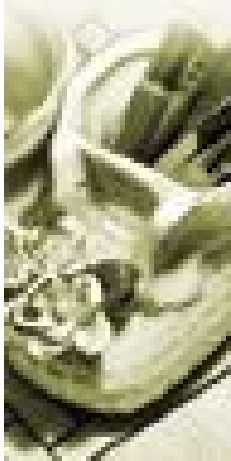

제2대 의원선거 결과

배 경

가. 지방선거의 부활과 현재

◉ 제5공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화되, 그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로 함.

◉ 1985. 1. 9 지방자치제 일부 지역에서 1987년에 실시할 것을 발표 (그러나 미루어짐)

◉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원을 1992년 6월 3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1991. 3. 26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실시 (260개 기초자치단체 4304명 의원 선출)

◉ 1991. 6. 20 시·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2개 광역자치단체 866명 의원 선출) 단체장 선거는 계속 미루어짐

◉ 1995. 6. 27 제1차 동시 지방선거 실시 (임기 3년)

◉ 1998. 6. 4 제2차 동시 지방선거 실시 (임기 4년)

나. 선거권자 및 출마자의 기본 자격

◉ 선거권자의 자격 :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선거권자의 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후보자별 득표현황 ('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득표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4		5		6		7		8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계		659,965	380,814	369,493	159,482	43.2	24,522	6.6	20,965	5.7	164,542									44.5
중구	소계	156,208	85,173	82,737	46,266	55.9	6,732	8.2			29,739									35.9
	제1선거구	47,551	25,616	24,791	김철욱						도충록									
					14,330	57.8					10,461	42.2								
	제2선거구	53,781	30,070	29,331	조용수		정학성				천병태									
					16,091	54.9	2,855	9.7			10,385	35.4								
	제3선거구	54,876	29,487	28,615	김두열		황세영				최현배									
					15,845	55.4	3,877	13.5			8,893	31.1								
남구	소계	207,568	111,467	108,856	54,230	49.8	10,631	9.8	13,178	12.1	30,817									28.3
	제1선거구	62,655	31,574	30,839	이수만		정필영		최상일											
					21,070	68.4	4,698	15.2	5,071	16.4										
	제2선거구	51,569	28,627	28,092	김현욱		황덕순		이원선		김성득		박순환		신진규					
					9,162	32.6	2,907	10.3	1,070	3.8	5,296	18.9	5,457	19.4	4,200	15.0				
	제3선거구	47,025	25,002	24,382	이종열		박필수		이종해		박승영									
					12,644	51.9	3,026	12.4	2,323	9.5	6,389	26.2								
	제4선거구	46,919	26,244	25,543	신규화				조현수		박영훈		정병수							
					11,364	44.5			4,714	18.4	4,678	18.3	4,787	18.8						
동구	소계	118,910	76,668	74,546	10,921	14.7					63,625									85.3
	제1선거구	44,230	25,666	24,622	천재근						송시홍									
					9,457	38.4					15,165	61.6								
	제2선거구	35,721	23,280	22,741							김병수		윤인국		장세동					
											8,898	39.1	9,722	42.8	4,121	18.1				
	제3선거구	38,959	27,712	27,183	박원래						송병렬		이수례		장만복		송기룡		조규례	
					1,464	5.4					4,636	17.1	2,306	10.6	7,226	26.6	1,696	6.2	9,223	33.9
북구	소계	73,340	46,781	45,427	19,115	42.1					26,312									57.9
	제1선거구	35,455	21,997	21,330	정만기						강석구									
					9,046	42.4					12,284	57.6								
	제2선거구	37,885	24,784	24,097	이병우						이상열									
					10,069	41.8					14,028	58.2								
울주군	소계	103,939	59,905	57,925	28,960	50.0	7,159	12.4	7,767	13.4	14,049									24.2
	제1선거구	49,292	30,570	29,606	최현철		구홍교		최종언		박병구		이동석		한세동					
					9,560	32.3	2,438	8.2	3,557	12.0	6,578	22.2	3,390	11.5	4,081	13.8				
	제2선거구	54,647	29,335	28,319	김정수		조경우		정상원											
					19,388	68.5	4,721	16.6	4,210	14.9										
비례대표					오대웅															
					김춘생															
							장명자													

나. 울주군의회의원선거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득표수							
			계	가		나		다		라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온산읍	15,652	9,069	8,874	한성룡		이몽원					
				5,114	57.6	3,760	42.4				
언양읍			편양섭								
			무투표당선								
서생면	5,827	4,233	4,124	이용두		이보근		김소득			
				1,360	33.0	1,874	45.4	890	21.6		
온양면	12,454	8,174	7,995	이동철		최억해					
				5,262	65.9	2,733	34.1				
청량면	7,723	5,192	5,079	정정호		김철준		임규섭		이반희	
				1,430	28.2	1,949	38.3	922	18.2	778	15.3
웅촌면			김석탈								
			무투표당선								
범서면			이정우								
			무투표당선								
두동면			서우규								
			무투표당선								
두서면	3,446	2,591	2,498	김지찬		서원영					
				1,113	44.6	1,385	55.4				
상북면			정인조								
			무투표당선								
삼남면	9,766	4,645	4,517	이형철		박명순					
				2,349	52.0	2,168	48.0				
삼동면	1,514	1,297	1,273	우영구		신종찬		노병걸			
				496	38.9	405	31.8	372	29.3		

의 원 논 단

의장 변양섭

주민을 위한 배움,부끄러워하지 말자

2002. 6. 13 역사의 한 장이 열린 날이다.
내 지역의 열기, 내 지역의 바라는 마음, 내 지역의 축제, 화합의장에서 우리는 탄생하면서 2002. 7. 8일 제3대 울주군의회가 역사적인 출발을 했다.
나 자신은 4선 의원으로서 2대때는 부의장의 직함과 의장의 직함으로 군 의회를 이끌어 왔다.
큰 대과 없이 내 지역(언양읍)의 근원적인 힘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위치에서 노력해왔다.

제3대를 맞은 우리 군 의회에서 또다시 나에게는 한 짐의 무거움 짐을 나에게 주었다.
전반기의 의장이라는 군민의 대표에 동료의원들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이는 곧 전체 주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나기로 한번 더 각오를 다짐하면서, 나는 지난 의회 때에도 그랬듯이 이번 3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부끄러움 없이 묻고 배우는 것이 바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즉 내가 모르면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가?
무슨 뜻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을 읽지 못하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라는 직분을 소홀히 함은 문론이고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서 구성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우리의원 스스로가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어떠한가,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기능, 특히 집행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지위와 권한의 제도아래 진정 주민의 봉사자이며, 대변자로서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의 목적 달성에 초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모든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자면 내가 먼저 알아야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주변에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누구나 다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학생들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이 화면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질문내용에 대한 여·야 의원님들 간에 의견 충돌로 서로간 좋지 못한 언행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학생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현장에서 보고있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주민의 대표자로서 몸과 마음은 물론이지만 직접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이 되는 것은 바로 언행이요 이러한 언행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인식범위 내에서 본인도 모르게 표출이 되어 본의 아니게 주민들로부터 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등의 원성을 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알고있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역시 또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위기의 탈피는 현실에 대한 의식의 범위를 내 자신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제도의 범위 내에서 내 자신에게, 나아가서 동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그 한 구성원으로서 배움의 상대자가 누구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심내세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먼저 배움을 요청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바른 방향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이는 곧 나의 숙원이, 내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이, 나아가서 군 지역발전의 숙원이 해결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의 원 논 단

의원 이몽원

40대의 역경

앞을 보고 바쁘게 살아온 우리,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나 자신과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한번 생각케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어렵게 성장해온 그때 우리를 생각해 본다.(친구들과 함께...)

40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동무들과 학교 가는 길엔 아직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강가에서는 민물새우와 송사리떼가 검정고무신으로 퍼올려 주기를 유혹하고, 학교 급식빵을 얻어 가는 고아원 패거리들이 가장 싸움 잘하는 이유를 몰랐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는 이름없는 세대였다.
생일때나 되어야 도시락에 계란 하나 묻어서 몰래 숨어서 먹고, 소풍 가던날 보자기 속 사과 두 알, 계란 세 개, 사탕 한 봉지중 사탕 반 봉지는 집에서 기다리는 동생들을 위해 꼭 남겨 와야 하는 걸 이미 알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없는 세대였다.

일본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과 6.25 겪은 어른들이 너희처럼 행복한 세대가 없다고 저녁 밥상 머리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 할때 마다 일찍 태어나 그 시절을 같이 보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과 행복 사이에서 말없이 고구마와 물을 먹고 누런 공책에 "바둑아 이리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를 침묻힌 몽당 연필로 쓰다가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잠들 때에도 우리는 역시 이름없는 세대였다.

검은 교복에 빡빡 민머리, 6년간을 지옥문보다 무서운 교문에서 매일 규율 부원에게 맞는 친구들을 보며 나의 다행스런 하루를 스스로 대견해 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손바닥을 담임선생

님께 맡기고 걸상을 들고 벌서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 하였으며, 이름없는 호떡집, 찐빵집에서 여학생과 학생 과외지도 선생님에게 잡혀 정학을 당하거나 교무실에서나 화장실에서 벌청소를 할때면 연애박사란 글을 등에 달고 지나가던 선생님들에게 머리를 한대씩 쥐어 박힐 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용담이 되던 그때도, 우리는 이름없는 세대였다.

4.19세대의 변절이니 유정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자동거수기니 애국자인 말들이 분분하고 뇌물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간첩들이 잡히던 시절에도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디론가 잡혀갔다 와서 고문으로 병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술집에 모여 숨을 죽이며 들었으며, 책 한권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선배님의 아픔을 소리 죽여 이야기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이름없는 세대였다.

빛깔좋은 유신군대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복날 개보다 더 맞고 탈영을 꿈꾸다가도 부모님 얼굴 떠올리며 참고 80년 그 어두운 시절 데모진압에 이리저리 내몰리며 나뉘어 진압군이자 피해자였던 그때에도 우리는 이름없는 세대였으며, 복학한 책상위를 후배와 같이 까맣게 컨닝 페이퍼로 더 나은 학점을 위해 도배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 때에도 우리는 이름없는 세대였다.

일제세대, 육이오세대, 4.19세대, 5.18세대, 모래시대세대.
자기주장이 강하던 신세대 등 모두들 이름을 가졌던 시대에도 가끔씩 미국에서 건너온 베이비 붐세대 혹은 6.29 넥타이부대라 잠시 불렸던 시대에도 우리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가지지 못하던 붙임의 세대였다.
선배세대들이 꼭 말아쥔 보따리에서 구걸하듯 모아서 겨우 일을 배우고, 혹시 꾸지람 한마디에 다른 회사로 갈까
후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요즘노래 부르는 늙은세대.

아직도 젊다는 이유로 후배 세대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급료인상 처우개선을 맡아서 주장하는 세대.
단지,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조직의 간부란 이유로 조직을 위해 조직을 떠나야 하는 세대.
노조원 신분이 아니어서 젊은 노조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드러누운 정문을 피해 쪽문으로 회사를 떠나는 세대.
IMF에 제일 먼저 수몰되는 세대.

미혹의 세대.
오래 전부터 품어논 불길한 예감처럼 맥없이 무너지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우리만의 이름으로 부른다.
선배들처럼 힘있고 멋지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날 자리가 불안해져 돌아보니,

늙은 부모님은 모셔야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다른길은 잘보이지 않고 벌어 놓은 것은 한겨울 지내기도 빠듯한, 은퇴 하기에는 너무 젊고 도전 하기에는 늙은 사람들.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말잘듣고, 암시만 주면 짐을 꾸리는 세대.

주산의 마지막세대.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아이들을 독재자로 모시는 첫 세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처와 부모 사이에서 방황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모 하는걸 미안해 하는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퇴출세대라 부른다.

50대는 이미 건넜고 30대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길 기다리는 이시대의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바둑돌의 사석이 되지 않기 위해 기를 쓰다가 늦은밤 팔지 못해 애태우는 어느 부부의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았다가, 아무도 먹지 않을때 밤늦은 책상 머리에서 혼자 우물 거리며 먹는 우리를 모두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할때 이름없던 세대였다가 이제야 당당히 그들만의 이름을 가진 기막힌세대. 40대!!!

속성장의 막차를 올라 탔다가 이름 모르는 간이역에 버려진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퇴출 세대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의 진입을 위한 몸부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다

의 원 논 단

의원 김지호

명산이 있는곳, 우리고장 상북면

우리고장 상북면은 울주군의 최서단에 위치하면서 경북의 경주시, 경남의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등과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울주군에서 가장 광활한 면적과 1000m급의 거대한 산악군에 둘러쌓여있는 영남알프스의 병풍속에 고요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다.

우리상북면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은 역사의 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곳으로 소개를 하면, 신라시대 호국의 염원으로 세운 우리나라의 3대 비구니 수도 도량이 있는곳, 영남알프스 최고기둥의 위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남산, 석면산, 실혜산, 천화산, 가지산등의 여러가지 변형된 역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곳,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위하여 지리·생태학 관련교수 및 산악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100대명산에 선정된 가지산, 신불산, 재약산등이 있는곳

울산광역시의 유일한 온천의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곳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369호 석남사부도, 보물 제370호 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 사적지 제129호 천황산요지군)와 시 지정문화재(석남사3층석탑, 간월사지, 만정헌, 석남사수조, 언양천전리성, 향산리지석묘, 대리지석묘)등 문화재가 어느지역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은 예로부터 중심체적 역할을 해온 지역으로 살기좋은곳 등등 이루 다 지역적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나열 할 수는 없다.

특히 영남알프스는 우리나라의 명산중에서 명산의 집합체인 곳이다.

백두(白頭)에서 뻗어 내려온 대한(大韓)의 등줄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과 경상남·북도의 경계에서 마지막 힘을 솟구쳐 1000m급의 산 8개를 중심으로 거대한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다.

"영남의 지붕" "영남의 병풍"이라 불리는 이곳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 북도를 경계로 울주, 경주, 청도, 밀양, 양산 5개군에 있어 넓이만도 255㎢에 이르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깊은계곡,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나무들, 기묘한 바위들이 서로 어우러져 어디를 가나 절경을 이뤄 사시 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자락에 고요히 위친한 곳이 바로 우리 상북면이다.

영남알프스의 거봉을 살펴보면 고헌산(1032.8m), 그리고 우두머리격인 가지산(1240m), 간월산(1083.1m), 신불산(1208.9m), 취서산(1092m), 천황산(1189m), 재약산(1108m), 운문산(1188m)으로 주봉을 이루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문복산(1013.5m), 백운산(885m), 억산(944m)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솟은 봉우리들이 유럽 알프스, 일본 북알프에 견줄만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영남알프스"라 부르는 것에 이의를 재기하는 이가 없다.

또 영남알프스에서 형성된 크고 작은 계류들이 영남지방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낙동강으로 유입 되고 있고 그 한자락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상북면은 비옥한 토지와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에는 자연이 만든 거대한 동·식물이라 불리는 다양한 동·식물로 700여종이나 되는 수종과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보고인 영남알프스는 1979년 11월 가지산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석남사지구, 통도사지구, 내원사지구로 나눠져 공원으로서의 기치를 뽐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영남알프스 하면 억새밭을 연상케 하는데 광활한 초원지대에 황금물결을 이룬다.
신불산과 영취산의 중간인 신불평원,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인 간월고개, 천황산, 재약산의 사자평은 다른 무엇과도 견줄만한 것이 못된다.

여기에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100대명산에 가지산, 신불산, 재약산등이 포함되어 그 아름다움을 배가하고 있으며 영남알프스의 길목에 위치한 우리지역 상북면의 이름을 한층 더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2002년 세계 산의 해는 산과 산촌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으로 제고시키고자 2001년 12월 11일 UN의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세계 산의 해" 출범을 선언하면서 후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줄 산을 가꾸고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명산이 널리알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고장 상북면, 우리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영남알프스를 병풍으로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역, 그 지역에 내가 있다는것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우리고장 상북면은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민 나아가서 전 국민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항상 열려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따뜻하게 맞이하여 줄 것입니다.

野 脈(야맥)

저녁 어스름 우리를 감싸는 이산장에서
밝고 희망찬 모습들이
숲에서 내뿜는 맑은공기 흐뻑 마시며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대눈동자 별빛처럼 빛나고
금방이라도 탄생될것만 같은
옥동자를 기다리게
설레는 이가슴은 불꽃처럼 타오르네

푸른 하늘 검정색으로 물들여 놓고
혹시나 기쁨과 불길한 생각에 붙들려
기나긴 시간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속에서
어디선가 실바람을 타고 왕앙~ 하는소리에
정신은 번쩍 검은 눈동자에서 빛을 쏘아보니
반대돌 같은 사내자식
미소지며 유혹하네

항시 곁에 두고 싶은 그대여
그대이름 야맥이라네
그대를 생각하고 있을때 난 즐거워
죽을때까지 그대를 놓지 않겠소
내일은 다가오고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는 변치않고 영원히 포옹하리
그대와 영원토록 그대와 영원토록

92. 9. 26
김 진 근

의원 김진근

송이버섯

시월초 가랑비 내리던 날
버섯따러 자장골에 들어섰네
산에 들어가니 송이버섯 냄새가
눅눅한 산공기에 섞여 코에 스며든다
가랑비 내리는 산의 정적
소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잡목잎을 때리는 희미한 소리
오히려 산의 정적을 가중시키구나

물기를 가득 머금은 푸른이끼
한적한 곳에서 인적을 기다릴 때
내가 신은 구두로 밟을 때마다
미끄러질까 조심스러워진다

때늦게 핀 보라색 도라지꽃
더우더 향기좋고 산뜻하네
젖은 잡초 좌우로 밀어내고보니
웅크리고 앉아있는 송이버섯이구나

92. 10. 16
김진근

議政白書 (2000.1.1~2002.6.30)

2002. 12월 인쇄
2002. 12월 발행

발행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발 행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
(TEL:257-8108)
인 쇄 : 유강인쇄산업
(TEL:236-8001)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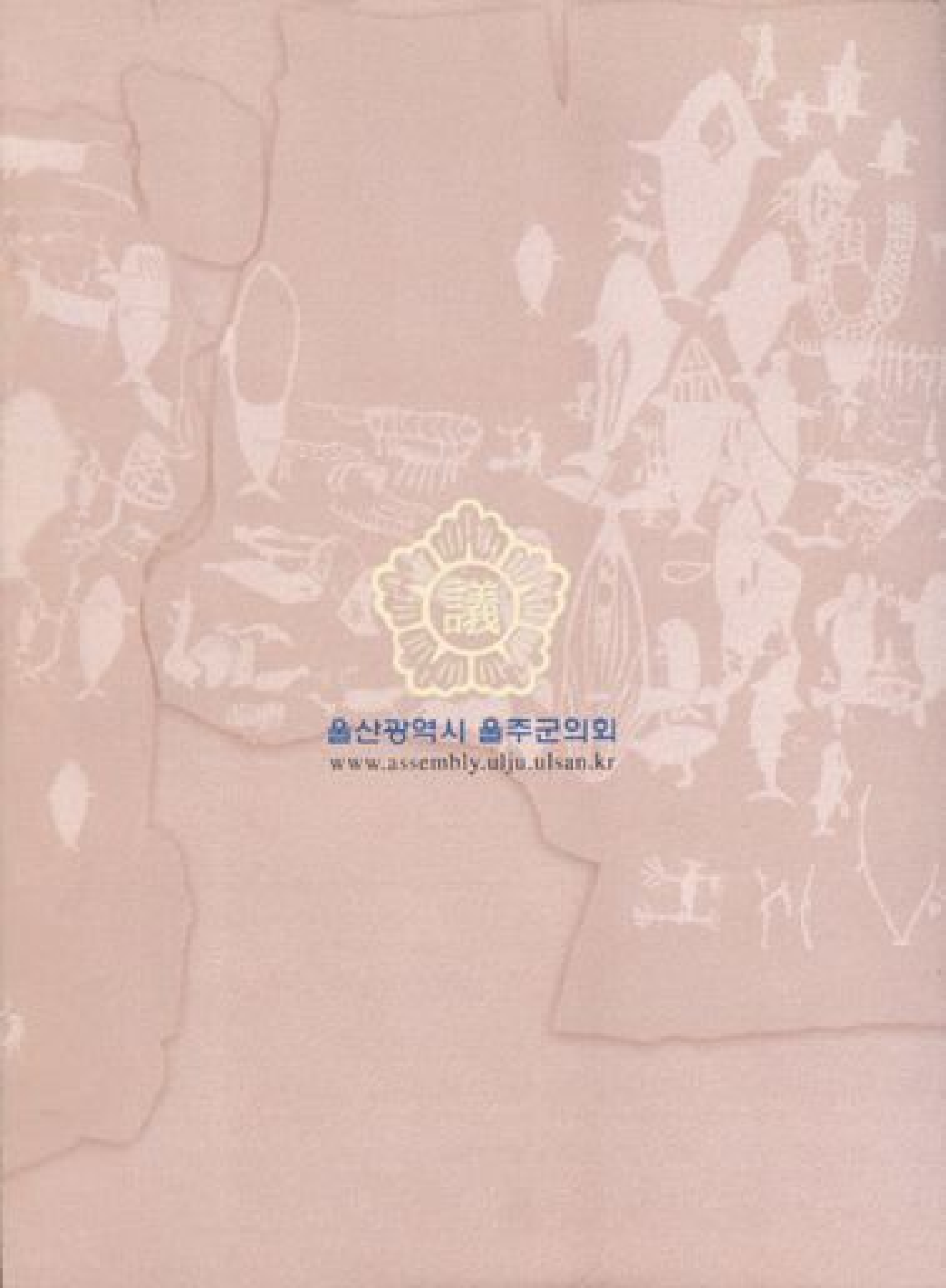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www.assembly.ulju.ulsan.kr